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45호

2021.1.21.(목)





[]

제2021-137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21-141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21-14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제2021-14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제2021-14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21-145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제2021-15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5
제2021-2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
제2021-2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18
제2021-23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3
제2021-25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염리2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 도면 고시	45
제2021-26호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0
제2021-28호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70
제2021-30호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4
제2021-31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2-2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90
제2021-37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초구 서초동 1657-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	117
제2021-38호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26
제2021-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39

제2021-42호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140
제2021-94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41
제2021-10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142
제2021-103호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46
제2021-10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155
제2021-107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고 - 북촌 일대 한옥밀집지역 -	156
제2021-10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66
제2021-109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169
제2021-116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170
제2021-119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171
제2021-121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172
제2021-12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73
제2021-131호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75
제2021-132호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76
제2020-13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77
제2021-13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78
제2021-136호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180
제2021-156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184

1

제2021-36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193
제2021-6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중구)	217
제202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220
제202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246
제2021-8호	도시계획시설(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성북구)	251
제202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성북구)	255
제202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도봉구)	258
제2021-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금산초등학교)(금천구)	260
제2021-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동작구)	263

제2021-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조성-중화동)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랑구)	264
제2021-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안)(중랑구)	269
제2021-8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안)(중랑구) ..	273
제2021-5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도봉구)	275
제2021-1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은평구)	308
제2021-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구로구)	322
제2021-85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를 위한 열람 공고(영등포구)	326
제2021-80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강남구)	330
제2021-1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KT 송파지사 복합시설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도로 정비공사] 열람 공고(송파구)	333
제2021-1호	소방시설 관리업 신규등록 공고문(동대문소방서)	335
제2021-3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336
제2021-3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341
제2021-2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43
제2021-1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44
제2021-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45



[]

2021 - 137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으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되어 인용조문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
- 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에 비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2133-3228, FAX 2133-1029, E-mail: resina11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41

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변경협의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의 자료제출방식을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및 제12조).

나.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열람”을 “공람”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별지1호서식).

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검토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설명회 개최 가능기간을 연장함(안 제6조).

마. 변경협의 대상 및 변경협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을 환경부와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18조제3항 단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02-2133-3542, FAX: 02-2133-1019, E-mail: shiningjo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규칙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장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팀장 이경옥, 담당 문주영							
4. 근거법령명등	◦ 환경영향평가법 제 42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관 련 규제수		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 계자	◦ 피규제집단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 ◦ 이해관계자 : 시민 등							
6. 규제존속기한	◦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유지되는 동안 존치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변 경) 규제의 내용	종 전				변 경			
	제3조 ③ 평가서 초안 제출 : 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담은 <u>CD(Compact Disk)</u> 함께 제출				제3조 ③ 평가서 초안 제출 : 평가서 초안 <u>20부와</u> 내용을 담은 <u>전자문서를</u> 함께 제출			
	제12조 ① 평가서의 제출 : 평가서 20부와 평가 서 내용을 <u>수록한 디스크(CD) 35부</u> 를 제출				제12조 ① 평가서의 제출 : 평가서 20부와 평가 서 내용을 <u>담은 전자문서를</u> 제출			
	제15조 ③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 들어 야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u>대상사업·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u>				제15조 ③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 들 어야하는 경우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u>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u>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변경 또는 신설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현재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이하 “평가서등”) 제출 방법으로 규정된 CD(Compact Disk)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나, 이전과 달리 이 방식은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에 변경이 있어 승인기관등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를 할 경우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평가서등 제출 문서의 형식은 현재와 같이 ‘전자문서’로 하되,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제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허용하고자 함
-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 변경 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변경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자 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현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수정·완화하여 사업자(평가업자)의 자료제출의 편의성과 사업수행의 효율성 증대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개정 내용은 사업자(평가업자)의 자료제출의 편의성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나 실행 시 제약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 후 시행 즉시 원활하게 운영가능 할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변경협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 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2021 - 14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대응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 진단·검사 기능 강화, 친환경 급식 효율적 관리, 스마트 도로환경 조성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급·직렬 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재배치함(5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32, FAX: 02-2133-0822, E-mail: kairos1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4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시민 접점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갈등조정담당관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함(안 제5조제4항).

나. 친환경급식과장의 직위를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정함(안 제17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32, FAX: 02-2133-0822, E-mail: kairos1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4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거목에서 최소 실 면적 및 창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소 생활 실 면적을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호).

- (1)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
- (2)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나.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의2제2호).

- (1) 전용공간은 외기에 면하도록 창문을 설치
- (2)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1, FAX: 02-768-8926, E-mail: kys3691h@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담당 강익수								
4. 근거법령명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 규제집단) 다중생활시설 건축주 (이해관계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다중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6. 규제존속기한	해당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종전) 없음 (신설)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는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 이 1.0미터 이상 설치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건축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 중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제2015-897호, ' 15.12.4. 제정)

- 개별 취사욕조설치 제한, 지하층에 설치 제한, 추락방지 안전난간(1.2m이상) 설치
- 복도 최소폭(면폭도 1.2m, 중폭도 1.5m) 이상, 실별 경계벽은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적합 등

-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18.11)이후 열악한 고시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 개정건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소한의 실 면적, 창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함(' 20.12.15.공포, ' 21.06.16. 시행)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거주자가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면적과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피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가 필요한 실정임.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과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거주자의 최소한의 생활기준과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제약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다중생활 건축기준의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실현 가능성 높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다중생활시설 규모 및 안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위한 면적 기준과 피난에 필요한 탈출구 확보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간의 타당성 여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없음.

2021 - 145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 6. 10.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용어 및 각종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12조 및 제17조).

다. 근거법령의 제정(‘21. 6. 10. 시행)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함(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자연생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서울시청 제2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전화: 02-2133-2161, 팩스: 02-2133-1083, 이메일: burger051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15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수입)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에게 예탁 요청

- (지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자금 융자

라. 예수 및 융자조건, 이자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기간)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함.

- (이자계산) 예수 및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

마.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 02-2133-6811, FAX: 02-2133-0823, E-mail: rubglov@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1 - 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575-3호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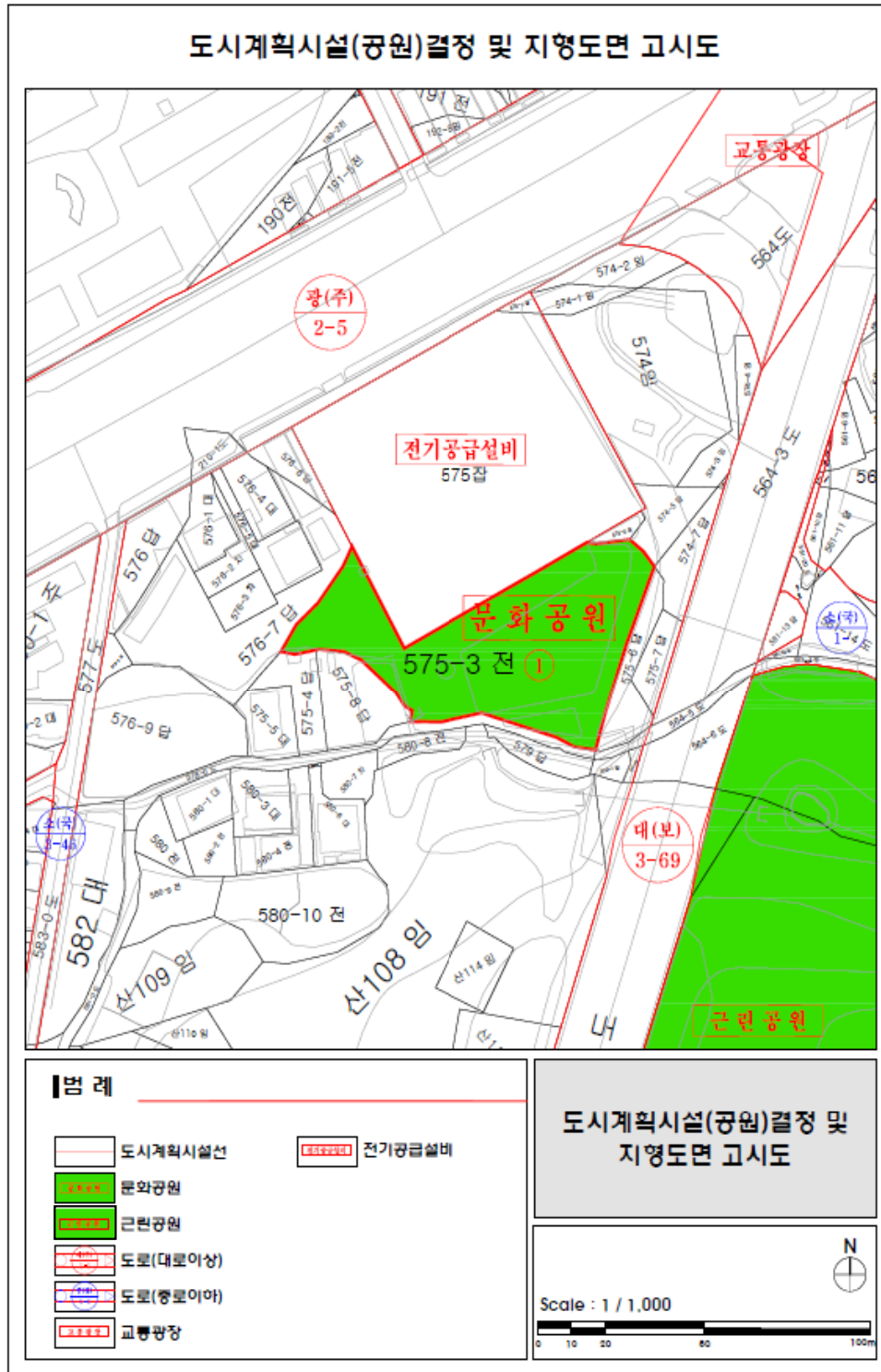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허브체험 공 원	문화공원	강동구 둔촌동 575-3호	-	증)3,454	3,454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결정사유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공 원 (문화공원)	• 위 치: 둔촌동 575-3호 • 면 적: 3,454㎡(신설)	•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 허브체험을 위한 공원 신설

- 관계도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붙임)
 -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9)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4), 푸른도시과(☎02-3425-644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2021 - 22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324	종로구청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해오름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서울랜드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장미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미리내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산새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들소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무지개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원앙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기린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올빼미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앵무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나들목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만남의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희망의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반도지다리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조절저수지 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사자사 3구간 옹벽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 라 점검주기 결정	

2021 - 23

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6.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3호(2012.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호(2014.1.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9호(2014.5.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3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호(2017.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1호(2017.6.8.) 등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 동 일대	1,079,301.29	-	1,079,301.29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가좌동·남가좌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없음)

- 기준년도 : 2003년
○ 목표연도 : 2024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 없음)

-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족적 도시기능의 도입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 친화 뉴타운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1) 주택건설용지 : 768,000.99㎡
- (2) 상업업무용지 : 98,600.00㎡
- (3) 공공시설용지 : 212,700.30㎡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79,301.29	-	1,079,301.29	100.00	
주택 건설용지	소 계	768,000.99	-	768,000.99	71.16	
	단독주택	12,601.00	-	12,601.00	1.17	
	공동주택	687,543.49	-	687,543.49	63.70	
	근린생활	67,856.50	-	67,856.50	6.29	
상업 업무용지	소 계	98,600.00	-	98,600.00	9.14	
	상업업무복합	98,600.00	-	98,600.00	9.14	
공공 시설용지	소 계	212,700.30	-	212,700.30	19.71	
	도 로	103,956.40	-	103,956.40	9.63	
	공공청사	3,009.10	-	3,009.10	0.28	
	공원녹지	65,353.10	-	65,353.10	6.06	
	학 교	33,249.60	-	33,249.60	3.08	
	도 서 관	3,486.80	-	3,486.80	0.32	
	사회복지	1,601.00	-	1,601.00	0.15	
	청소년수련	600.2	-	600.2	0.06	
	공공공지	1,444.10	-	1,444.10	0.13	
	폐기물처리시설	(5,108.50)	-	(5,108.50)	(0.47)	

※ () 부분은 근린공원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 : 46,907인/19,680세대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인구수(인)	가구수	분양	임대
총 계	1,079,301.29	46,907	19,680	16,368	3,312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19,782.09	892	362	272	9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26,116.50	1,138	473	373	10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242,710.00	7,871	3,293	2,664	629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284,637.50	10,277	4,300	3,550	75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53,028.30	2,383	997	827	170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48,287.90	2,419	1,047	869	178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78,640.00	3,240	1,350	1,080	270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13,180.00	654	283	237	46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58,318.00	3,301	1,411	1,287	124
존 치	254,601.00	14,732	6,164	5,209	955

3) 교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389.6	-	43,389.6	
교육 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33,249.6	-	33,249.6	
	학교	초등학교	북가좌동 80-110 일원	7,438.0	-	7,438.0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066.9	-	11,066.9	
	학교	중학교	북가좌동 145-106 일원	7,256.1	-	7,256.1	
	학교	고등학교	북가좌동 144-706 일원	7,488.6	-	7,488.6	
문화· 체육 시설등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10,140.0	-	10,140.0	
	공공청사	등사무소	북가좌동 144-343 일원	1,004.7	-	1,004.7	
	공공청사	등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4.8	-	934.8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69.6	-	1,069.6	
	도서관	공공도서관	북가좌동 119-3 일원	3,486.8	-	3,486.8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138-3 일원	1,601.0	-	1,601.0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 (기부 재납) - 용도 *기정 : 어린이집 *변경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면적 : 500㎡이상 (전용면적+공용면적)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남가좌동 184-10 일원	600.2	-	600.2	
	공공공지	공공공지	남가좌동 378 일원	1,444.1	-	1,444.1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5,353.10	-	65,353.10	
생활권 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52,280.30	-	52,280.30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65.70	-	15,465.7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1,315.40	-	11,315.40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	6,652.8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	1,175.5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508.00	-	9,508.00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5-126 일원	5,240.00	-	5,240.00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766.30	-	1,766.30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06.10	-	1,006.10	
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소 계	13,223.30	-	13,223.30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원	4,480.60	-	4,480.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원	1,292.50	-	1,292.5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원	411.60	-	411.60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원	1,142.00	-	1,142.0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원	1,318.30	-	1,318.3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원	1,221.90	-	1,221.9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원	681.40	-	681.4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원	308.00	-	308.0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원	912.00	-	912.00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77-4 일원	1,455.00	-	1,455.00	

5)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26	보조간선도로	1,313	남가좌동 105-47	북가좌동 36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2,750	연희동 3-17	신사동	일반도로	-	건고2493 (96.6.21)	
기정	중로	2	1	20~21	집산도로	401	모래내길	남가좌동 275-3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77	수색로	중로(뉴) (2류-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5	21	집산도로	706	남가좌동 275-43	북가좌동 421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21	북가좌동 108-1대	북가좌동 82-1대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0	남가좌동 169-2	남가좌동 235-345	일반도로	-	서고2008-374 (2008.10.23)	
기정	중로	2	8	17~19	집산도로	440	남가좌동 80-25	남가좌동 222-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0	북가좌동 144-63	북가좌동 149-23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27	남가좌동 337-5	북가좌동 75-249	일반도로	-	서고1994-296 (1994.9.10)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1	남가좌동 152-69	남가좌동 152-5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9	남가좌동 267-1	남가좌동 산33-2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4	10	국지도로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5	11	집산도로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94	북가좌동 417	북가좌동 418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80	중로(뉴) (1류-3)	북가좌동 362-2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6	남가좌동 262-241	남가좌동 262-449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8	북가좌동 304-37	북가좌동 301-2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기정	소로	3	245	6~8	국지도로	138	남가좌동 188	남가좌동 214-2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	중로(뉴) (1류-3)	소로(뉴) (2류-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0	북가좌동 362-2도	응암로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73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0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6) 경관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8장,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없음)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766,382.29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4,637.5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3,028.3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287.90	
기정	주택재개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기정	도시환경정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180.00	

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시행자	비고
사업방식			합 계		766,382.29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09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6,116.5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42,710.0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4,637.5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53,028.3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24번지 일대	48,287.90	민간(조합) 시행	
기정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00	민간(조합) 시행	
변경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180.00	민간(조합) 시행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없음)

(1) 용도지역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079,301.29	-	1,079,301.29	100.00	
주거지역	소 계	1,052,700.69	-	1,052,700.69	97.54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9.00	-	21,439.00	1.9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1,432.20	-	141,432.20	13.1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07,260.44	-	407,260.44	37.73	
	제3종일반주거지역	440,332.25	-	440,332.25	40.80	
	준주거지역	42,397.40	-	42,397.40	3.93	
상업지역	소 계	26,440.00	-	26,440.00	2.4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6,440.00	-	26,440.00	2.4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2) 재정비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변경 없음)

- ①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②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③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④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⑤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⑥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⑦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⑧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180.00	-	13,180.00	100.0	
준주거지역	13,180.00	-	13,180.00	100.0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없음)

구 역 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20층이하	62이하
기정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6층이하 / 35층이하	105.8이하
기정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0	50	17층이하 / 33층이하	102이하
기정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 / 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	50	18층이하 / 25층이하	75이하
기정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55	50	- / 26층이하	80이하
기정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300 (허용 340)	400	60	- / 27층이하	85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없음)

(1) 기반시설 확보율 (변경 없음)

구역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총 계	766,382.29	203,888.30	31,594.70	22,865.30	599.00	148,829.30 (19.42)	
가재울1재정비 촉진구역	19,782.09	5,043.90	-	-	-	5,043.90 (25.50)	
가재울2재정비 촉진구역	26,116.50	5,373.20	-	-	-	5,373.20 (20.57)	
가재울3재정비 촉진구역	242,710.00	74,800.30	23,172.10	14,469.40	-	37,158.80 (15.31)	
가재울4재정비 촉진구역	284,637.50	73,468.90	-	-	-	73,468.90 (25.81)	
가재울5재정비 촉진구역	53,028.30	10,937.80	2,336.60	1,562.90	599.00	6,439.30 (12.14)	
가재울6재정비 촉진구역	48,287.90	9,882.50	1,062.00	870.00	-	7,950.20 (16.46)	
가재울7재정비 촉진구역	78,640.00	21,026.00	3,172.00	5,963.00	-	11,891.00 (15.12)	
가재울8재정비 촉진구역	13,180.00	3,356.00	1,852.00	-	-	1,504.00 (11.41)	

(2)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시설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연장 : 444m	성산동2~20~흥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2	폭 : 20~27m, 연장 : 2,293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m, 연장 : 2,631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1	폭 : 12~12.5m, 연장 : 380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1	폭 : 10~13m, 연장 : 158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0	폭 : 7~14m, 연장 : 1,776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소로3류	6	폭 : 4~6m, 연장 : 357m	중로1류-3~소로2류-7	
공원 · 녹지	근린공원	1	15,465.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어린이공원	6	34,752.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소공원	1	1,00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경관녹지	6	5,921.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완충녹지	4	7,326.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	초등학교	2	18,504.9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 시설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5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69.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사회복지시설	2	1,601.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청소년수련시설	1	600.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공지	3	1,444.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5장, 임대주택 건설)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구분		구역수	대상지역	비고
기정	1단계 (2004 ~ 2008년)	2개	가재울 1, 2촉진구역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함
기정	2단계 (2007 ~ 2015년)	3개	가재울 4, 5, 6촉진구역	
기정	3단계 (2010 ~ 2024년 이후)	2개	가재울 7,8촉진구역	자율정비구역 및 존치지역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8장,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㉓-19장, 폐기물처리계획)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없음)

- 가.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없음)
 나.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없음)
 다.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없음)
 라.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없음)
 마.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없음)
 바.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없음)
 사.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없음)
 아.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13,180.0	-	13,18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 (2014.12.18.)

(2) 정비계획 (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180.0	-	13,180.0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3,356.0	-	3,356.0	25.5	-
	도 로	3,356.0	-	3,356.0	25.5	-
획 지	소 계	9,824.0	-	9,824.0	74.5	-
	획 지 1	9,824.0	-	9,824.0	74.5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나) 용도지역계획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180.00	-	13,180.00	100.0	
준주거지역	13,180.00	-	13,180.00	100.0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31)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 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147)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 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128)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 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128)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 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 () 부분의 연장은 가재울8구역내 도로연장임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	사회복지 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서고시2014-435호 (2014.12.18)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 용도 *기정 : 어린이집 *변경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면적 : 500㎡ 이상 확보 (전용면적+공용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	사회복지 시설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지상 1-2층	서고시2014-435호 (2014.12.18)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 (기부채납) - 용도 *기정 : 어린이집 *변경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면적 : 500㎡ 이상 확보 (전용면적+공용면적)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시 설 명	기 준	법적기준	비 고
주민공동시설	• 100세대 이상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884.38㎡ 이상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규모 이상으로 계획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13,180.0	획지1	9,824.0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일대	40	-	-	40	-	
변경						41	-	-	41	-	

※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을 고려한 무허가 건축물 1동 추가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구역구분		획지 구분	위 치	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연면적 (㎡)
	명칭	면적(㎡)								
기정	가재울8 재정비 촉진구역	13,180.0	획지1	남가좌동 289-54번지일 대	9,824.0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60 이하	400 이하	85m이하 (27층이하)	58,280
변경										59,500
주택의 규모 및 규모의 건설비율			•총건설세대 : 283세대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비율(%)		
					계	분양	임대			
			계		283	237	46	100.00		
			85㎡이하	40㎡미만	-	-	-	-		
				40~50㎡	-	-	-	-		
				50~60㎡	166	120	46	58.66		
				60~85㎡이하	117	117	-	41.34		
85㎡초과		-	-	-	-					
※ 주거비율은 70%(오피스텔 포함시 80%)이하로 확보하되, 비주거시설비율(오피스텔 10%설치시)은 20% 이상확보										
공공보행통로			•원활한 보행자의 연속성을 위하여 획지내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 : 폭6m(도면참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2m : 중로1-2, 중로3-2, 소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중로3-1호선변						
			벽면한계선	•저층부 벽면한계선 3m (2층이하) : 중로3-1호선변 •고층부 벽면한계선 6m (6층이상) : 중로1-2, 중로3-1, 중로3-2, 소로1-1호선변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기존세대수 : 339세대 •계획세대수 : 283세대 •증가세대수 : 감/56세대	-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가재울 8구역내	-	-	-	40㎡이하	
			-	40~50㎡이하	
			46세대(16.25%)	50~60㎡이하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변경 없음)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1,079,301.29	-	1,079,301.2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079,301.29	-	1,079,301.29	100.00	
주거지역	소 계	1,052,700.69	-	1,052,700.69	97.54	
	제1종일반주거지역	21,439.00	-	21,439.00	1.9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1,432.20	-	141,432.20	13.1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07,260.44	-	407,260.44	37.73	
	제3종일반주거지역	440,332.25	-	440,332.25	40.80	
	준주거지역	42,397.40	-	42,397.40	3.93	
상업지역	소 계	26,440.00	-	26,440.00	2.4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26,440.00	-	26,440.00	2.4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미관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54,900	-

※ 미관지구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04.18.)로 일괄 해제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남가좌동104, 105번지 일대	58,318.0	서고제1997-25호 (1997.2.5)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시설명		개소	규모	위치	비고
도로	대로3류	1	폭 : 25m , 연장 : 444m	성산동2-20~흥은동3-17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내
	중로1류	2	폭 : 20~27m , 연장 : 2,293m	모래내~응암로	
	중로2류	6	폭 : 15m , 연장 : 2,631m	수색로~북가좌동115-103	
	중로3류	1	폭 : 12~12.5m , 연장 : 380m	중로2류5~수색로	
	소로1류	1	폭 : 10~13m , 연장 : 158m	중로1류-1~남가좌동377-5	
	소로2류	10	폭 : 7~14m , 연장 : 1,776m	남가좌동152-58~남가좌동152-59	
	소로3류	6	폭 : 4~6m , 연장 : 357m	중로1류-3~소로2류-7	
공원 · 녹지	근린공원	1	15,465.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어린이공원	6	34,752.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소공원	1	1,00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경관녹지	6	5,921.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완충녹지	4	7,326.7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	초등학교	2	18,504.9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중학교	1	7,256.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고등학교	1	7,488.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 시설	공공청사복합화 (동사무소)	2	1,939.5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1	1,069.6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서관	1	3,486.8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사회복지시설	2	1,601.0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청소년수련시설	1	600.2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공지	3	1,444.10㎡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내	

(1) 교통시설 (변경 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444	성산동 2-20	홍은동 3-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26	보조간선도로	1,313	남가좌동 105-47	북가좌동 36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2	20~27	집산도로	1,207	수색로	남가좌동 352-27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1	62	20	집산도로	2,750	연희동 3-17	신사동	일반도로	-	건고2493 (96.6.21)	
기정	중로	2	1	20~21	집산도로	401	모래내길	남가좌동 275-3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77	수색로	중로(뉴) (2류-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5	21	집산도로	706	남가좌동 275-43	북가좌동 421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521	북가좌동 108-1대	북가좌동 82-1대	일반도로	-	서고2005-243 (2005.8.11)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0	남가좌동 169-2	남가좌동 235-345	일반도로	-	서고2008-374 (2008.10.23)	
기정	중로	2	8	17~19	집산도로	440	남가좌동 80-25	남가좌동 222-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40	북가좌동 144-53	북가좌동 149-23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중로	3	1	12~12.5	집산도로	435	남가좌동 268-33	남가좌동 142-2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16	남가좌동 293-94	남가좌동 288-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1	1	10~13	국지도로	128	남가좌동 268-3	남가좌동 288-4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27	남가좌동 337-5	북가좌동 75-249	일반도로	-	서고1994-296 (1994.9.10)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1	남가좌동 152-59	남가좌동 152-58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9	남가좌동 267-1	남가좌동 산33-2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4	10	국지도로	150	남가좌동 256-21	남가좌동 260-410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5	11	집산도로	118	남가좌동 164-12	남가좌동 155-4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1	북가좌동 75-89	북가좌동 361-9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94	북가좌동 417	북가좌동 418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80	중로(뉴) (1류-3)	북가좌동 362-2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6	남가좌동 262-241	남가좌동 262-449	일반도로	-	서고2007-74 (2007.3.22)	
기정	소로	2		8	국지도로	288	북가좌동 304-37	북가좌동 301-2	일반도로	-	서고2012-144 (2012.6.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45	6~8	국지도로	138	남가좌동 188	남가좌동 214-2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42	중로(뉴) (1류-3)	소로(뉴) (2류-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40	북가좌동 362-2도	응암로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4	남가좌동 115-60	남가좌동 137-5	일반도로	-	서고2007-102 (2007.4.12)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73	북가좌동 100-336	북가좌동 303-40	일반도로	-	서고3 (69.1.18)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10	남가좌동 76-19	남가좌동 116-4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9	남가좌동 124-607	남가좌동 124-609	일반도로	-	서고2015-305 (2015.10.1)	

(2) 공간시설 (변경 없음)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원	근린공원	북가좌동 105-8 일원	15,421.2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10,357.2㎡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 5,106.9㎡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5,108.5㎡)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75-5 일원	11,315.4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 114.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 3,047.4㎡ 가재울6 재정비촉진구역 : 5,704.2㎡ 존치구역(삼성APT기부채납) : 1,543.8㎡ 존치지역(소로2-1해제부분) : 906㎡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168-32 일원	6,652.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379-3 일원	1,175.5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 274.6㎡ 삼성레미안APT(존치) : 900.9㎡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123 일원	9,385.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남가좌동 274-26 일원	1,643.2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소공원	남가좌동 152-19 일원	1,049.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북가좌동 75-126 일원	5,240.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녹지	완충녹지	북가좌동 149-60 일원	4,480.6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24-215 일원	1,292.5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115-34 일원	411.6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완충녹지	남가좌동 76-145 일원	1,142.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 일원	1,318.30	준치구역 : 1,318.3㎡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 일원	1,221.90	가재울1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 일원	681.4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49 일원	308.00	가재울2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380-1 일원	912.00	가재울5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77-4 일원	1,455.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1	남가좌동 378 일원	1,088.4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2	남가좌동 378 일원	330.0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3	남가좌동 116-4 일원	25.7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학교	초등학교	북가좌동 80-110 일원	7,438.00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초등학교	남가좌동 164-1 일원	11,066.9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중학교	북가좌동 145-106 일원	7,256.1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학교	고등학교	북가좌동 144-706 일원	7,488.6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공청사	등사무소	북가좌동 144-343 일원	1,004.7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청사	등사무소	남가좌동 119-17 일원	934.8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기정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및 노유자시설	남가좌동 130-10 일원	1,069.6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다)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도서관	공공도서관	북가좌동 119-3 일원	3,486.80	가재울3 재정비촉진구역 완전편입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복지시설	-	남가좌동 138-3 일원	1,601.00	동방사회복지회
변경	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	남가좌동 289-54 일원	-	- 가재울8구역 건축물내 공공시설(기부채납) - 용도 *기정 : 어린이집 *변경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면적 : 500㎡ 이상(전용면적+공용면적)

마)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남가좌동 184-10 일원	600.20	

(4)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분시설	북가좌동 115-97 일원	5,108.50	가재울4 재정비촉진구역 근린공원 지하에 중복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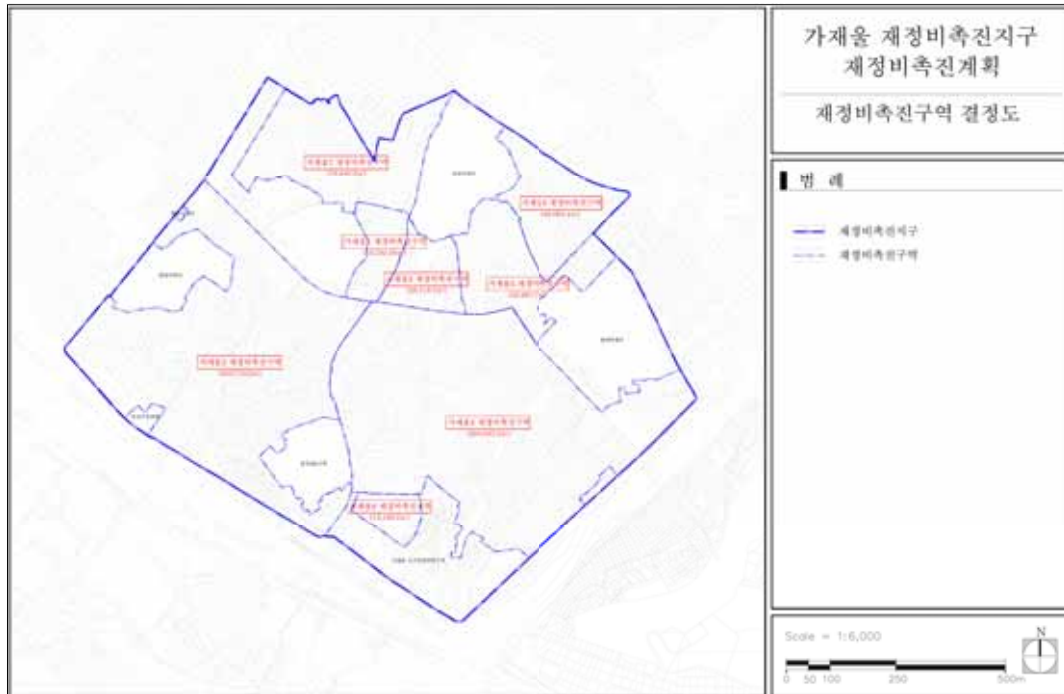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변경없음. [붙임참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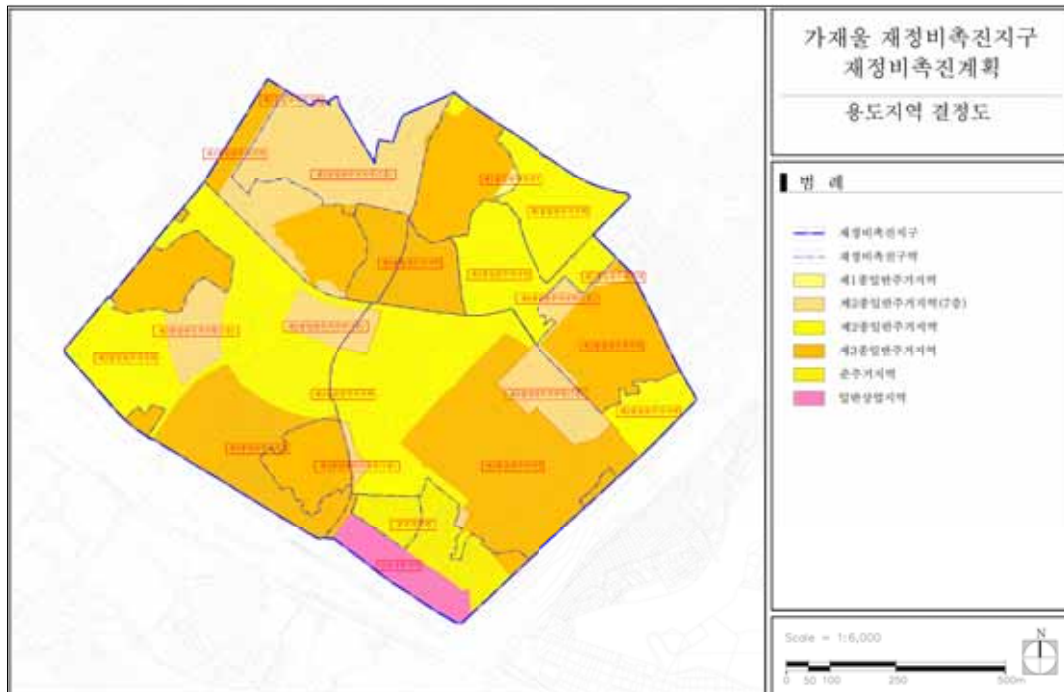
6. 관계도서 열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6)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02-330-1610)에 관계도서 비치 및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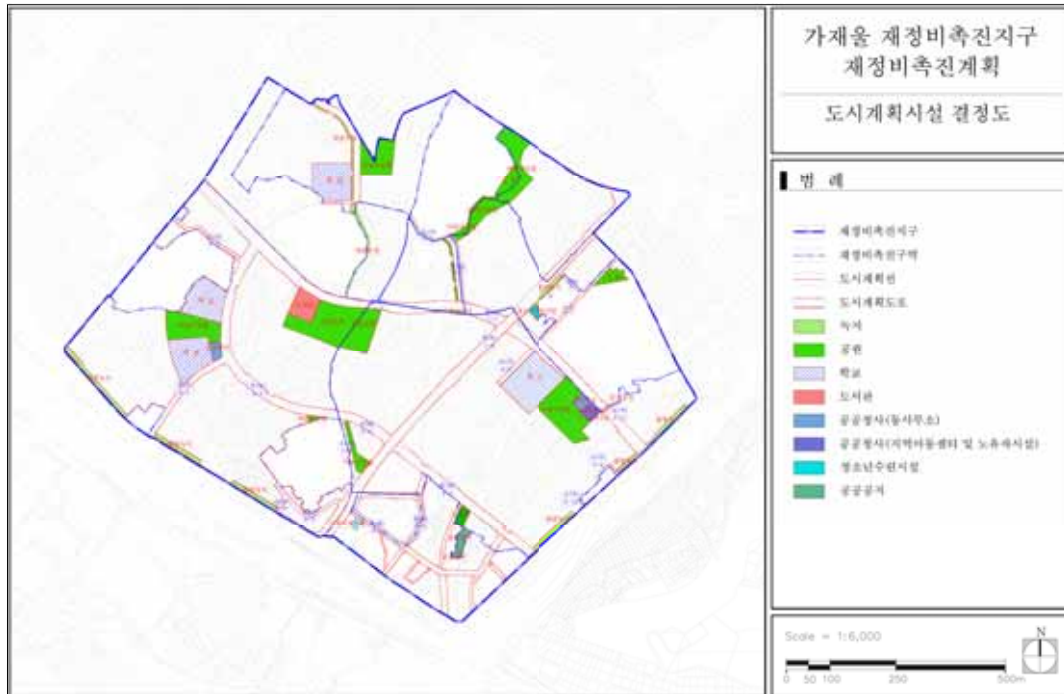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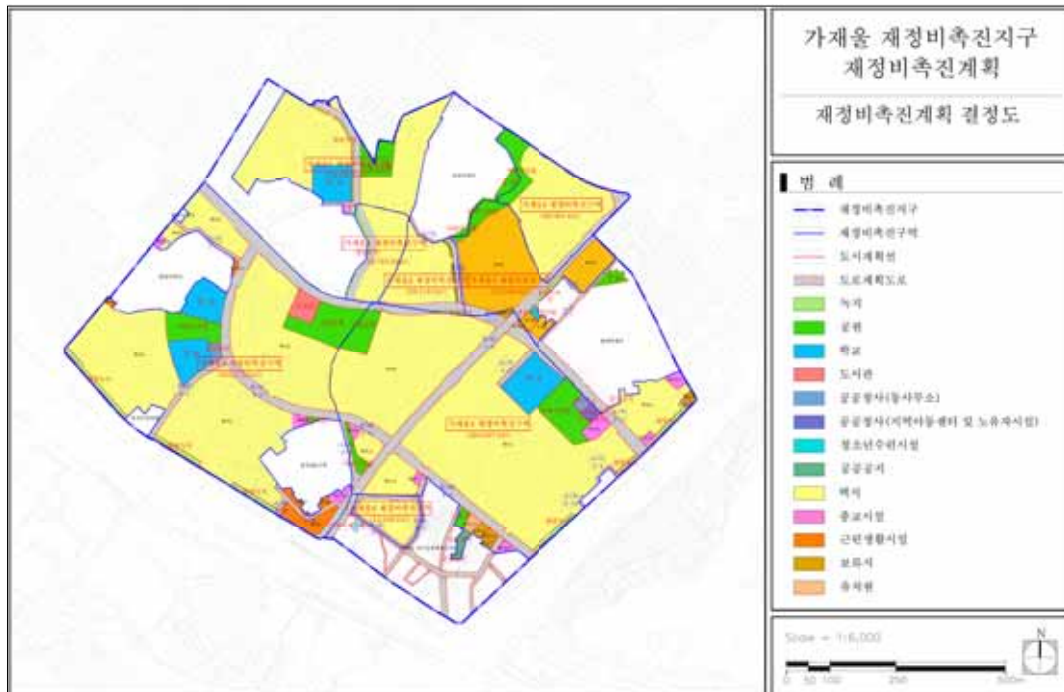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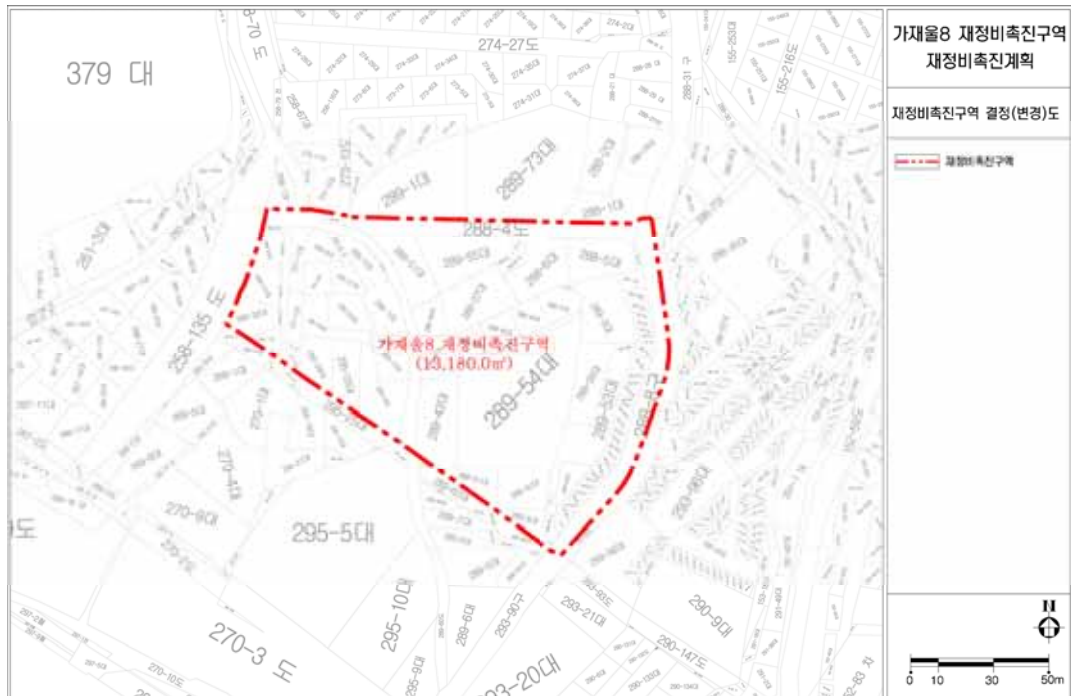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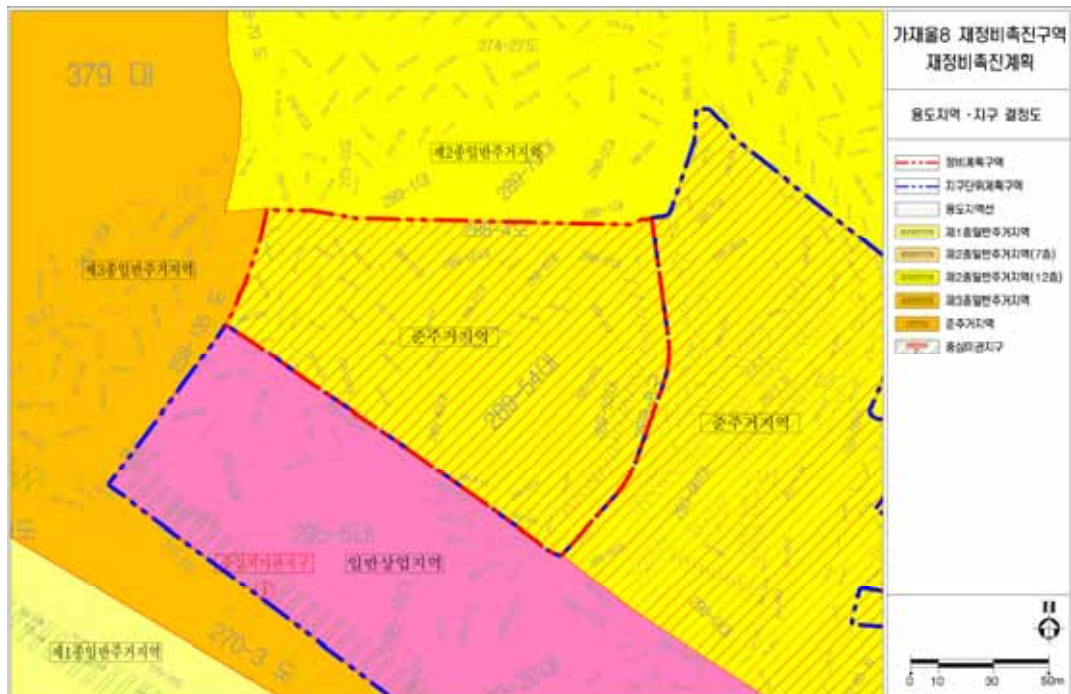
■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없음)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축진구역 결정도 (변경 없음)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없음)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없음)



■가재울8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없음)



2021 - 25

(2)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8.19.)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7호(2011.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1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9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7호(2011.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9호(2012.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7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98호(2013.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4호(2013.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4호(2013.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0호(2014.5.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5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3호(2014.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5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2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4호(2014.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4호(2015.5.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호(2016.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7호(2016.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3호(2017.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4호(2017.6.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8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0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호(2019.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9호(202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9호(2020.8.13.)로 변경 결정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768,662.3	-	768,662.3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768,662.3	-	768,662.3	
촉진 구역	소 계			472,016.4	-	472,016.4	
	주택재개발사업	아현3구역	아현동 635번지 일원	207,420.8	-	207,420.8	
		공덕5구역	공덕동 175번지 일원	42,713.0	-	42,713.0	
		염리2구역	염리동 45번지 일원	51,748.3	-	51,748.3	
		염리3구역	염리동 507번지 일원	87,985.6	-	87,985.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로6구역	공덕동 385번지 일원	16,594.8	-	16,594.8	
	주택재건축사업	아현2구역	염리동 662번지 일원	65,553.9	-	65,553.9	
존치 지역	존치구역 등		대흥동 28번지 일원	296,645.9	-	296,645.9	

3. 염리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원	51,748.3	-	51,748.3	

나. 정비계획 (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1,748.3	-	51,748.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1,748.3	-	51,748.3	100.0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51,748.3	-	51,748.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0,708.4	감) 28.5	10,679.9	20.6	
	도로	7,890.8	감) 28.5	7,862.3	15.2	
	어린이공원	1,931.7	-	1,931.7	3.7	
	소공원	885.9	-	885.9	1.7	
택지 (획지)	소계	41,039.9	증) 28.5	41,068.4	79.4	
	획지1	37,197.2	증) 0.3	37,197.5	71.9	공동주택용지
	획지2	1,231.7	증) 26.1	1,257.8	2.4	일성학교
	획지3	1,115.0	-	1,115.0	2.2	도서관,어린이집,공영주차장
	획지4	330.0	-	330.0	0.6	종교용지
	획지5	290.0	-	290.0	0.6	노유자시설
	획지6	300.0	-	300.0	0.6	종교용지
	획지7	379.0	-	379.0	0.7	유치원
	획지8	197.0	증) 2.1	199.1	0.3	제2종 주거 내 용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39	15	집산 도로	620 (183)	염리동 81-13	염리동 14-181	일반 도로	-	08.01.10 (서고제2008-9호)	-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0	염리동 36-216	염리동 516	일반 도로	-	08.01.10 (서고제2008-9호)	-
변경	중로	3	2	4~15	국지 도로	209	염리동 516	염리동 27-88	일반 도로	-	08.01.10 (서고제2008-9호)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60	염리동 27-88	염리동 27-161	일반 도로	-	08.01.10 (서고제2008-9호)	-

※ 연장 항목의 ()는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	중로3-2	• 면적변경 (감 28.5㎡)	• 현황측량 면적반영에 따른 면적감소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주차장	염리동 58-1번지	3,046.7	-	3,046.7	17.10.26 (서고 제2017-378호)	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

■ 주차장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 정	증 감	변 경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염리동 61-4번지 일대	층수	지하3층	-	지하3층	17.10.26 (서고 제2017-378호)	획지3지하 입체적 결정
			면적(㎡)	1,115	-	1,115		

※ 향후 획지3 건축계획 수립 시 면적규모 반영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염리동 58-1번지 일대	1,931.7	-	1,931.7	08.01.10 (서고제2008-9호)	공원하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기정	공원	소공원	염리동 27-164번지 일대	885.9	-	885.9	08.01.10 (서고제2008-9호)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후 이주	
기정	염리2재정비촉진 구역	51,748.3	염리동 45번지일원	275	2	-	273 (신축12동)	-	

(2) 건축물의 주된 용도,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 정	염리2재정비촉진 구역	51,748.3	획지1	37,197.2	염리동45-2일원	공동주택/부대복리	50% 이하	248.28% 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95m이하 25층이하
			획지2	1,231.7	염리동45일원	일성학교	관계법규에 의함		
			획지3	1,115.0	염리동61-4일원	도서관, 어린이집.공영주차장			
			획지4	330.0	염리동72-1일원	종교용지			
			획지5	290.0	염리동36-38일원	노유자시설			
			획지6	300.0	염리동34일원	종교용지			
			획지7	379.0	염리동36-21일원	유치원			
			획지8	197.0	염리동45-74일원	제2종 내 용도			
변 경	염리2재정비촉진 구역	51,748.3	획지1	37,197.5	염리동45-2일원	공동주택/부대복리	50% 이하	248.24% 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95m이하 25층이하
			획지2	1,257.8	염리동45일원	일성학교	관계법규에 의함		
			획지3	1,115.0	염리동61-4일원	도서관, 어린이집.공영주차장			
			획지4	330.0	염리동72-1일원	종교용지			
			획지5	290.0	염리동36-38일원	노유자시설			
			획지6	300.0	염리동34일원	종교용지			
			획지7	379.0	염리동36-21일원	유치원			
			획지8	199.1	염리동45-74일원	제2종 내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927세대 [임대주택:160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80세대(8.63%) [임대주택:80세대] - 전용면적 40~50㎡ : 64세대(6.90%) [임대주택:64세대] - 전용면적 50~60㎡ : 322세대(34.73%) [임대주택:16세대] - 전용면적 60~85㎡ : 449세대(48.43%) - 전용면적 85㎡초과 : 12세대(1.3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순환생활가로변 - 6m • 이면 도로부 - 3m						

※변경사유: 현황측량값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변경)

－ 기 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계획기반시설	일설학교 (존치)	무상양여 국공유지
	51,748.3	37,197.2	10,708.4	1,231.7	5,125.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5,582.6㎡ - 순부담률 = 순부담 면적 ÷ 구역면적 × 100% = 5,582.6 ÷ 51,748.3 × 100% = 10.7% (구역면적 대비)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x(순기부채납면적x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일설학교면적)} = 210 + {(1.3x5,582.6x210%)/(41,039.9-1,231.7)} = 248.28%				

－ 변 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계획기반시설	일설학교 (존치)	무상양여 국공유지
	51,748.3	37,197.5	10,679.9	1,257.8	5,103.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5,576.6㎡ - 순부담률 = 순부담 면적 ÷ 구역면적 × 100% = 5,576.6 ÷ 51,748.3 × 100% = 10.7% (구역면적 대비)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x(순기부채납면적x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일설학교면적)} = 210 + {(1.3x5,576.6x210%)/(41,068.4-1,257.8)} = 248.24%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일 부터 4년 이내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계획 : 927세대	

7)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기정	증 감	변경	비 고
세대수	40㎡ 이하	80	-	80
	40~50㎡ 이하	64	-	64
	50~60㎡ 이하	16	-	16
	계	160	-	160
	비율(%)	17.25	-	17.25
연면적	9,914.025㎡	-	9,914.025㎡	전체세대수의 17%이상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염리동 45번지 일원	51,748.3	-	51,748.3	10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1,748.3	-	51,748.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1,748.3	-	51,748.3	100.0

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39	15		집산 도로	620 (183)	염리동 81-13	염리동 14-181	일반 도로	-	08.01.10 (서고제2008-9호)	-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0	염리동 36-216	염리동 516	일반 도로	-	08.01.10 (서고제2008-9호)	-
변경	중로	3	2	4~15		국지 도로	209	염리동 516	염리동 27-88	일반 도로	-	08.01.10 (서고제2008-9호)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60	염리동 27-88	염리동 27-161	일반 도로	-	08.01.10 (서고제2008-9호)	-

※ 연장 항목의 ()는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	중로3-2	• 면적변경 (감 28.5㎡)	• 현황측량 면적반영에 따른 면적감소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주차장	염리동 58-1번지	3,046.7	-	3,046.7	17.10.26 (서고 제2017-378호)	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

■ 주차장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 정	증 감	변 경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염리동 61-4번지 일대	층수	지하3층	-	지하3층	17.10.26 (서고 제2017-378호)	획지3지하 입체적 결정
			면적(㎡)	1,115	-	1,115		

※ 향후 획지3 건축계획 수립 시 면적규모 반영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공원	어린이 공원	염리동 58-1번지 일대	1,931.7	-	1,931.7	08.01.10 (서고제2008-9호)	공원하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기정	공원	소공원	염리동 27-164번지 일대	885.9	-	885.9	08.01.10 (서고제2008-9호)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지	소계	41,039.9	증) 28.5	41,068.4	100.0	
	획지1	37,197.2	증) 0.3	37,197.5	90.6	공동주택용지
	획지2	1,231.7	증) 26.1	1,257.8	3.1	일성학교
	획지3	1,115.0	-	1,115.0	2.7	도서관,어린이집,공영주차장
	획지4	330.0	-	330.0	0.8	종교용지
	획지5	290.0	-	290.0	0.7	노유자시설
	획지6	300.0	-	300.0	0.7	종교용지
	획지7	379.0	-	379.0	0.9	유치원
	획지8	197.0	증) 2.1	199.1	0.5	제2종 주거 내 용도

※변경사유: 현황측량값 반영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획지	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기정	지정용도	획지2~획지8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2)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

3) 용적률 계획 :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건축계획용적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건축계획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48.28%이하	244.12%	210%이하	248.24%이하	244.12%	

4)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 (변경)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토지)	
염리2구역	- 완화용적률 = $1.3 \times (5,576.6 \div 39,810.6) \times 210\% = 38.24\%$ - 축진계획용적률 = $210\%(\text{기준용적률}) + 38.24\% = 248.24\%$	38.24%

※완화용적률 = $1.3 \times \alpha \times \text{기준용적률}$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5) 높이 계획 : 변경없음

구분	높이기준	비고
항목1 (공동주택)	최고층수 25층(평균 21층 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95m이하	-

6)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순환생활가로변 : 6m, 이면 도로부 : 3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염리2 구역	-	-	9,914.025	• 80세대(8.6%)	• 40㎡미만	
					• 64세대(7.0%)	• 40~50㎡이하	
					• 16세대(1.65%)	• 50~60㎡이하	
					• 전체:160세대(17.25%)	-	

※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구역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계획하지 않음

2) 환경관리계획 : 변경없음

5. 기타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염리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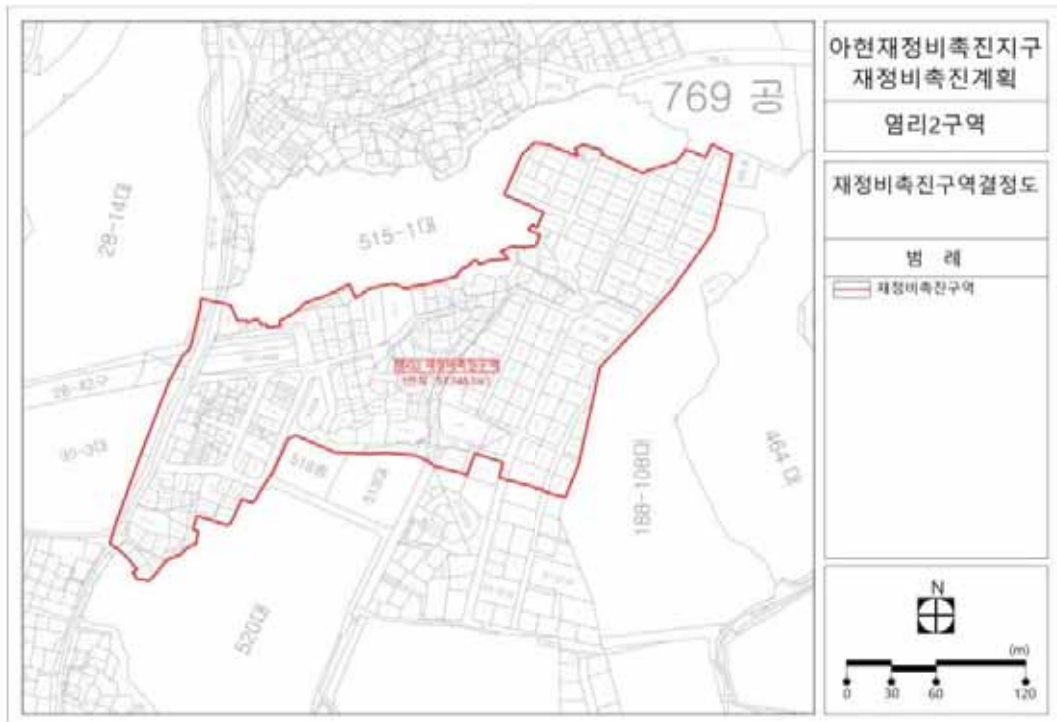
6. 관계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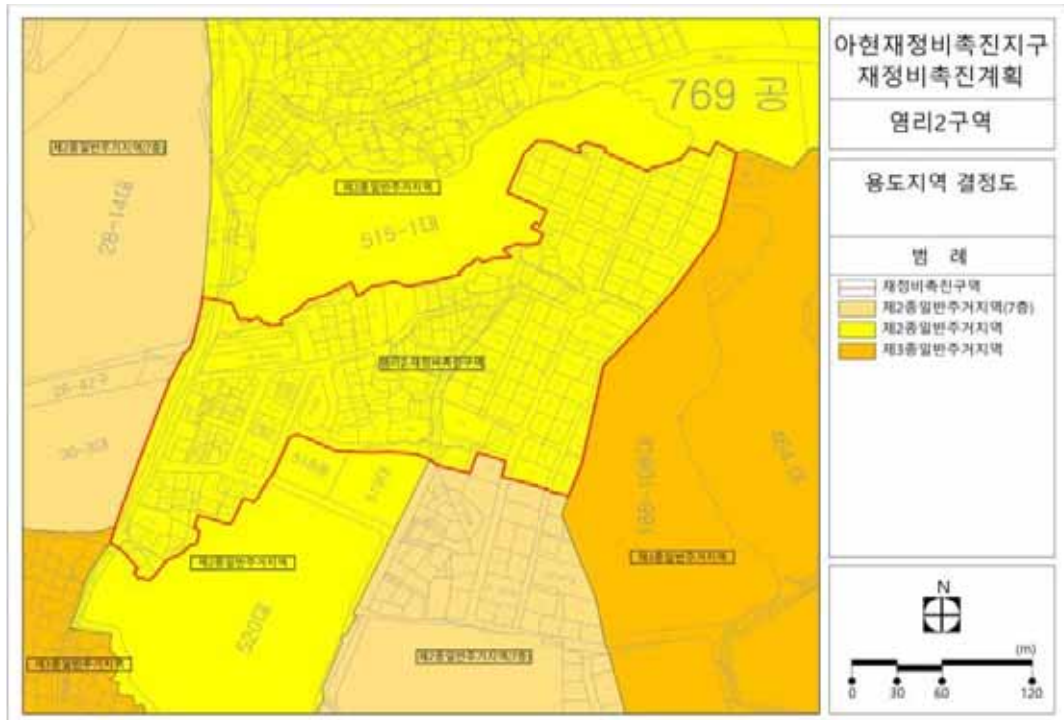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마포구 주택과(☎ 02-3153-933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하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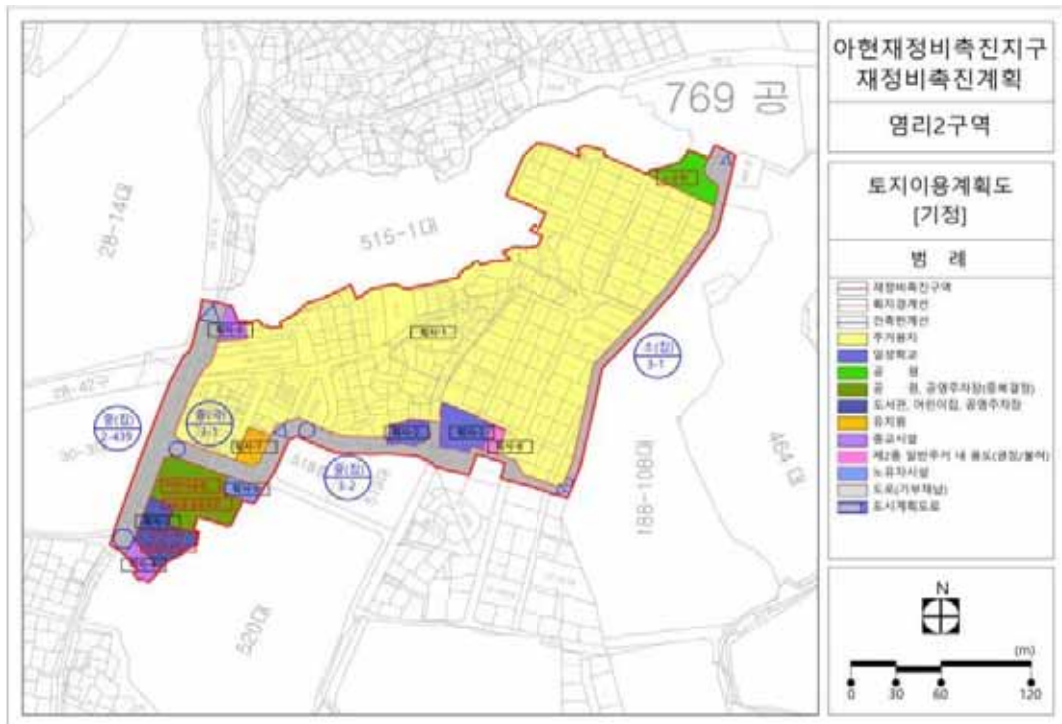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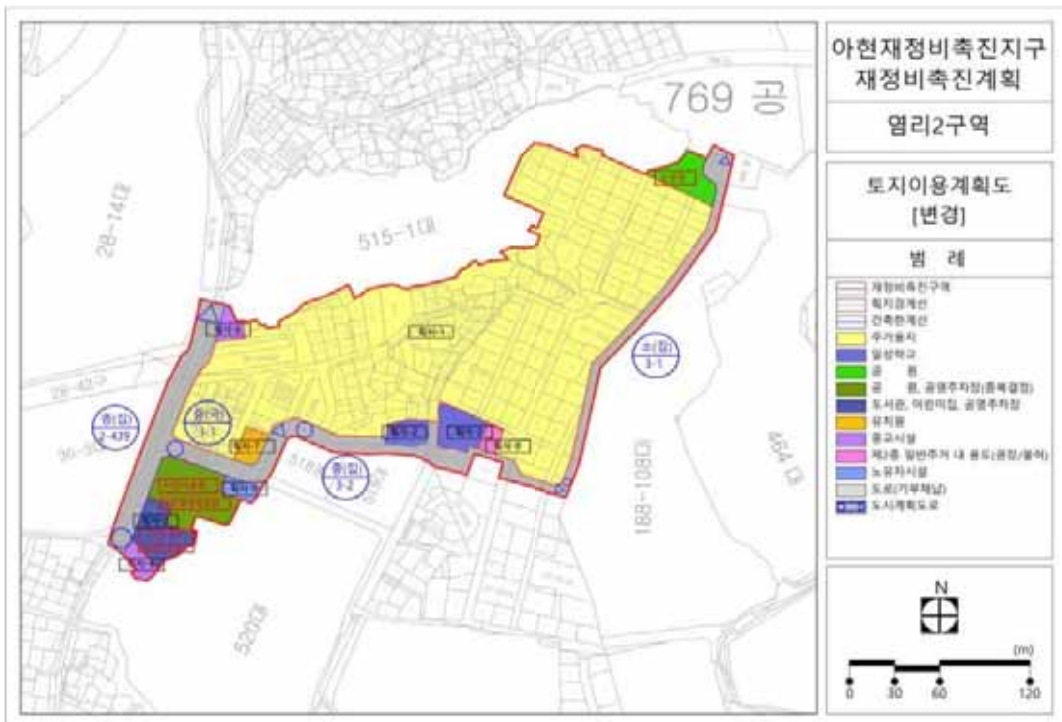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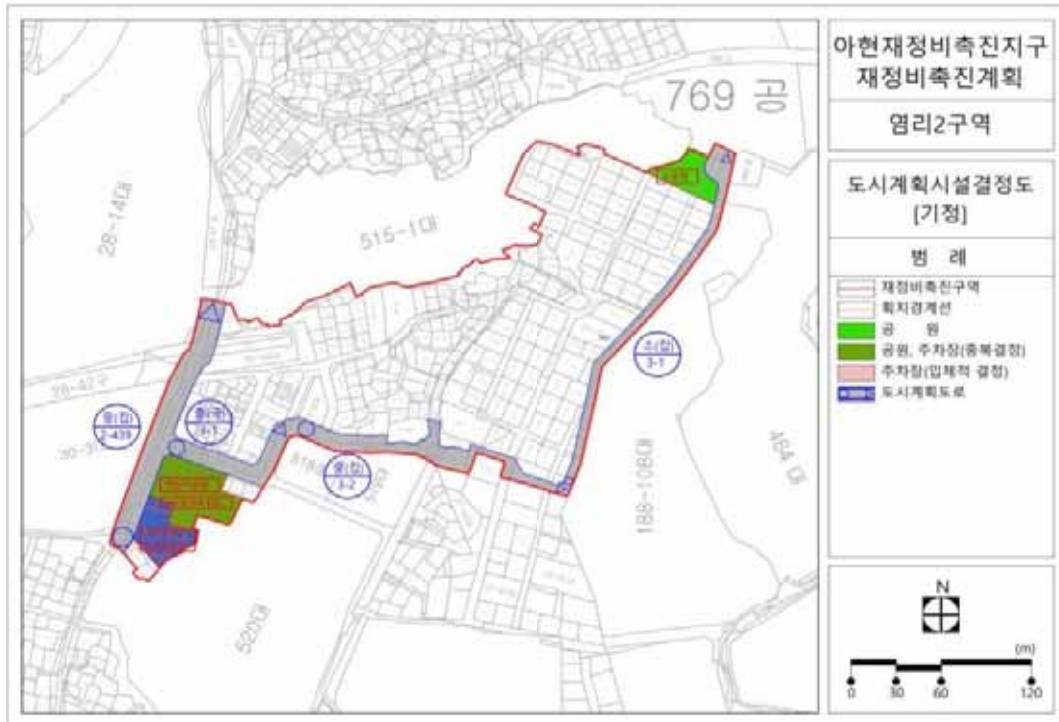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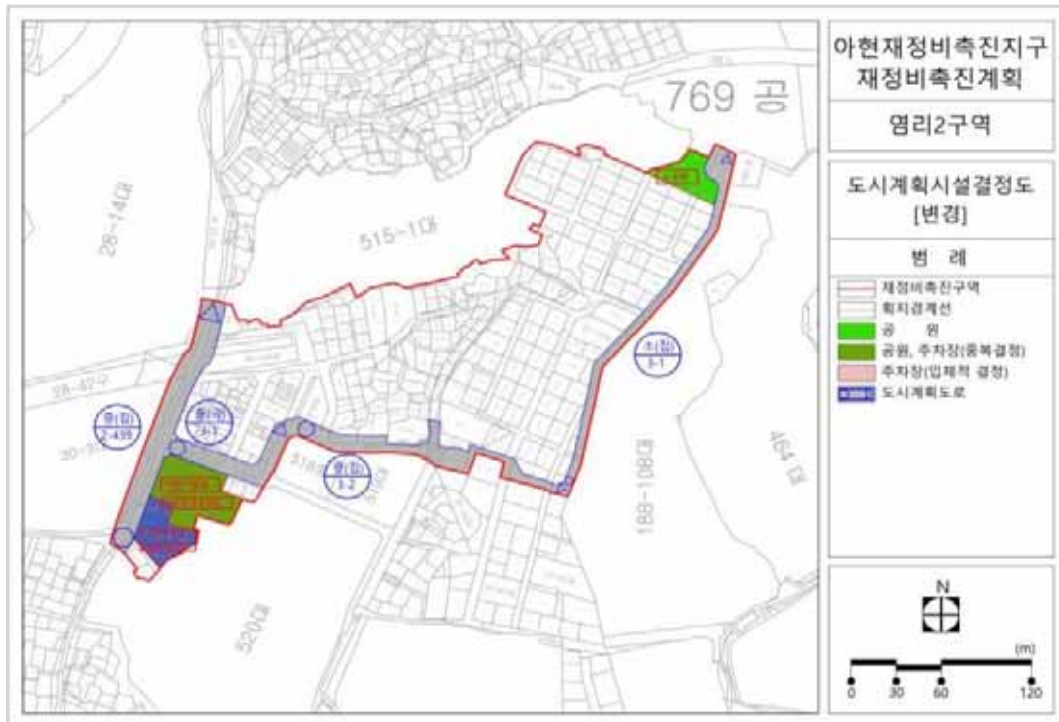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염리2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도 [기정]

범례

- 재정비촉진구역
- 국유재산
- 관공민간
- 주거용지
- 일반용지
- 공원
- 국유, 공공주택(주택개발)
- 도시, 아현이도, 공영주택
- 공공시설
- 도시개발구역 내 공영/공공시설
- 노후주택
- 개척도로
- 도시계획도로
- 차량통행제한구역

248.28% 199%
25층이하 50%이하
1층과 2층이하

769 공

515-1

30-42구

30-31구

30-32구

30-33구

30-34구

30-35구

30-36구

30-37구

30-38구

30-39구

30-40구

30-41구

30-42구

30-43구

30-44구

30-45구

30-46구

30-47구

30-48구

30-49구

30-50구

30-51구

30-52구

30-53구

30-54구

30-55구

30-56구

30-57구

30-58구

30-59구

30-60구

30-61구

30-62구

30-63구

30-64구

30-65구

30-66구

30-67구

30-68구

30-69구

30-70구

30-71구

30-72구

30-73구

30-74구

30-75구

30-76구

30-77구

30-78구

30-79구

30-80구

30-81구

30-82구

30-83구

30-84구

30-85구

30-86구

30-87구

30-88구

30-89구

30-90구

30-91구

30-92구

30-93구

30-94구

30-95구

30-96구

30-97구

30-98구

30-99구

30-100구

30-101구

30-102구

30-103구

30-104구

30-105구

30-106구

30-107구

30-108구

30-109구

30-110구

30-111구

30-112구

30-113구

30-114구

30-115구

30-116구

30-117구

30-118구

30-119구

30-120구

30-121구

30-122구

30-123구

30-124구

30-125구

30-126구

30-127구

30-128구

30-129구

30-130구

30-131구

30-132구

30-133구

30-134구

30-135구

30-136구

30-137구

30-138구

30-139구

30-140구

30-141구

30-142구

30-143구

30-144구

30-145구

30-146구

30-147구

30-148구

30-149구

30-150구

30-151구

30-152구

30-153구

30-154구

30-155구

30-156구

30-157구

30-158구

30-159구

30-160구

30-161구

30-162구

30-163구

30-164구

30-165구

30-166구

30-167구

30-168구

30-169구

30-170구

30-171구

30-172구

30-173구

30-174구

30-175구

30-176구

30-177구

30-178구

30-179구

30-180구

30-181구

30-182구

30-183구

30-184구

30-185구

30-186구

30-187구

30-188구

30-189구

30-190구

30-191구

30-192구

30-193구

30-194구

30-195구

30-196구

30-197구

30-198구

30-199구

30-200구

30-201구

30-202구

30-203구

30-204구

30-205구

30-206구

30-207구

30-208구

30-209구

30-210구

30-211구

30-212구

30-213구

30-214구

30-215구

30-216구

30-217구

30-218구

30-219구

30-220구

30-221구

30-222구

30-223구

30-224구

30-225구

30-226구

30-227구

30-228구

30-229구

30-230구

30-231구

30-232구

30-233구

30-234구

30-235구

30-236구

30-237구

30-238구

30-239구

30-240구

30-241구

30-242구

30-243구

30-244구

30-245구

30-246구

30-247구

30-248구

30-249구

30-250구

30-251구

30-252구

30-253구

30-254구

30-255구

30-256구

30-257구

30-258구

30-259구

30-260구

30-261구

30-262구

30-263구

30-264구

30-265구

30-266구

30-267구

30-268구

30-269구

30-270구

30-271구

30-272구

30-273구

30-274구

30-275구

30-276구

30-277구

30-278구

30-279구

30-280구

30-281구

30-282구

30-283구

30-284구

30-285구

30-286구

30-287구

30-288구

30-289구

30-290구

30-291구

30-292구

30-293구

30-294구

30-295구

30-296구

30-297구

30-298구

30-299구

30-300구

30-301구

30-302구

30-303구

30-304구

30-305구

30-306구

30-307구

30-308구

30-309구

30-310구

30-311구

30-312구

30-313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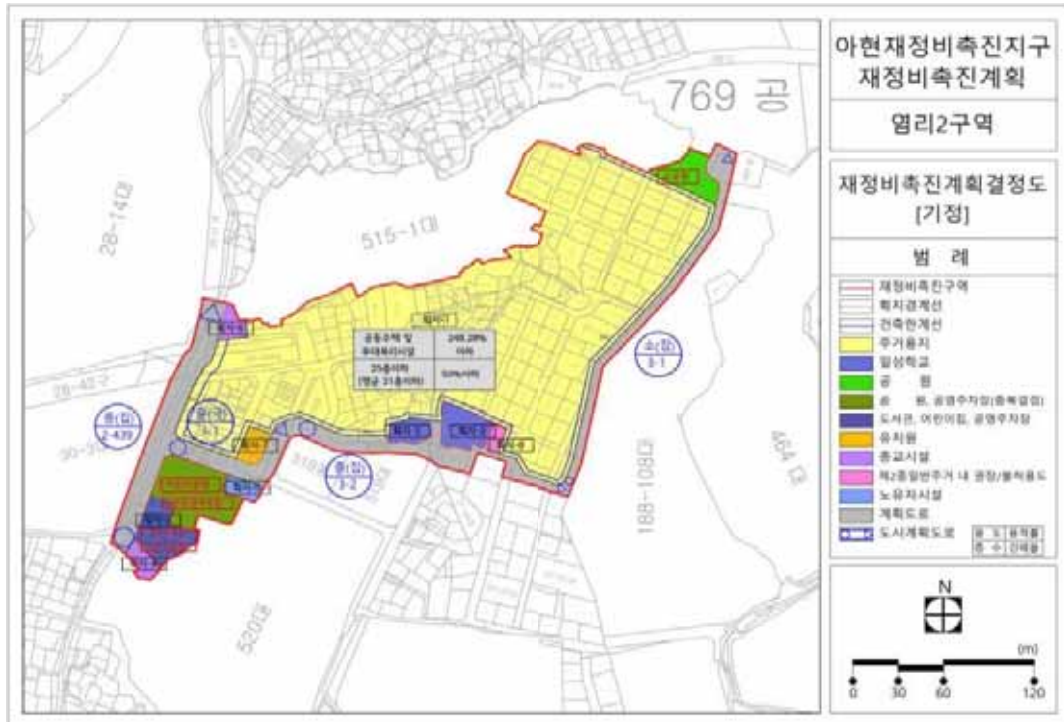
30-314구

30-315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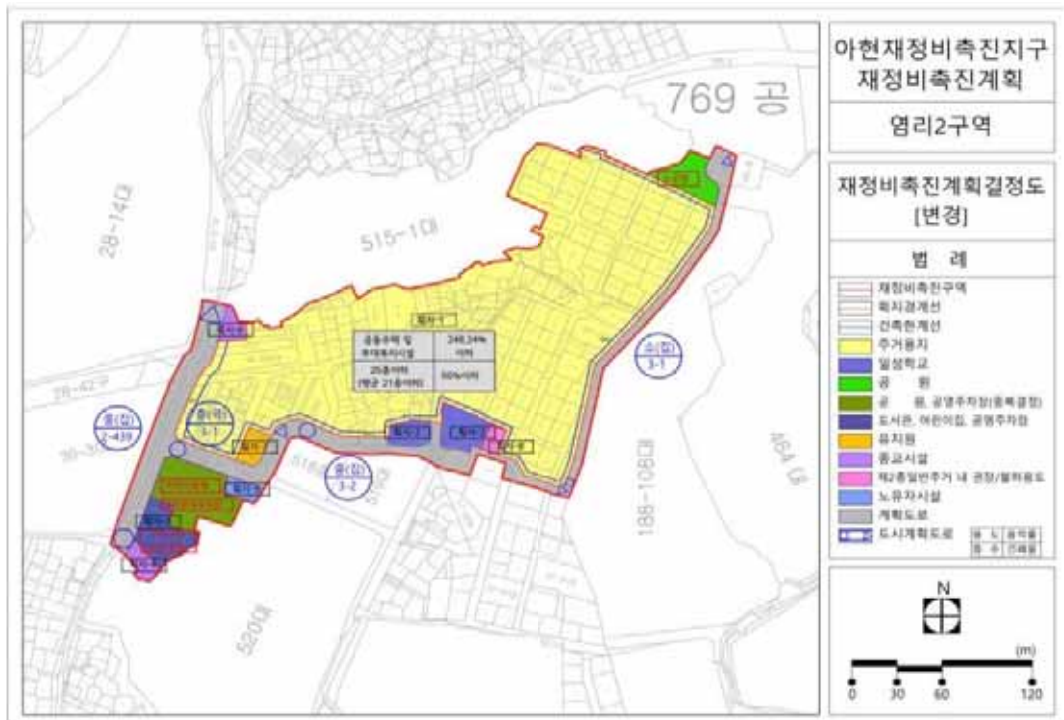
30-316구

3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염리2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2021 - 26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호(2005.03.0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06.29.)로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0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6호(2020.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2020.08.2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3호(2020.10.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 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기존	주거 지형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937,886.1	-	937,886.1	
	확장			578,607.7	-	578,607.7	
				359,278.4	-	359,278.4	

2.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1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기존지구 한함, 확장지구 변경없음)

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578,607.7	-	578,607.7	-	-
촉진 구역	소 계		230,917.7	-	230,917.7	-	-
	미아6구역	미아동 1268-1 일대	77,557.2	-	77,557.2	주택재개발	-
	미아8구역	미아동 653 일대	83,752.8	-	83,752.8	주택재개발	-
	미아12구역	미아동 1265-42 일대	69,607.7	-	69,607.7	주택재개발	-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347,690.0		347,690.0	-	-
	기존 아파트 (SK, 풍림)	미아동 852 일대 미아동 1266-82 일대	342,292.0	-	342,292.0	존치	-
	기타 존치지역	미아동 1341-2 일대 미아동 1267-19 일대	5,398.0	-	5,398.0	존치	-

5.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1) 미아6구역 주택재개발 (변경없음)

2) 미아8구역 주택재개발 (변경)

가)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3,752.80	-	83,752.80	100.00	
택지	소계		64,594.18	-	64,594.18	77.12	
	택 지 1		46,337.60	-	46,337.60	55.33	공동주택
	택 지 2		14,965.58	-	14,965.58	17.87	공동주택
	택 지 3		1,682.00	-	1,682.00	2.01	관계법령에 따름
	택지4 (존치)	소 계	1,609.00	-	1,609.00	1.92	
		미아동 887-5	290.00	-	290.00	0.35	상가건물
		미아동 852-125외 2	1,319.00	-	1,319.00	1.57	미아사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9,158.62	-	19,158.62	22.88	
	도 로		9,345.69	-	9,345.69	11.16	
	녹 지		296.00	-	296.00	0.35	
	공 원		4,844.80	-	4,844.80	5.78	
	공공청사		3,804.13	감)3,804.13	-	-	
	문화시설		-	증)3,804.13	3,804.13	4.54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중복결정
	체육시설						
	공공공지		868.00	-	868.00	1.04	

주) 변경사유 : 저이용되고 있는 규유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청사 폐지 후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결정

(2)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도 로 (변경없음)

(나) 공 원 (변경없음)

(다) 녹 지 (변경없음)

(라) 학 교 (변경없음)

(마) 공공청사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공공청사	-	미아동 700-35	3,804.13	감) 3,804.13	-	2006.10.09. (서고334호)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A = 3,804.13㎡ → 0㎡	미아6구역 내 공공청사(삼각산동주민센터)건립되어 운영 중으로 추가적인 공공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상실하여 미아8구역 내 공공청사 폐지

(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신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문화시설	-	미아동 811-2	-	증) 3,804.13	3,804.13	-	중복 결정
	체육시설	-						

—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신설 - A = 3,804.13㎡ -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결정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요구가 높으며, 입지적 특성 및 개발잠재력에 비하여 현저히 저이용되고 있는 구유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로 중복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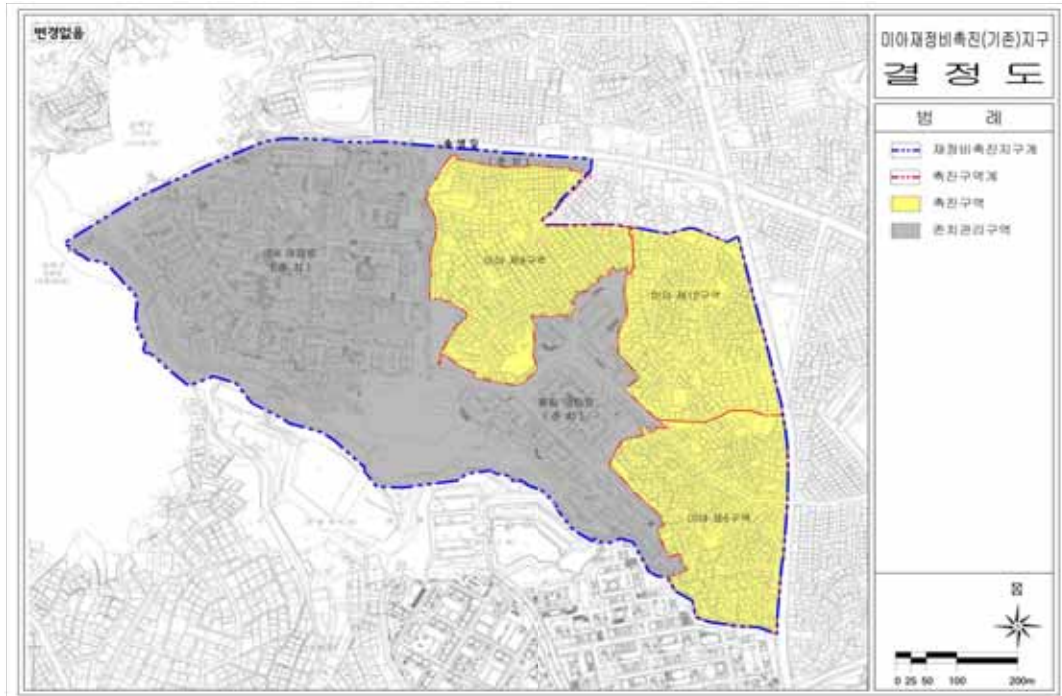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3) 미아12구역 주택재개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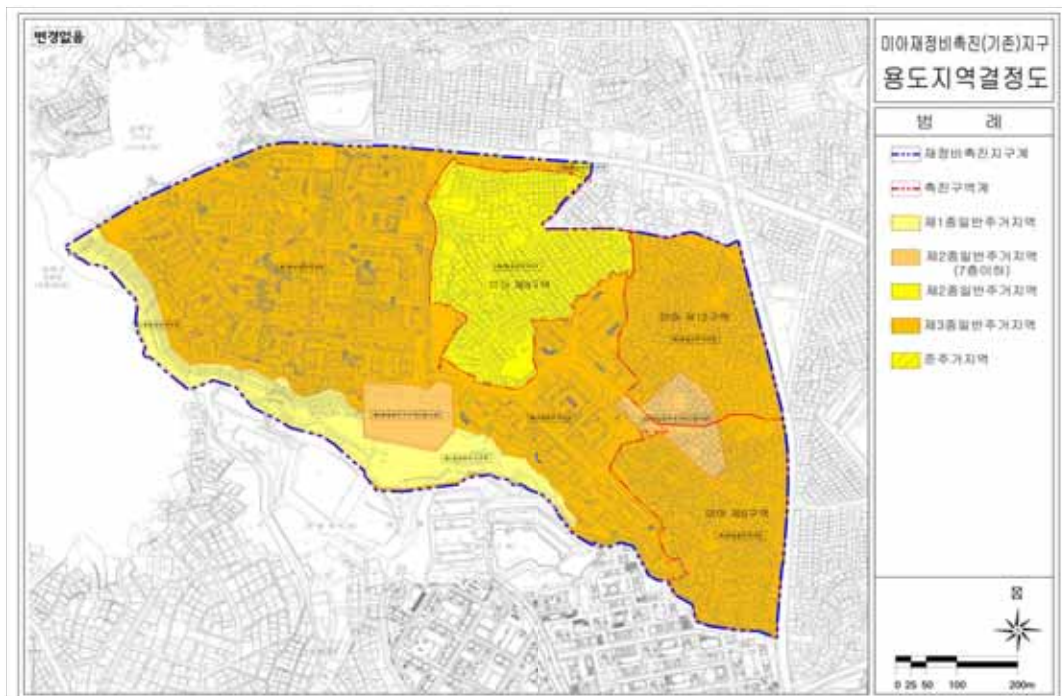
6.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7.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8.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8)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6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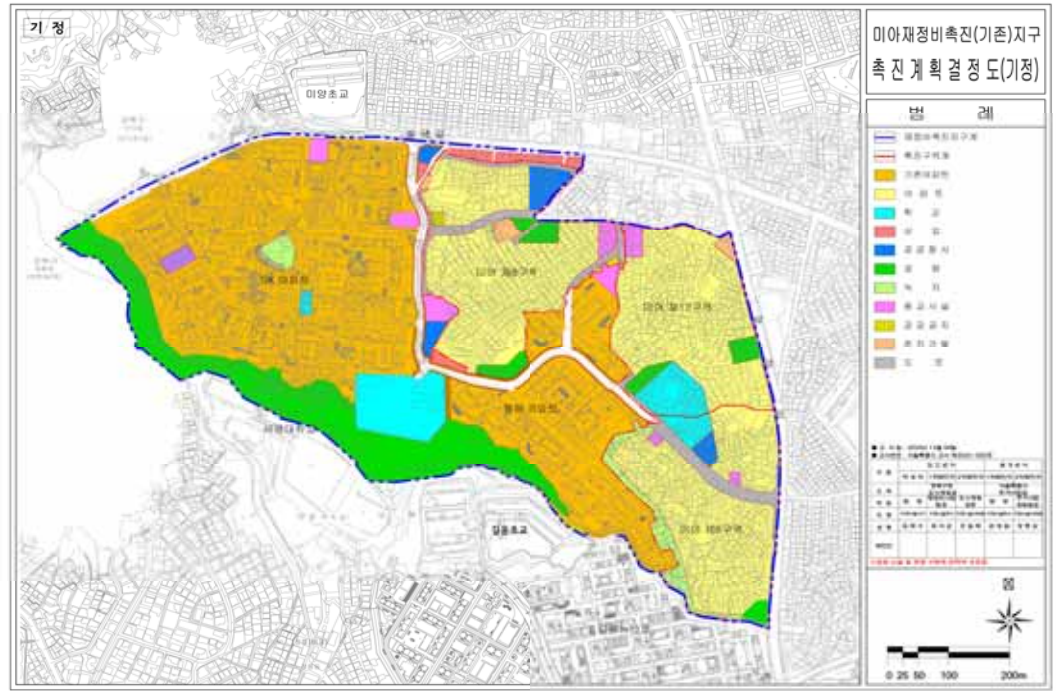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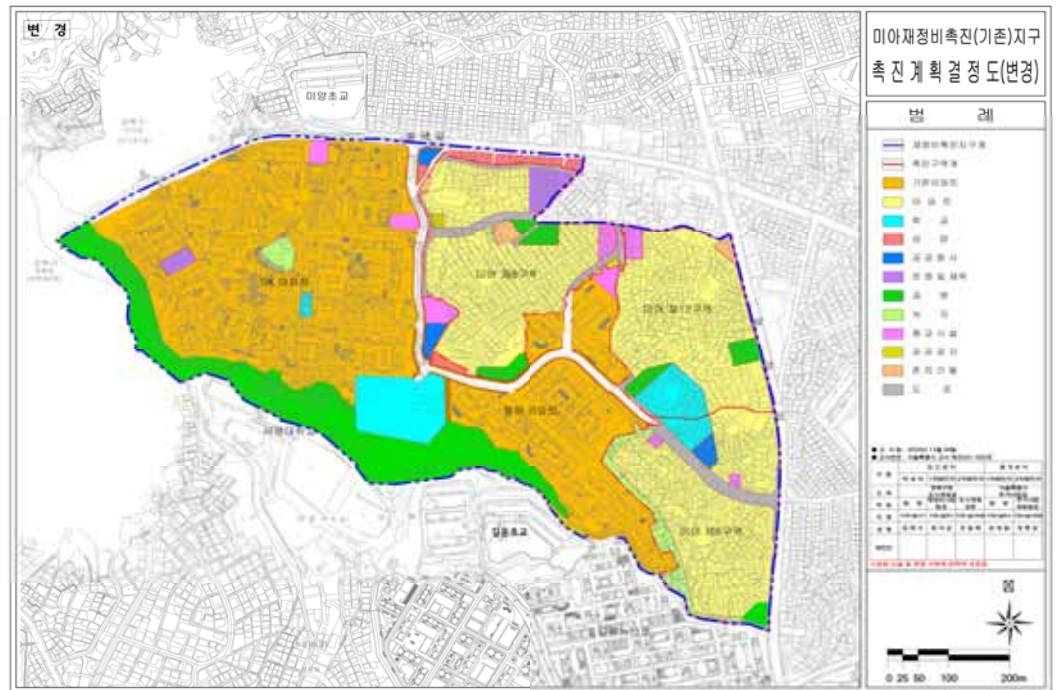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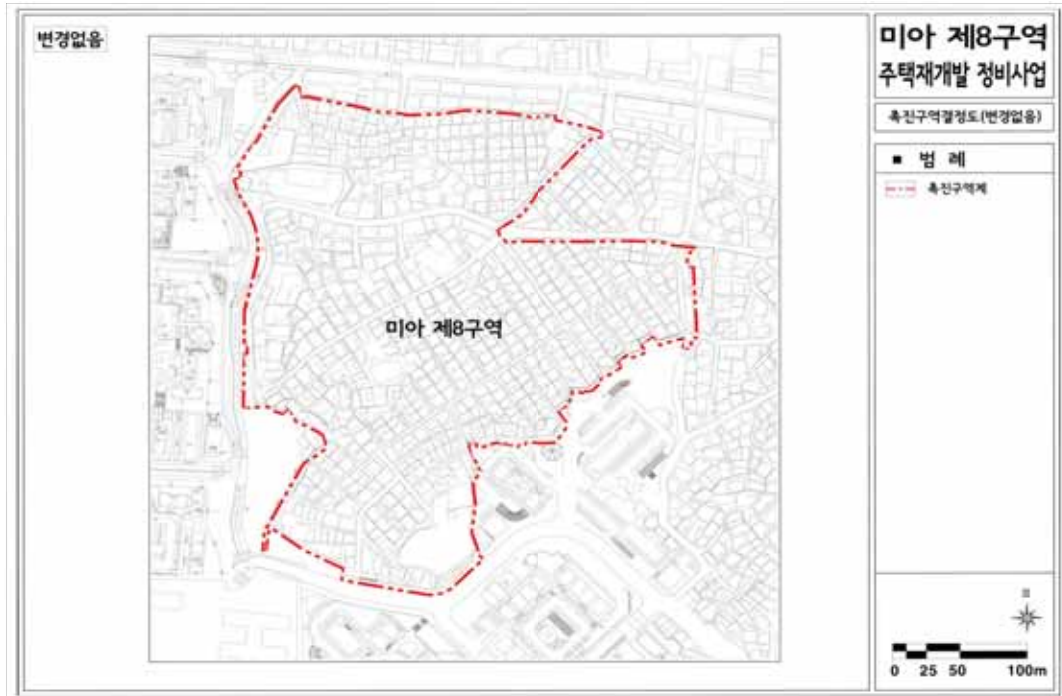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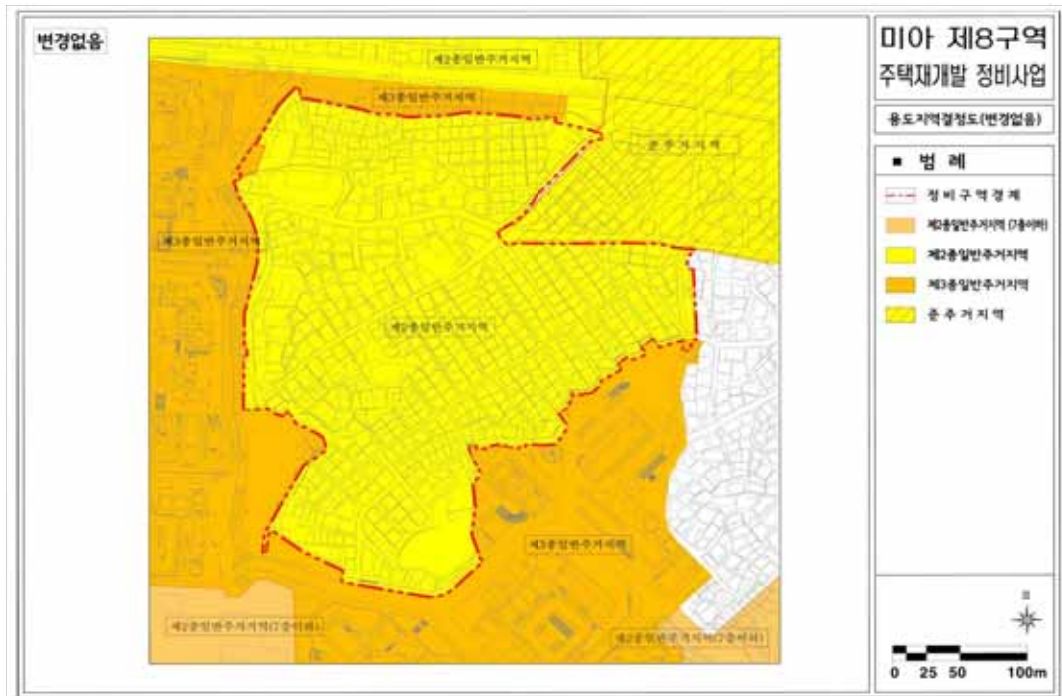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 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미아8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미아8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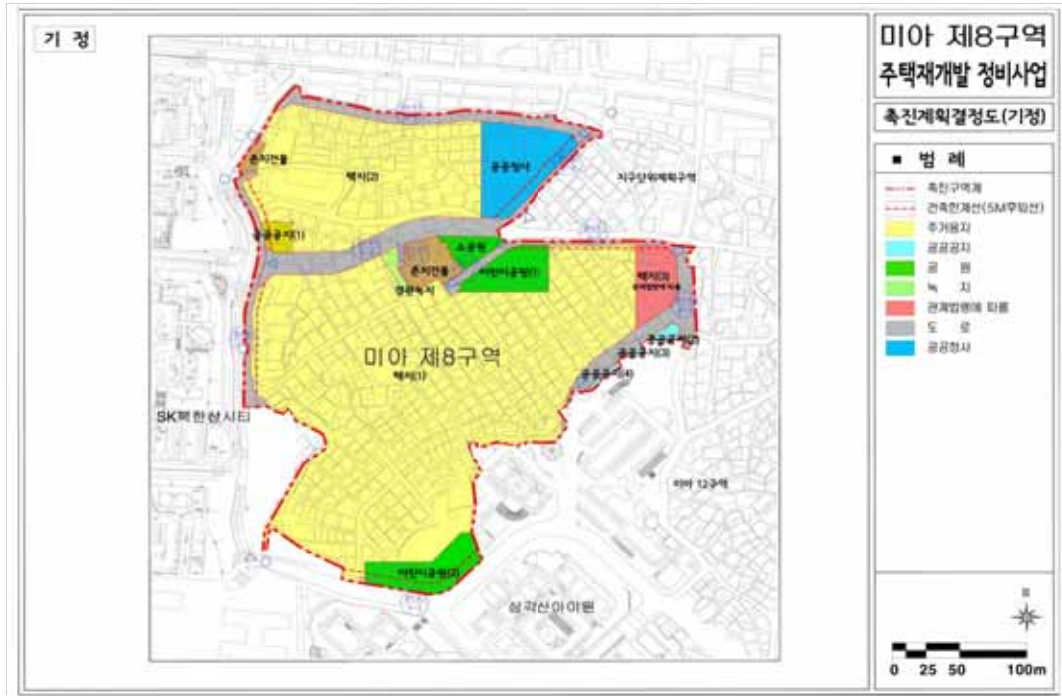
■ 미아8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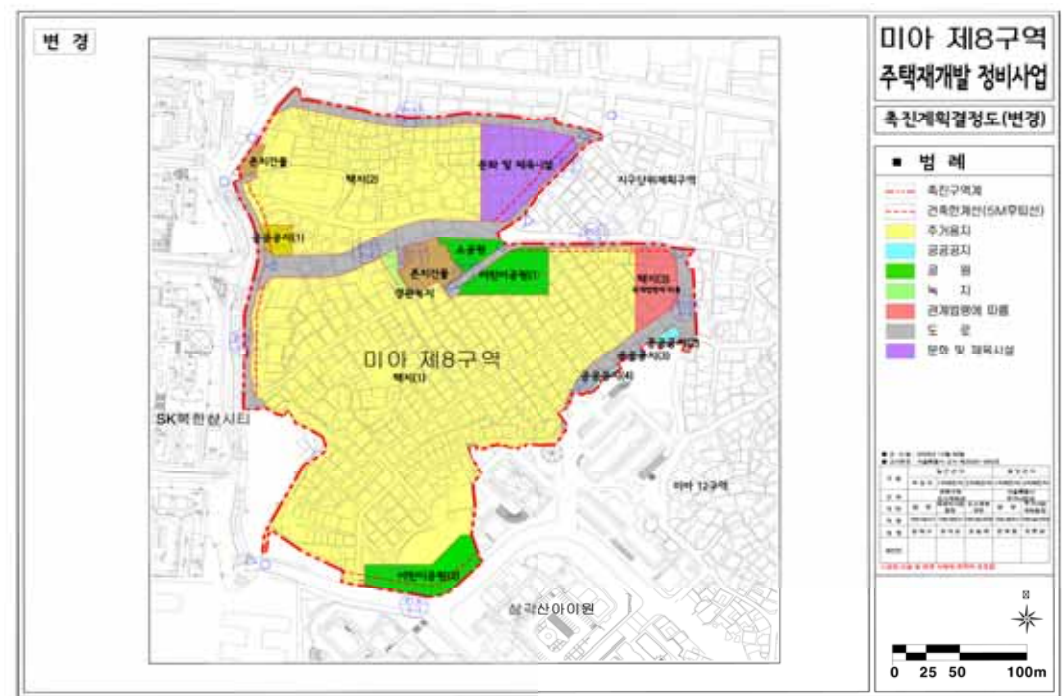
■ 미아8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변경



■ 미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 미아8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2021 - 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0.11.04.)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강남원 호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24,729.0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4,729.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604.0	2.4	-
	도 로	604.0	2.4	기부채납
획 지	소 계	24,125.0	97.6	
	획 지	24,125.0	97.6	공동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729.0	-	24,729.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4,729.0	-	24,729.0	1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68	반포동 590-38	반포동 99-2	일반 도로	-	금회	-

※ 도로번호 A는 임시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A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68m	대상지 남측 현황도로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기 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관리사무소	획지	-	증) 143.0	143.0	
	경비실	"	-	증) 70.0	70.0	
	근린생활시설	"	-	증) 1,230.57	1,230.57	
	주민 공동 시설	합계	-	증) 1,401.21	1,401.21	
		경로당	-	증) 85.0	85.0	
		주민운동시설	-	증) 570.0	570.0	
		기타 주민공동시설	-	증) 746.21	746.21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24,729.0	획지	24,125.0	반포동 591-1번지 일대	17	-	-	17	-	

7. 건축물시설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정비계획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24,729.0	획지	24,125.0	반포동 591-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50 이하	20m이하/ 4층이하 (필로티포함)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주택공급계획 : 103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tr><th colspan="2">규모</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고</th></tr><tr><td colspan="2">합 계</td><td>103</td><td>100.0</td><td>-</td></tr><tr><td rowspan="2">85㎡ 이하</td><td>60㎡ 이하</td><td>-</td><td>-</td><td>-</td></tr><tr><td>60㎡ 초과 85㎡ 이하</td><td>-</td><td>-</td><td>-</td></tr><tr><td colspan="2">85㎡ 초과</td><td>103</td><td>100.0</td><td>조합원분양</td></tr></tab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용 해당 없음								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103	100.0	-	85㎡ 이하	60㎡ 이하	-	-	-	60㎡ 초과 85㎡ 이하	-	-	-	85㎡ 초과		103	100.0	조합원분양
			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103	100.0	-																											
			85㎡ 이하	60㎡ 이하	-	-	-																											
				60㎡ 초과 85㎡ 이하	-	-	-																											
			85㎡ 초과		103	100.0	조합원분양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tr><td>대상지 동측 (사평대로20길)</td><td>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td><td rowspan="3">도면참고</td></tr><tr><td>대상지 남측 (동광로33길)</td><td>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td></tr><tr><td>대상지 북측 (사평대로20길)</td><td>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td></tr></table>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지 동측 (사평대로20길)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도면참고	대상지 남측 (동광로33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대상지 북측 (사평대로20길)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지 동측 (사평대로20길)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도면참고																													
			대상지 남측 (동광로33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대상지 북측 (사평대로20길)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 용적률 계획

구분		산 정 내 용				
주거 지역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용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24,729.0㎡	24,125.0㎡	604.0㎡	0㎡	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순부담 = 604.0㎡ - 0㎡ - 0㎡ = 604.0㎡(구역면적 대비 2.4%)				
용적률	용적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 150% 이하 적용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기준	허용 상한 법정상한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조례상 용적률(150%) 이하		4층 이하 (필로티 포함)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미적용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 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가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화재	• 공동주택(연립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자연 환경	1. 생태면적률	30%	●계획대상지 내 공간유형별 확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적용예정
	2. 녹지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계획대상지 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 녹지는 거의 없음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기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지형 변화 거의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4. 비오톱	5등급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조경공간의 확보
생활 환경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계획대상지 주변으로 주거지 위치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7.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8. 경관	skyline 보전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가로녹시율 30%	●계획대상지 내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18.41~38.06%로 조사	●조경공간의 확보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주변에 휴식 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조경공간의 확보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물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교통분담을 위한 자전거 이용	-
추가	11. 대기질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가스발생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계획대상지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12. 물순환(수질)		●운영시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13. 폐기물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14. 소음 및 진동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가설방음판넬설치 ●녹지공간조성

9.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감	
신설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재건축)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가칭)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03	103	-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주변 방배중학교, 프랑스학교 입지	•대상지를 기준으로 약 200m이내에 동측으로 서울프랑스학교, 남동측으로 방배중학교 위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추후, 동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CPTED)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기회 차단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24,729.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729.0	-	24,729.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4,729.0	-	24,729.0	100.0	-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68	반포동 590-38	반포동 99-2	일반 도로	-	금회	-

※ 도로번호 A는 임시번호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A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68m	대상지 남측 현황도로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도 도로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	증) 24,125.0	24,125.0	100.0	-
획지	-	-	증) 24,125.0	24,125.0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규	허용용도	획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규	제1종일반주거지역	획지	6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적률 계획

구분	가구	면적(㎡)	용 적 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신규	획지	24,125.0	1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조례 상 용적률 150% 이하 적용

다)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신규	제1종일반주거지역	획지	20m 이하 / 4층 이하(필로티 포함)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동측 사평대로20길변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남측 동광로33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북측 사평대로20길변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인도부속형 전면공지 3m)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전면공지	동측 사평대로20길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남측 동광로33길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북측 사평대로20길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자연 환경	1. 생태면적률	30%	•계획대상지 내 공간유형별 확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적용예정
	2. 녹지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계획대상지 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조경 및 녹지계획에 반영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기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지형 변화 거의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4. 비오톱	5등급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조경공간의 확보
생활 환경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계획대상지 주변으로 주거지 위치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7.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8. 경관	skyline 보전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가로녹시율 30%	•계획대상지 내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18.41~38.06%로 조사	•조경공간의 확보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주변에 휴식 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조경공간의 확보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물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교통분담을 위한 자전거 이용	-
추가	11. 대기질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가스발생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계획대상지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12. 물순환(수질)		•운영시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13. 폐기물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14. 소음 및 진동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가설방음판넬설치 •녹지공간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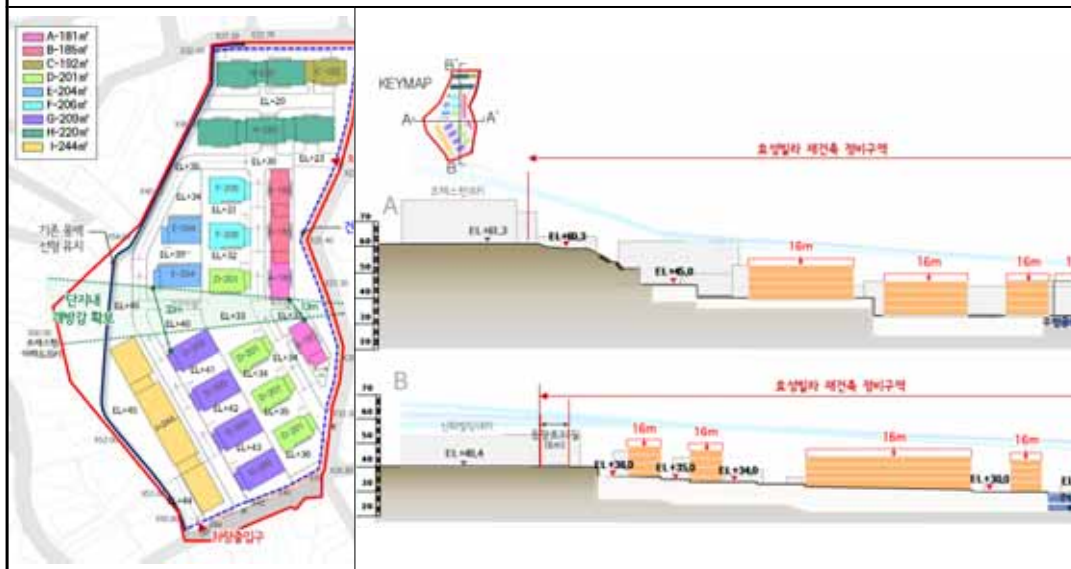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미적용

□ 2020년 서울시 제15차('20.11.0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1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대상지 내의 지형단차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계획이 가능하도록 높이계획(20m) 및 1개 층고의 높이(5m) 적정성을 검토할 것	추후 반영
	2	보행동선계획 관련 금회 상정안의 대지조성계획(+29m~+45m) 상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적정 수직동선을 추가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무장애 설계(barrier free)가 되도록 조정할 것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건축계획(안)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신설)
4.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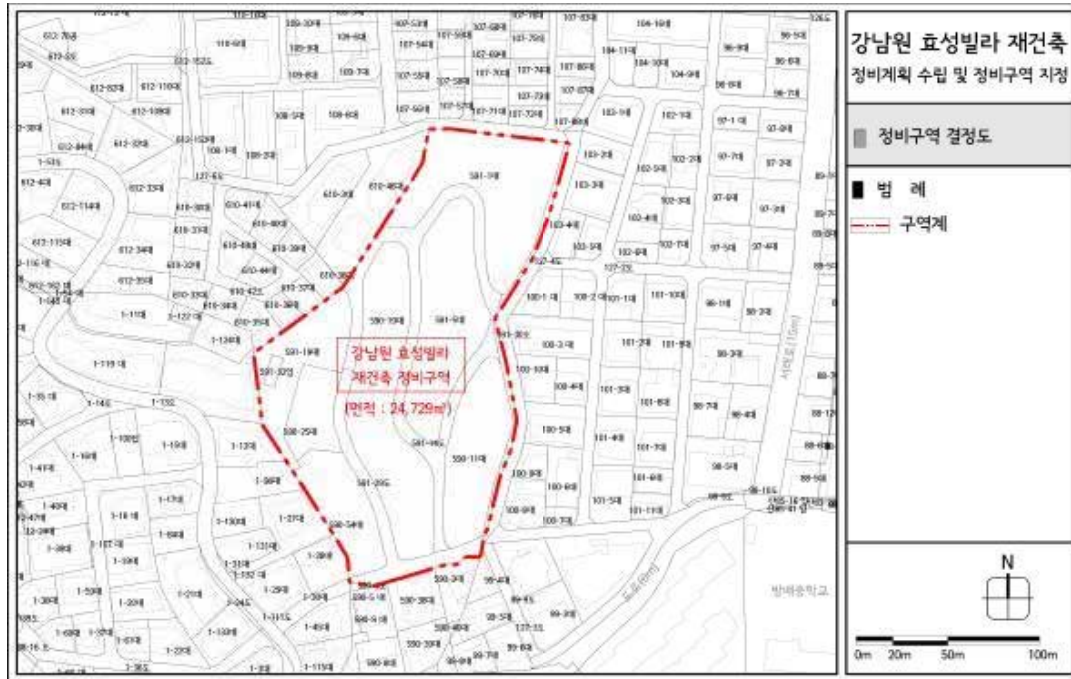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2),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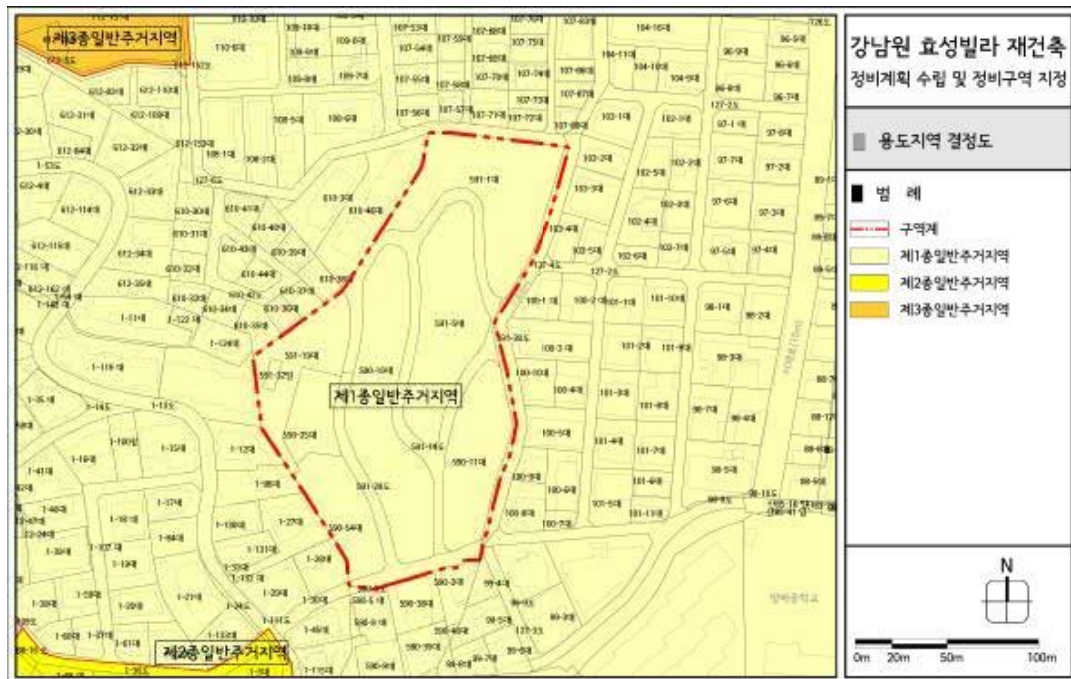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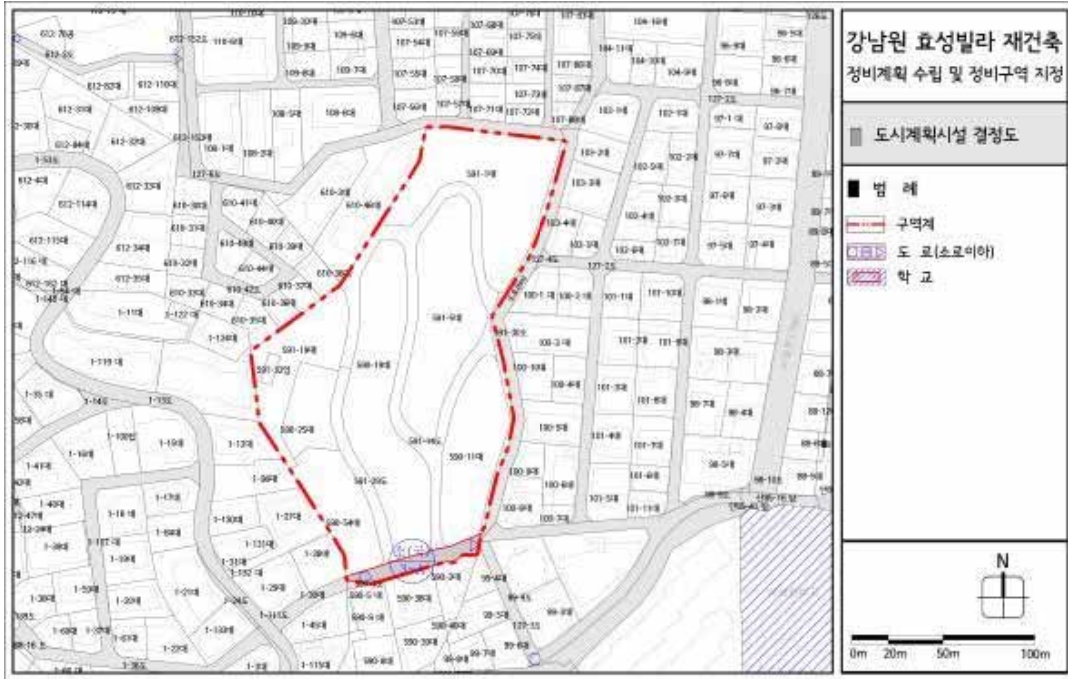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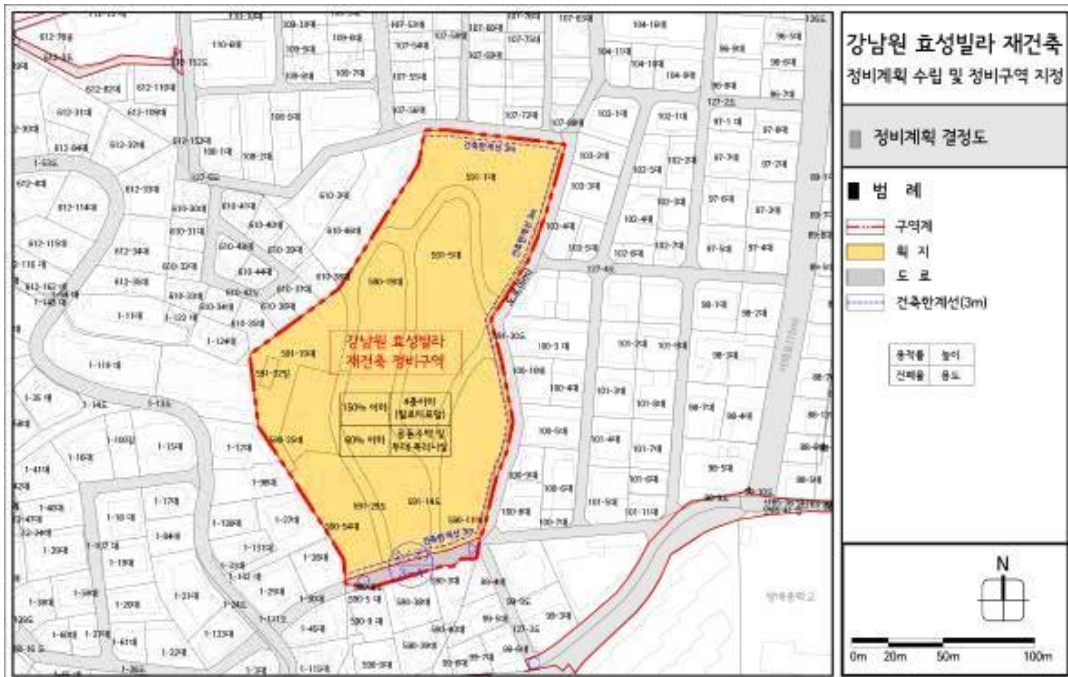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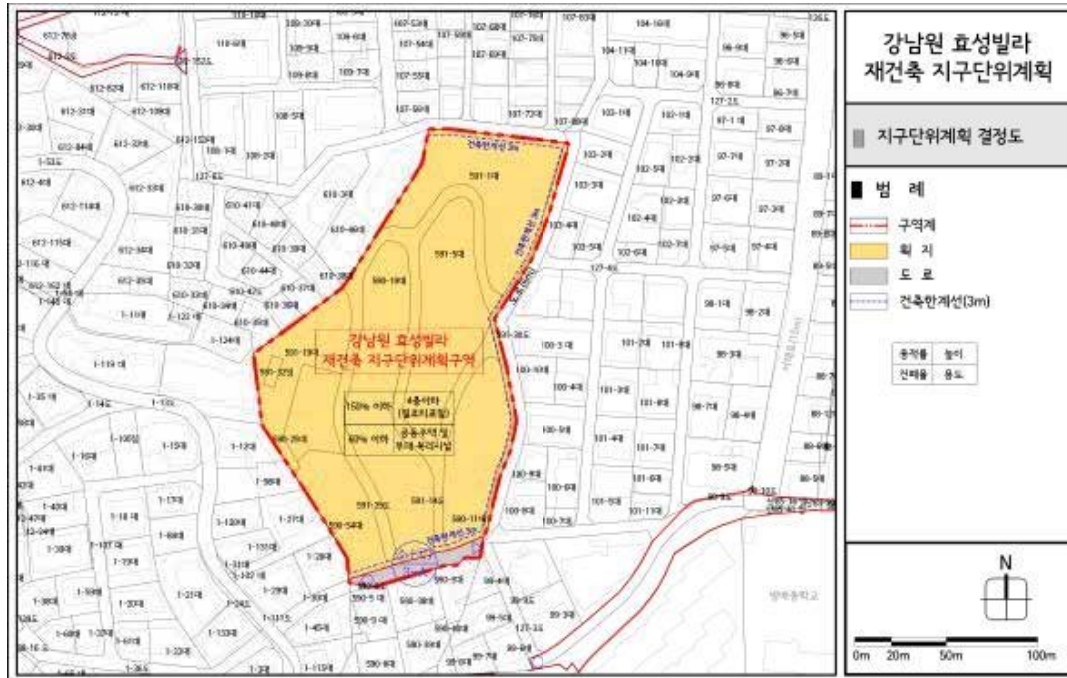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신설)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2021 - 30

1

()

서울특별시 제2009-225호(2009.6.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27호(2020.7.30.)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익 시설 설치 등에 따른 공원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3. 면 적 : 3,234㎡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광진구 공원녹지과(☎450-7773)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

가. 총괄표 (위치 :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234.00	1,295.86	1	16.56	136.80	11	3,234.00	1,424.60	2	49.47	169.71	13	-
기 반 시 설	소계	1,044.55	1,044.55					1,093.26	1,093.26					증 48.71㎡
	도로	641.71	641.71					802.11	802.11					증 160.40㎡
	광장	402.84	402.84					291.15	291.15					감 111.69㎡
조경시설		4.13	4.13					5.33	5.33					증 1.2㎡
휴양시설		153.83	153.83				3	194.84	194.84				3	증 41.01㎡
운동시설		27.00	27.00				4	34.27	34.27				4	증 7.27㎡
편익시설		32.96	32.96	1	16.56	136.80	2	65.87	65.87	2	49.47	169.71	3	증 32.91㎡
관리시설		33.39	33.39				2	31.03	31.03				3	감 2.36㎡
녹지 및 기타		1,938.14	-					1,809.40	-					감 128.74㎡
공 원 시 설 륜 (법정 제한없음)		1,295.86㎡ / 3,234.00㎡ x 100% = 40.07%						1,424.60㎡ / 3,234.00㎡ x 100% = 44.05%						증 3.98%
공 원 건 폐 율 (법정 20% 이하)		16.56㎡ / 3,234.00㎡ x 100% = 0.51%						49.47㎡ / 3,234.00㎡ x 100% = 1.53%						증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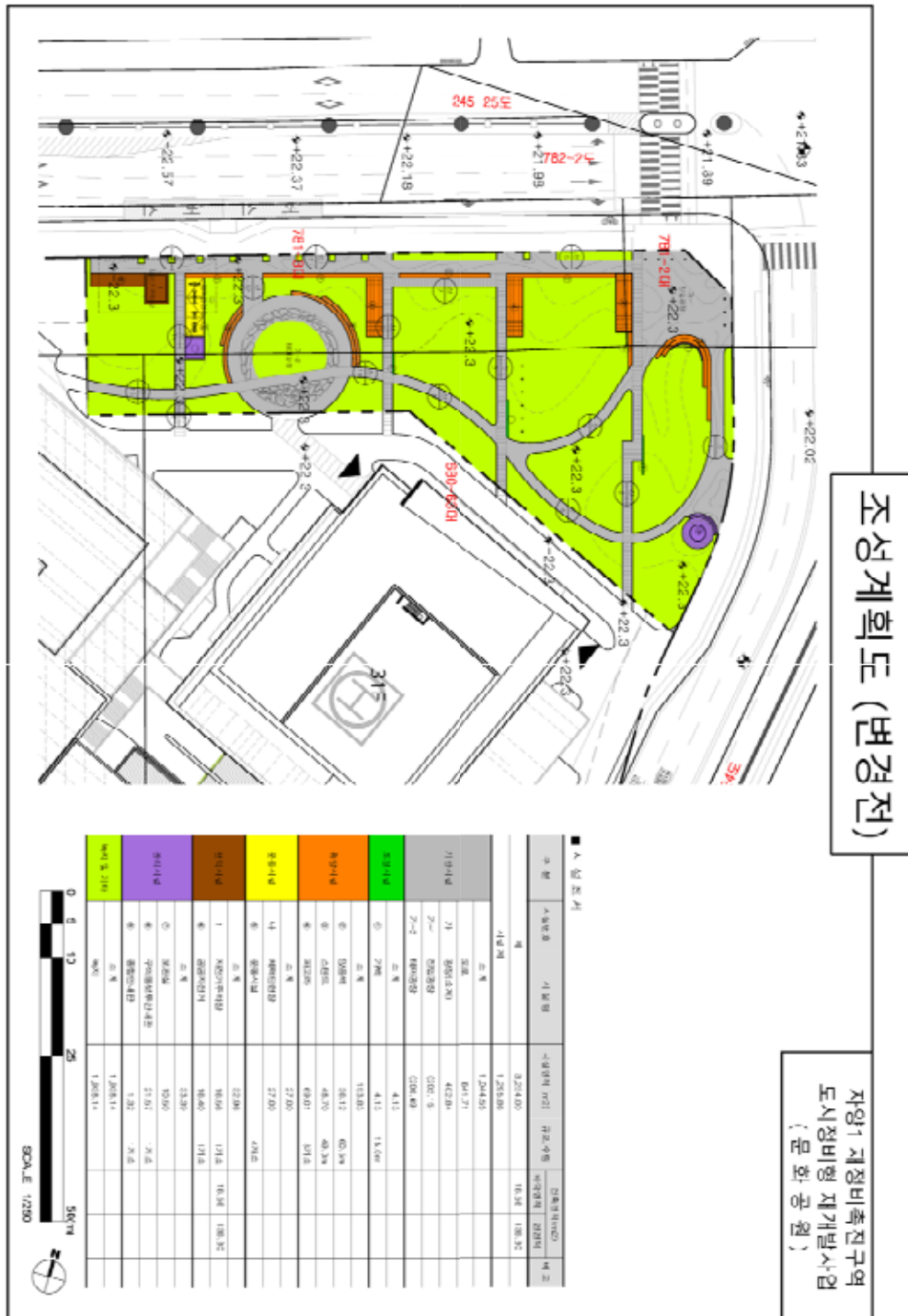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합 계			3,234.00	1,295.86		1동	바닥면적	연면적				3,234.00	1,424.60		2동	바닥면적	연면적		-
기 반 시 설	소 계			1,044.55	1,044.55								1093.26	1093.26						증 48.71㎡
	도로		자양동 680-63 일대	641.71	641.71							자양동 680-63 일대	802.11	802.11						증 160.40㎡
	광장	가	"	402.84	402.84						가	"	291.15	291.15						감 111.69㎡
	(지입광장)	가-1	"	(202.15)	(202.15)						가-1	"	(117.18)	(117.18)						감 84.97㎡
	(테마광장)	가-2	"	(200.69)	(200.69)						가-2	"	(173.97)	(173.97)						감 26.72㎡
조 경 시 설	소 계			4.13	4.13								5.33	5.33						증 1.2㎡
	가벽	①	자양동 680-63 일대	4.13	4.13						①	자양동 680-63 일대	5.33	5.33						증 1.2㎡
	소 계			153.83	153.83					3			194.84	194.84					3	증 41.01㎡
휴 양 시 설	앉음벽	②	자양동 680-63 일대	36.12	36.12						②	자양동 680-63 일대	42.65	42.65						증 6.53㎡
	스텝	③	"	48.70	48.70						③	"	49.59	49.59						증 0.89㎡
	파고라	④	"	69.01	69.01					3	④	"	102.60	102.60					3	증 33.59㎡
	소 계			27.00	27.00					4			34.27	34.27					4	증 7.27㎡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장	나	자양동 680-63 일대	27.00	27.00						나	자양동 680-63 일대	34.27	34.27						증 7.27㎡
	체력단련시설	⑤	"	-	-					4	⑤	"	-	-					4	
	소 계			32.96	32.96			16.56	136.80	2			65.87	65.87		2동	49.47	169.71	3	증 32.91㎡
편 익 시 설	자전거주차장	1	자양동 680-63 일대	16.56	16.56	콘크리트	지하1층/지상1층	16.56	136.80	1	1	자양동 680-63 일대	16.56	16.56		1	16.56	136.80	1	-
	공공자전거	⑥	"	16.40	16.40					1	⑥	"	16.40	16.40					1	-
	화장실										2	"	32.91	32.91		1	32.91	32.91	1	신설
	소 계			33.39	33.39					2			31.03	31.03					3	감 2.36㎡
관 리 시 설	보관실	⑦	자양동 680-63 일대	10.50	10.50							자양동 680-63 일대								폐지
	보관소										3	"	8.91	8.91					1	신설
	구의동모루 안내판	⑧	"	21.57	21.57					1	⑦	"	21.68	21.68					1	증 0.11㎡
	종합안내판	⑨	"	1.32	1.32					1	⑧	"	0.44	0.44					1	감 0.88㎡
	소 계			1,938.14	-								1,809.40	-						감 128.74㎡
녹지 및 기타	녹지및기타		자양동 680-63 일대	1,938.14	-							자양동 680-63 일대	1,809.40	-						감 128.74㎡

다.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16.6	641.71				
변경					406.1	802.11				
당초	산책로	소 계			316.6	641.71				
변경					406.1	802.11				
당초			1	1.5~4.0	32.6	91.96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2	
변경			1	1.5~5.0	33.4	94.76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2	
당초			2	1.5~2.5	36.5	60.57	산책로	산책로1	-	
변경			2	1.5~3.0	55.6	89.52	산책로	산책로1	-	
당초			3	1.5~3.5	22.6	34.74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6	
변경			3	1.5~2.5	24.0	40.11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6	
당초			4	1.5	22.8	35.93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6	
변경			4	1.5~4.5	22.0	38.88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6	
당초			5	2.0~3.5	38.0	87.46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11	
변경			5	2.0~3.0	19.1	49.50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11	
당초			6	1.5	32.8	49.14	산책로	산책로5	-	
변경			6	1.5	34.6	55.82	산책로	산책로5	-	
당초			7	1.5~2.0	17.4	28.26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9	
변경			7	1.5	16.0	26.88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9	
당초			8	1.5~3.5	18.6	28.14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9	
변경			8	1.5~3.5	18.6	31.12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9	
당초			9	1.5	18.8	28.37	산책로	산책로7	-	
변경			9	1.5	24.4	40.58	산책로	산책로7	-	
당초			10	1.5	5.0	7.44	산책로	산책로8	테마광장	
변경			10	1.5	30.3	48.49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16	
당초			11	1.5~3.0	18.2	47.3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2	
변경			11	2.0~3.0	37.2	92.35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2	
당초			12	3.0	8.0	24.12	산책로	-	테마광장	
변경			12	3.0	7.9	26.63	산책로	-	테마광장	
당초			13	1.5~2.5	23.1	54.63	산책로	산책로12	자전거주차장	
변경			13	1.5~4.0	23.1	70.86	산책로	산책로12	자전거주차장	
당초			14	1.5	17.5	26.32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6	
변경			14	0.8~1.5	22.5	27.08	산책로	산책로16	보관소	
당초			15	1.5	22.6	33.82	산책로	테마광장	-	
변경			15	1.5	13.5	24.13	산책로	산책로16	-	
당초			16	1.5	2.4	3.52	산책로	산책로15	-	
변경			16	1.5	23.9	45.40	산책로	산책로13	-	



[illegible]자양1 지정비축진그루
도시정비형지개발사업
(문화공원)

2021 - 31

· (2 - 2) ()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4.7), 제2011-98호(2011.4.21), 제2011-112호(2011.5.6), 제2011-259호(2011.9.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5.10), 제2012-191호(2012.7.26), 제2013-190호(2013.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2.23), 제2017-196호(2017.6.1), 제2018-403호(2018.12.13.), 제2019-239호(2019.7.25.), 제2020-6호(2020.1.2.) 및 제2020-562호(2020.12.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	1,043,828.1	감) 43.4	1,043,784.7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여·마천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 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9년

○ 목표연도 : 202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1,043,828.1	감) 43.4	1,043,784.7	100.00	
촉진 지구	주거 용지	소계	705,617.6	증) 145.1	705,762.7	67.62	
		공동주택 (연도형주거)	360,193.5 (16,112.0)	증) 145.1	360,338.6 (16,112.0)	34.52 (1.54)	
		준주거	9,699.0	-	9,699.0	0.93	
		종교용지	6,008.4	-	6,008.4	0.58	
		택시차고지	3,060.0	-	3,060.0	0.29	덕왕기업, 명신운수
		존 치	326,656.7	-	326,656.7	31.30	마천1구역 환원
	정비 기반 기설 용지	소 계	338,210.5	감) 188.5	338,022.0	32.38	
		도 로	213,815.9	감) 88.0	213,727.9	20.48	
		공 원	40,271.7	감) 88.7	40,183.0	3.85	
		녹 지	3,682.7	감) 0.6	3,682.1	0.35	
		광 장	2,123.8	감) 11.2	2,112.6	0.20	
		하 천	25,811.9	-	25,811.9	2.47	성내천
		학 교	20,344.4	-	20,344.4	1.95	마천초교, 남천초교
		공공청사	11,894.3	-	11,894.3	1.14	복합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시설	2,290.0	-	2,290.0	0.22	마천1구역
		공공공지	8,484.9	-	8,484.9	0.81	미래공공공지 (5,639.9㎡) 포함
		주차장	2,772.9	-	2,772.9	0.27	
		공용버스차고지	5,218.0	-	5,218.0	0.50	
		유치원	300.0	-	300.0	0.03	
		보육시설	1,200.0	-	1,200.0	0.11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없음 (45,385인 / 12,548세대)

○ 총괄현황 : 변경없음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2,548	-	12,548	45,385	-	45,385	2.69인 적용
촉진 구역	소 계	9,598	-	9,598	25,819	-	25,819	
	60㎡이하	4,581	-	4,581	12,323	-	12,323	
	60~85㎡이하	4,126	-	4,126	11,099	-	11,099	부분임대추가
	85㎡초과	891	-	891	2,397	-	2,397	
존치지역		2,950	-	2,950	19,566	-	19,566	2.56인 적용

○ 구역별 현황 : 변경없음

구 분			현 황 (호)	기 정(호)			
				분 양	임 대	존 치	계
합 계			8,885	7,880	1,718	2,950	12,548
재정비 촉진 구역	거여2	1지구	1,096	1,577	368	-	1,945
		2지구	809	972	227	-	1,199
	마천시장		13	185	-	-	185
	마천1		1,605	2,018	395	-	2,413
	마천3		1,698	2,052	421	-	2,473
	마천4		714	1,076	307	-	1,383
	존치관리구역			1,088	-	-	2,950
지구편입 (거여새마을, 마천식당)			1,136	-	-		
마천2구역			726	-	-		

주1) 현황 주택(호)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사를 기준으로 함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교육시설 : 변경없음

학 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21,110.4	-	21,110.4	
마천초등학교	마천동 183-4일대	10,921.0	-	10,921.0	
남천초등학교	마천동 67일대	9,889.4	-	9,889.4	마천1구역내 학교용지폐지
유치원	마천동 363-6일대	300.0	-	300.0	마천3구역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 변경없음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22,669.2	-	22,669.2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여동 195-1일대	3,254.3	-	3,254.3	• 기정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복합화 - 거여2동주민센터 존치 -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복합화
공공청사 (여성지원관련시설)	마천동 128-129일대	750.0	-	750.0	•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211-45일대	2,788.0	-	2,788.0	• 인성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시설 복합화 -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567-2일대	5,102.0	-	5,102.0	• 청소년활동시설 및 여성취업센터, 아동보육 등 여성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마천동 128-9일대	2,290.0	-	2,290.0	• 노인복지센터 신설
공공공지	거여동 198-17 (거여2구역)	1,467.0	-	1,467.0	• 공공공지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거여동 41-4 (거여2구역)	5,639.9	-	5,639.9	• 공공공지→개발수요 발생시 공공시설로 개발
공공공지	마천동 185-6일대 (마천1구역)	1,378.0	-	1,378.0	• 공공공지 신설→마천1구역내 대로변 보행자 통행과 휴식공간 제공

주)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의 도입용도 중 치안센터는 송파경찰서(경무과-5064(2020.3.31))에 따라 제외하였음
(치안센터,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복합화 →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복합화)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 공원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40,271.7	감) 88.7	40,183.0	14개소
근린공원	소 계			10,569.0	감) 88.7	10,480.3	1개소
	향유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569.0	감) 88.7	10,480.3	
어린이 공원	소 계			5,759.0	-	5,759.0	5개소
	1	두레어린이공원	마천동 364-5일대	75.0	-	75.0	
	2	용마공원	마천동 45	1,500.0	-	1,500.0	현황공원
	3	개미공원	거여동 29	1,500.0	-	1,500.0	현황공원
	4	모슬어린이공원	거여동 28-7	550.0	-	550.0	현황공원
	5	-	마천동 71-2일대	2,134.0	-	2,134.0	
소공원	소 계			23,943.7	-	23,943.7	8개소
	1	①	거여동 181-143일대	1,139.7	-	1,139.7	
	2	②	마천동 327-7일대	1,501.0	-	1,501.0	
	3	A	마천동 363-2일대	591.0	-	591.0	
	4	B	마천동 364-8일대	5,420.0	-	5,420.0	
	5	C	마천동 276일대	7,682.0	-	7,682.0	
	6	D	마천동 586일대	612.0	-	612.0	
	7	③	마천동 157-7일대	1,373.0	-	1,373.0	
	8	④	마천동 158-8일대	5,625.0	-	5,625.0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 녹지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682.7	감) 0.6	3,682.1	4개소
경관녹지	마천동 207-2일대	1,025.0	-	1,025.0	마천3구역
경관녹지	마천동 329-22일대	113.0	-	113.0	마천3구역
경관녹지	마천동 309-55일대	2,108.0	-	2,108.0	마천4구역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7	감) 0.6	436.1	거여2-2구역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Ⅰ장, [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Ⅰ장, [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거여2	C	거여동	202	16.0ha	230%	-	60%	1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감) 43.4㎡
변경	거여2	C	거여동	202	16.0ha	230%	-	60%	1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1	C	마천동	194-1	14.8ha	210%	-	6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3	C	마천동	283	13.4ha	210%	-	6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4	C	마천동	323	6.1ha	210%	-	5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주1) 1단계 : 2008년부터, 2단계 : 2010년부터, 3단계 : 2012년부터

주2)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계				1,043,828.1	감) 43.4	1,043,784.7	100.0	-	-
촉진 구역	소 계			513,026.7	감) 43.4	512,983.3	49.0	-	5개소
	거여2 구역	1지구	거여동 180일대	98,438.6	-	98,438.6	9.4	주택재개발	-
		2지구	거여동 234일대	61,850.1	감) 43.4	61,806.7	5.9	주택재개발	-
	마천시장구역		마천동 140-3일대	9,757.0	-	9,757.0	0.9	시장재건축	-
	마천1구역		마천동 194-1일대	148,498.0	-	148,498.0	14.2	주택재개발	-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마천3구역	마천동 283일대	133,830.0	-	133,830.0	12.8	주택재개발	-
	마천4구역	마천동 323일대	60,653.0	-	60,653.0	5.8	주택재개발	-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530,801.4	-	530,801.4	51.0	-	-
	존치시설	-	145,823.4	-	145,823.4	14.0	-	-
	마천성당	마천동 93-5일대	163,480.0	-	163,480.0	15.7	-	-
	거여새마을	거여동 549일대	123,282.0	-	123,282.0	11.8	-	-
	마천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천동 183일대 (마천동307-48일대)	80,944.0 (12,485.0)	-	80,944.0 (12,485.0)	7.8 (1.2)	-	-
	거여2지구단위계획	거여동 37일대	17,272.0	-	17,272.0	1.7	-	-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043,828.1	감) 43.4	1,043,784.7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22,109.0	-	122,109.0	11.7
	2종(7층)일반주거지역	299,585.0	-	299,585.0	28.7
	2종일반주거지역	328,642.6	감) 43.4	328,642.6	31.5
	제3종일반주거지역	260,383.5	-	260,383.5	24.9
	준주거지역	33,108.0	-	33,108.0	3.2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가) 거여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60,288.7	감) 43.4	160,245.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611.2	감) 43.4	18,567.8	11.6
	제3종일반주거지역	141,677.5	-	141,677.5	88.4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나) 마천시장구역(시장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라) 마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마) 마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거여 2구역	1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5.0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7.1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7.0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시장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400.0이하	150이하/150이하	60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27.4이하	22이하/250이하	100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3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70.5이하	22이하/250이하	119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4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300.0이하	30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 거여2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기반시설 면적 변경으로 상한용적률 재산정

주1)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주2) 마천1구역 상한용적률은 가중평균용적률임(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263.7%이하)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촉진지구 기반시설

구 분		면 적 (㎡)			비율(%)
		기 정	증 감	변 경	
재정비촉진지구		1,043,828.1	-	1,043,784.7	100.00
기 반 시 설	소 계	338,210.5	감) 188.5	338,022.0	32.38
	도 로	213,815.9	감) 88.0	213,727.9	20.48
	공 원	40,271.7	감) 88.7	40,183.0	3.85
	녹 지	3,682.7	감) 0.6	3,682.1	0.35
	광 장	2,123.8	감) 11.2	2,112.6	0.20
	하 천	25,811.9	-	25,811.9	2.47
	학 교	20,344.4	-	20,344.4	1.95
	공공청사	11,894.3	-	11,948.8	1.14
	사회복지시설	2,290.0	-	2,290.0	0.22
	공공공지	8,484.9	-	8,479.8	0.81
	주차장	2,772.9	-	2,772.9	0.27
	유치원	300.0	-	300.0	0.03
	보육시설	1,200.0	-	1,200.0	0.11
	공용버스차고지	5,218.0	-	5,218.0	0.50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구 분	재정비촉진구역								
	거여2		마천 시장	마천1	마천3	마천4	존치지역	지구전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 적	160,288.7	160,245.3	9,757	148,498	133,830	60,653	530,801.4	1,043,828.1	1,043,784.7
합 계	46,992.3	46,803.8	2,588	38,907.5 ※3,090.7	42,845 ※7,978	15,167	191,710.7	338,210.5 ※11,068.7	338,022.0 ※11,068.7
도 로	23,666.9	23,578.9	2,588	24,924.5	17,332	10,033	135,271.5	213,815.9	213,727.9

구 분	재정비촉진구역									
	거여2		마천 시장	마천1	마천3	마천4	존치지역	지구전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구성비
공 원	11,708.7	11,620.0	-	8,952.0	13,693	1,501	4,417.0	40,271.7	40,183.0	3.85
녹 지	436.7	436.1	-	-	-	2,108	1,138.0	3,682.7	3,682.1	0.35
광 장	2,123.8	2,112.6	-	-	-	-	-	2,123.8	2,112.6	0.20
하 천	-	-	-	613.0	-	-	25,198.9	25,811.9	25,811.9	2.47
학 교	-	-	-	-	-	-	20,344.4	20,344.4	20,344.4	1.95
공공청사	1,949.3	1,949.3	-	750.0 ※688.6	5,102 ※5,195	1,525	2,568.0	11,894.3 ※5,883.6	11,894.3 ※5,883.6	1.14
사회복지시설	-	-	-	2,290.0 ※2,402.1	-	-	-	2,290.0 ※2,402.1	2,290.0 ※2,402.1	0.22
공공공지 (미래 공공용지)	7,106.9 (5,639.9)	7,106.9 (5,639.9)	- (-)	1,378.0 (-)	- (-)	- (-)	- (-)	8,484.9 (5,639.9)	8,484.9 (5,639.9)	0.81
주 차 장	-	-	-	-	-	-	2,772.9	2,772.9	2,772.9	0.27
보육시설	-	-	-	-	1,200 ※2,280	-	-	1,200.0 ※2,280	1,200.0 ※2,280	0.11
유 치 원	-	-	-	-	300 ※149	-	-	300.0 ※149	300.0 ※149	0.03
자동차 정류장	-	-	-	-	5,218 ※354	-	-	5,218.0 ※354	5,218.0 ※354	0.50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주1) “※”는 시설기부채납에 따른 건축물 환산부지면적임

주2) 마천1구역의 건축물 환산부지면적(3,090.7㎡)은 공공청사-여성지원시설 및 주거복지센터(688.6㎡),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2,402.1㎡)

구 분	소계		재정비촉진구역				
			거여2		마천1	마천3	마천4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재정비촉진사업구역(㎡)①	503,269.7	503,226.3	160,288.7	160,245.3	148,498	133,830	60,653
평균 분담률(%)②	11.91						
계획기반시설(㎡)③	153,298.5	153,110.0	46,992.3	46,803.8	41,998.2	49,141	15,167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④	33,643.1	33,643.1	13,037.5	13,037.5	7,012.6	10,521	3,072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⑤	59,532.0	59,532.0	16,308.6	16,308.6	18,698.4	19,518	5,007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⑥	-	-	-	-	-	-	-
순분담면적(㎡)B=③-④-⑤-⑥	60,123.4	59,934.9	17,646.2	17,457.7	16,287.2	19,102	7,088
순부담비율(%)	11.95	11.91	11.0	10.89	10.97	14.27	11.69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구분	도정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도정법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심의기준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합 계				
	소계	40㎡ 이하	40~50㎡	50~60㎡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계	40㎡ 이하	40~50㎡	50~60㎡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계	474	238	180	56	63	25	25	13	-	-	-	-	-	-	58	39	17	2	595 (19%)	302 (51%)	222 (37%)	71 (12%)	- (0%)
거여	2-1	293	147	109	37	43	16	16	11	-	-	-	-	-	32	29	3	-	368 (19%)	192 (52%)	128 (35%)	48 (13%)	- (0%)
	2-2	181	91	71	19	20	9	9	2	-	-	-	-	-	26	10	14	2	227 (19%)	110 (49%)	94 (41%)	23 (10%)	- (0%)
마천1		367	273	94	-	-	-	-	-	-	-	-	-	-	28	23	5	-	395 (16%)	296 (75%)	99 (25%)	- (0%)	- (0%)
마천3		315	315	-	-	69	69	-	-	-	-	-	-	-	37	15		22	421 (17%)	345 (82%)	- (0%)	76 (18%)	- (0%)
마천4		158	70	74	14	-	-	-	-	132	26	61	9	36	17	8	7	2	307 (22%)	104 (34%)	142 (46%)	25 (8%)	36 (12%)
합계		1,314	896	348	70	132	94	25	13	-	132	26	61	9	140	85	29	26	1,718	1,047	463	172	36

주1)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도축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심의기준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서울시)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9) 기타계획(특성화계획, 기타계획) : 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거여2구역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60,288.7	감) 43.4	160,245.3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2)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60,288.7	감) 43.4	160,245.3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46,992.3	감) 188.5	46,803.8	29.2	
	도 로	23,666.9	감) 88.0	23,578.9	14.7	
	공 원	11,708.7	감) 88.7	11,620.0	7.3	
	녹 지	436.7	감) 0.6	436.1	0.3	
	공공청사	1,949.3	-	1,949.3	1.2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7,106.9 (5,639.9)	-	7,106.9 (5,639.9)	4.4 (3.5)	
	광 장	2,123.8	감) 11.2	2,112.6	1.3	
택지(획지)	소 계	113,296.4	증) 145.1	113,441.5	70.8	
	1-1-1	68,332.2	-	68,332.2	42.7	공동주택
	1-1-2	1,406.9	-	1,406.9	0.9	종교용지
	1-1-3	198.0	-	198.0	0.1	대지
	1-2	43,359.3	증) 145.1	43,504.4	27.1	공동주택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 1지구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8,438.6	-	98,438.6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8,501.5	-	28,501.5	29.0	
	도 로	11,885.3	-	11,885.3	12.1	
	공 원	6,238.7	-	6,238.7	6.3	
	공공청사	1,949.3	-	1,949.3	2.0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7,106.9 (5,639.9)	-	7,106.9 (5,639.9)	7.2	
	광 장	1,321.3	-	1,321.3	1.4	
택지(획지)	소 계	69,937.1	-	69,937.1	71.0	
	1-1-1	68,332.2	-	68,332.2	69.4	공동주택
	1-1-2	1,406.9	-	1,406.9	1.4	종교용지
	1-1-3	198.0	-	198.0	0.2	대지

○ 2지구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1,850.1	감) 43.4	61,806.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8,490.8	감) 188.5	18,302.3	29.6	
	도 로	11,781.6	감) 88.0	11,693.6	18.9	
	공 원	5,470.0	감) 88.7	5,381.3	8.7	
	녹 지	436.7	감) 0.6	436.1	0.7	
	광 장	802.5	감) 11.2	791.3	1.3	
택지(획지)	소 계	43,359.3	증) 145.1	43,504.4	70.4	
	1-2	43,359.3	증) 145.1	43,504.4	70.4	공동주택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60,288.7	감) 43.4	160,245.3	100.0	
일반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8,611.2	감) 43.4	18,567.8	11.6	
	3종일반주거지역	141,677.5	-	141,677.5	88.4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 1지구 : 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98,438.6	-	98,438.6	100.0	
일반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998.6	-	16,998.6	17.3	
	3종일반주거지역	81,440.0	-	81,440.0	82.7	

○ 2지구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61,850.1	감) 43.4	61,806.7	100.0	
일반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12.6	감) 43.4	1,569.2	2.6	
	3종일반주거지역	60,237.5	-	60,237.5	97.4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334	거여동 213-50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574호	면적 변경
변경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334	거여동 213-50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574호	
기정	대로	3	5	24~30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마천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면적 변경
변경	대로	3	5	24~30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마천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714호	면적 변경
변경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714호	
기정	중로	1	1	24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거여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235-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일반도로		건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7	거여동 41-22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역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대로3-1	대로3-1	• 면적 변경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대로3-5	대로3-5	• 면적 변경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중로1-220	중로1-220	• 면적 변경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 226	L=52,300 (227)	-	L=52,300 (227)	건고151호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183-11일대	1,321.3	-	1,321.3	서고294호 (08.8.28)	
변경	②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802.5	감) 11.2	791.3	서고294호 (08.8.28)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교차점광장	•면적변경 (감 11.2㎡) - 면적 802.5㎡ → 791.3㎡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고를 반영한 면적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139.7	-	1,139.7	서고294호 (08.8.28)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569.0	감) 88.7	10,480.3	서고294호 (08.8.28)	향유 근린공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면적변경 (감 88.7㎡) - 면적 10,569.0㎡ → 10,480.3㎡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고를 반영한 면적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녹지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7	감) 0.6	436.1	서고259호 (11.9.8)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연결녹지	- 면적변경 (감 0.6㎡) - 면적 436.7㎡ → 436.1㎡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곽을 반영한 면적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공지	-	거여동 198-17일대	1,467.0	-	1,467.0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공공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39.9	-	5,639.9	서고294호 (08.8.28)	미래공공공지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254.3 (1,949.3)	-	3,254.3 (1,949.3)	송고24호 (03.6.10)	거여2동사무소(기정),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거여2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160,288.7	-	113,296.4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300	-	-	1,300	-	-	
	변경	160,245.3	-	113,441.5								
	거여 2-1지구		98,438.6	1-1	69,937.1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004	-	-	1,004	-	-
	거여 2-2지구	기정	61,850.1	1-2	43,359.3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296	-	-	296	-	-
		변경	61,806.7	1-2	43,504.4							

○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거여2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160,288.7	-	113,296.4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307,994.2	공동 주택	50 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변경	160,245.3 (감43.4)	-	113,441.5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307,992.9	공동 주택	50 이하	277.0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1지구	기정	98,438.6	1-1-1	68,332.2	거여동 180번지 일대	187,845.6	공동 주택	30이하	275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1-1-2	1,406.9	거여동 205번지 일대	-	종교 시설	60이하	200 이하	10층 이하	
			1-1-3	198.0	거여동 235번지 일대	-	주택, 근생	60이하	200 이하	-	
2지구	기정	61,850.1	1-2	43,359.3	거여동 234번지 일대	120,148.6	공동 주택	30이하	277.1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변경	61,806.7 (감43.4)	1-2	43,504.4	거여동 234번지 일대	120,147.3	공동 주택	30이하	277.0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 총 호수 : 3,144호 (임대 595호) - 전용면적 60㎡이하 : 1,452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1,531호 - 전용면적 85㎡초과 : 161호						
					1지구		● 총 호수 : 1,945호 (임대 368호) - 전용면적 60㎡이하 : 920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987호 - 전용면적 85㎡초과 : 38호				
							2지구		● 총 호수 : 1,199호 (임대 227호) - 전용면적 60㎡이하 : 532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544호 - 전용면적 85㎡초과 : 123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고싶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 거마로변과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 공원변 : 6M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주1) 거여2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따른 지구별 대비표

주2) 지구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은 법정 기준 내에서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층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2008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바)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전용면적)	호수	비고
기정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13,415	38,376.9	40㎡이하	302호	
				40~50㎡이하	222호	
				50~60㎡이하	71호	
				소 계	595호(18.9%)	
	거여 2-1 지구	8,169	23,737.2	40㎡이하	192호	
				40~50㎡이하	128호	
				50~60㎡이하	48호	
				소 계	368호(18.9%)	
	거여 2-2 지구	5,246	14,639.7	40㎡이하	110호	
				40~50㎡이하	94호	
				50~60㎡이하	23호	
				소 계	227호(18.9%)	

주1)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나) 마천시장구역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 : 변경없음

라) 마천3구역 : 변경없음

마) 마천4구역 : 변경없음

21) 존치지역의 관리계획 : 변경없음

22)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Ⅱ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명시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일대	160,288.7	감) 43.4	160,245.3	100.0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60,288.7	감) 43.4	160,245.3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8,611.2	감) 43.4	18,567.8	11.6
	3종일반주거지역	141,677.5	-	141,677.5	88.4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 1지구 : 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98,438.6	-	98,438.6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998.6	-	16,998.6	17.2
	3종일반주거지역	81,440.0	-	81,440.0	82.8

○ 2지구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61,850.1	감) 43.4	61,806.7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12.6	감) 43.4	1,569.2	2.6
	3종일반주거지역	60,237.5	-	60,237.5	97.4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334	거여동 213-50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574호	면적 변경
변경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334	거여동 213-50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574호	
기정	대로	3	5	24~30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마천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면적 변경
변경	대로	3	5	24~30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마천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714호	면적 변경
변경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714호	
기정	중로	1	1	24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거여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235-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일반도로		건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7	거여동 41-22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역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반영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대로3-1	대로3-1	• 면적 변경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대로3-5	대로3-5	• 면적 변경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중로1-220	중로1-220	• 면적 변경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2) 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 226	L=52,300 (227)	-	L=52,300 (227)	건고151호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3)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183-11일대	1,321.3	-	1,321.3	서고294호 (08.8.28)	
변경	②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802.5	감) 11.2	791.3	서고294호 (08.8.28)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면적변경 (감 11.2㎡) - 면적 802.5㎡ → 791.3㎡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곽을 반영한 면적변경

4)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원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139.7	-	1,139.7	서고294호 (08.8.28)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569.0	감) 88.7	10,480.3	서고294호 (08.8.28)	향유 근린공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면적변경 (감 88.7㎡) - 면적 10,569.0㎡ → 10,480.3㎡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곽을 반영한 면적변경

5)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녹지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7	감) 0.6	436.1	서고259호 (11.9.8)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연결녹지	•면적변경 (감 0.6㎡) - 면적 436.7㎡ → 436.1㎡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곽을 반영한 면적변경

6)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공지	-	거여동 198-17일대	1,467.0	-	1,467.0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공공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39.9	-	5,639.9	서고294호 (08.8.28)	미래공공공지

7)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254.3 (1,949.3)	-	3,254.3 (1,949.3)	총고24호 (03.6.10)	거여2동사무소(기정),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 구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지	소 계	43,359.3	증) 145.1	43,504.4	70.4	-
	획지1-2	43,359.3	증) 145.1	43,504.4	70.4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주용도	획지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30	획지1-2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기정	230%	-	277.1%	-	획지1-2
변경	230%	-	277.0%	-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평균층수	최고층수(m)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26층이하	33층이하 (123m이하)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건고실은거리변(대로3-1)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후퇴
	•남북연결로(대로3-5)	
	•공원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공동주택	•건고실은 거리변은 연도형주동으로 계획하되, 가로변은 5층(1~2층상가, 3~5층 임대주택), 직각배치는 12층이하로 한다. •데크형 주동의 1층은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주차장으로 구성하고 2층은 주거전용 옥외공간으로 계획하여 동선을 구분한다. •공원주변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중저층 또는 낮은 고층으로 하고, 공원쪽으로는 통경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건물 진출입구	공동주택	•지구진입부는 랜드마크를 고려하여 고층으로 계획하되, 탑상형 주동사이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옥탑의 높이는 지붕층으로부터 돌출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함께 디자인한다. •지붕선의 일직선 규제(리듬감 부여) 및 재료, 색채를 통일한다. •최상층은 복층의 펜트하우스로 활용하거나, 옥상정원을 설치한다. •물탱크는 지붕층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층부외관	공동주택	•필로티를 통해 각 세대의 지상 높이를 높여 조망권을 확보 •필로티내부엔 화단 및 분수대를 설치하거나, 가로공간에 벤치를 두어 휴게공간을 제공
재료 및 색채	공동주택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로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공동주택	•필로티를 계획하여 아파트내의 시각적인 경관통로를 확보해 단지내 개방감을 느끼도록 계획
조명계획	공동주택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건고실은거리변(대로3-1) •남북연결로(대로3-5) •공원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 및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B)=6~10m •건고실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공원변 : 6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3-5 대로3-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공공시설 제외)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현황	대책 및 반영사항
자 연 환경	비 오 톱	○	●녹지대 증가로 비오톱 변화	●조경식재로 인하여 주거지비오톱,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 공업지 및 도시기반 시설지비오톱, 교통시설비오톱, 조경녹지비오톱 등이 형성됨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대 증가	●공원녹지 확보
	습지보전	×	없음	
생 태 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불투수포장도의 변화 및 공사시 우수 유출	●촉진계획지구내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공원, 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 사업시행전에 비해 불투수포장을 감소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지하굴착으로 인한 지형변동	●촉진지구별 개별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지형변화는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함.
	물 순 환	○	●건축물 설치계획에 따라 생태 면적을 변화	●생태면적률 30%이상 (계획 33.25%) ●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적률 증가계획 수립
	수 질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우려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를 제거후 우수방류 등 토사유출 최소화
	일 조	○	●건축물 설치계획에 따라 일조영향예상	●장래 토지이용변화에 부합하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높이 제한으로 일조영향 최소화
	바 람	○	●건축물 설치계획에 따라 바람변화 예상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경 관	○	●고층의 높은 경관으로 변화	●주변 건축물 및 인근 주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고계획 수립
	에 너 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증가	●에너지 사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기자재 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기기 사용
	환경오염	○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계획지구내 개별공사시 경계부에 방진망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살수차량 운행
			●계획지구 및 유발지구에 의한 오수발생	●오수관거를 이용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서울시, 송파구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처리
			●건설폐기물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시 분리수거함을 이용 분리수거하여 송파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공사시 작업장비에 의한 소음 및 운영시 인근 도로변의 차량소음발생	●공사시 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저소음장비 사용

4) 인센티브 사항 : 해당없음

5)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도시재정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주택 규모별 비율(2구역정비계획)
 - 거여2구역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소형주택
합계	3,144	100.0	595	595	-	18.9	100.0	-
40㎡이하	302	9.6	302	302	-	9.6	50.8	-
40㎡초과~50㎡이하	222	7.1	222	222	-	7.0	37.3	-
50㎡초과~60㎡이하	928	29.5	71	71	-	2.3	11.9	-
60㎡초과~85㎡이하	1,531	48.7	-	-	-	-	-	-
85㎡초과	161	5.1	-	-	-	-	-	-

- 거여2구역1지구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소형주택
합계	1,945	100.0	368	368	-	18.9	100.0	-
40㎡이하	192	9.9	192	192	-	9.9	52.2	-
40㎡초과~50㎡이하	128	6.6	128	128	-	6.6	34.8	-
50㎡초과~60㎡이하	600	30.8	48	48	-	2.4	13.0	-
60㎡초과~85㎡이하	987	50.7	-	-	-	-	-	-
85㎡초과	38	2.0	-	-	-	-	-	-

- 거여2구역2지구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소형주택
합계	1,199	100.0	227	227	-	18.9	100.0	-
40㎡이하	110	9.2	110	110	-	9.2	48.5	-
40㎡초과~50㎡이하	94	7.8	94	94	-	7.8	41.4	-
50㎡초과~60㎡이하	328	27.3	23	23	-	1.9	10.1	-
60㎡초과~85㎡이하	544	45.4	-	-	-	-	-	-
85㎡초과	123	10.3	-	-	-	-	-	-

III.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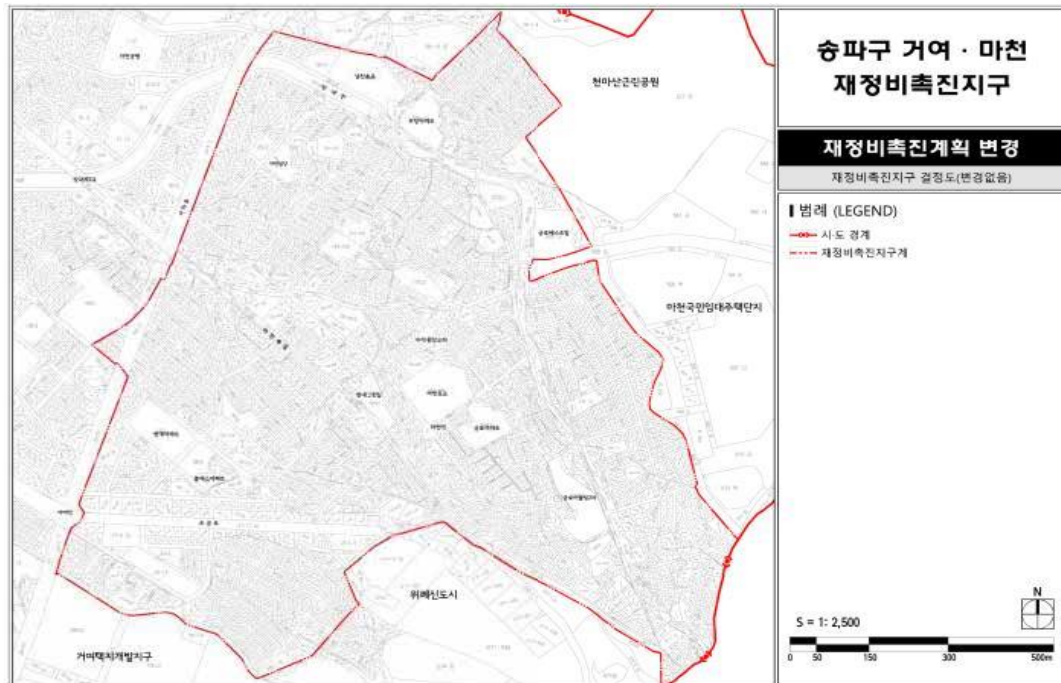
-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 첨부된 도면 들(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IV.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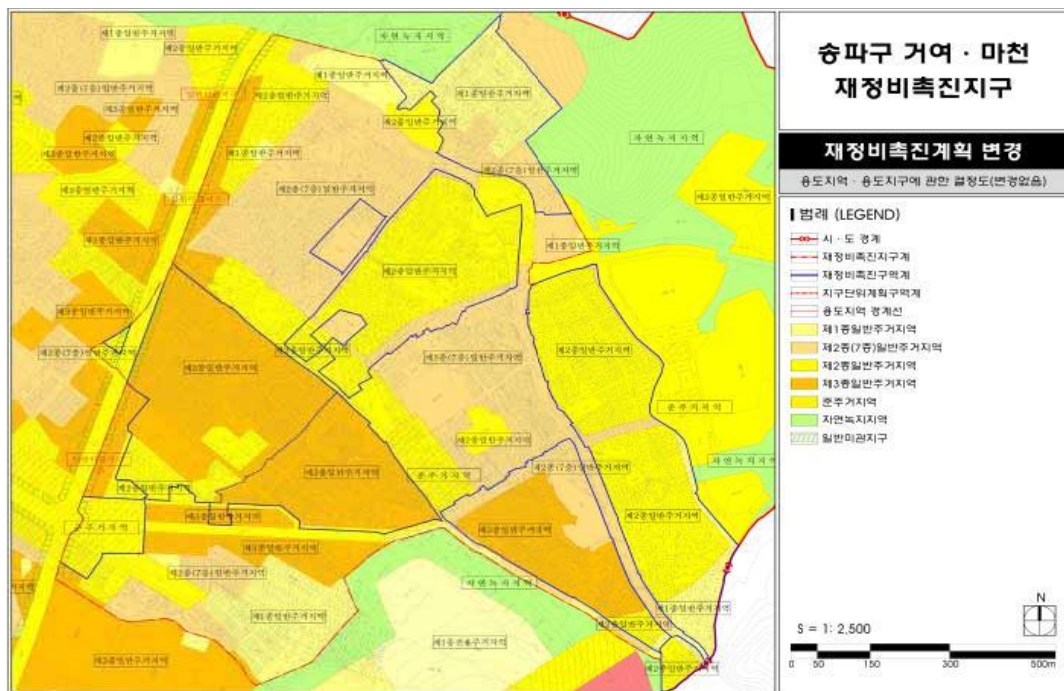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8) 및 송파구청 주거사업과(☎02)2147-290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붙임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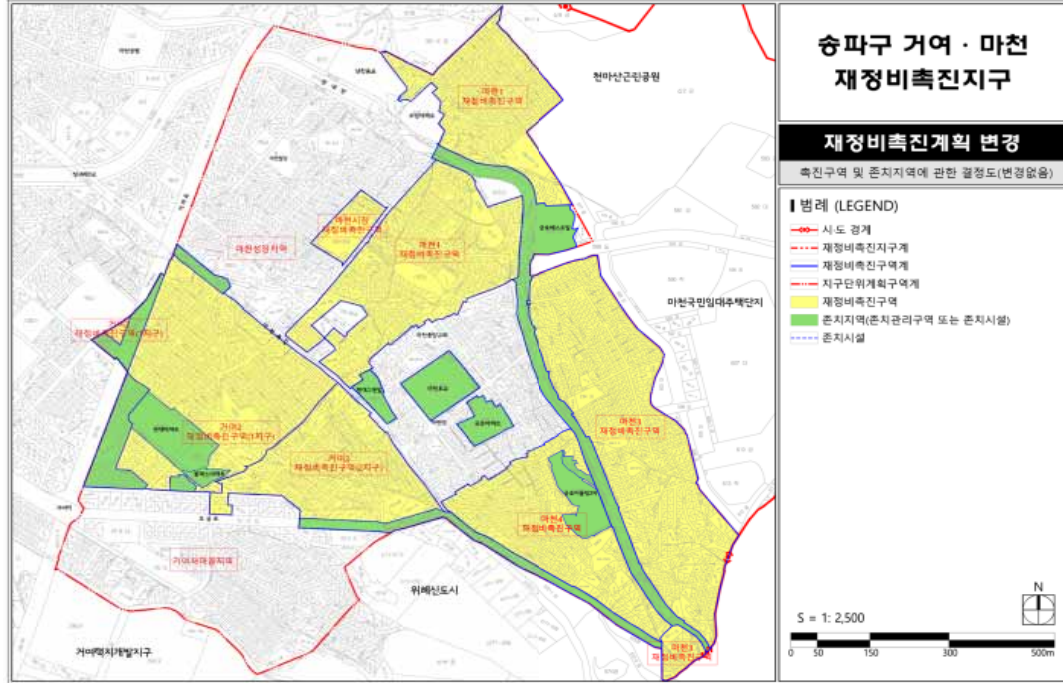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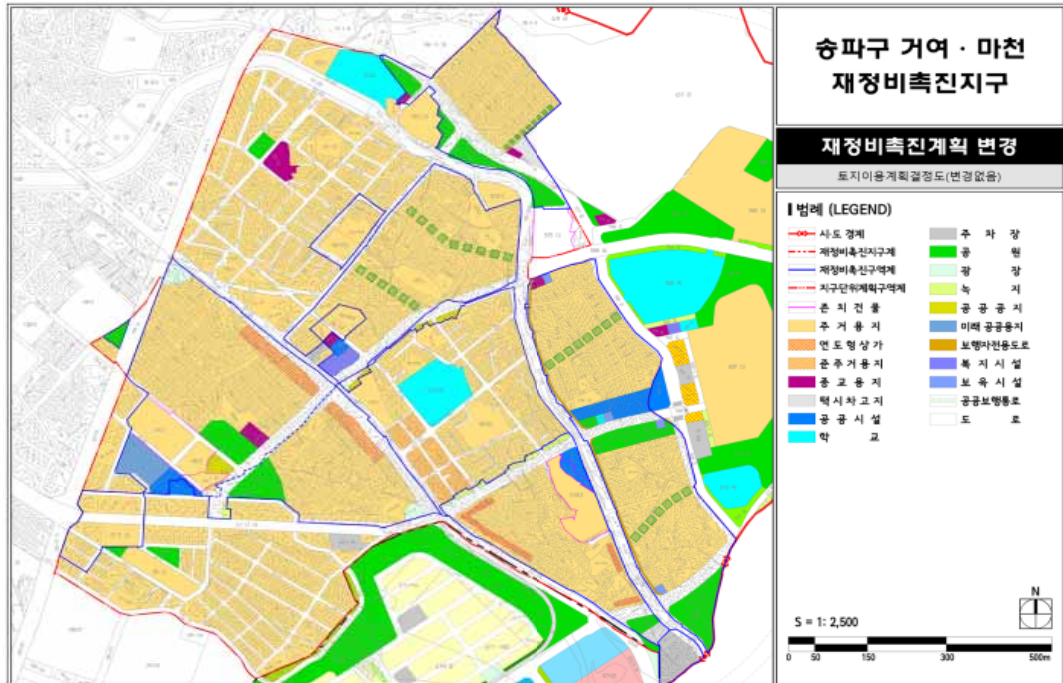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성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도시기본시설에 관한 결정도(현경영도)

■ 범례 (LEGEND)

시·도 경계	시 경
재정비촉진지구경	녹 지
재정비촉진구역경	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구역경	학 교
도시계획도도(미로이성)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도도(중로이화)	여 천 (중복부면)
도시시설계획선	
도시시설계획(도도) 예정선	
주차장	
철 도	
공 장	
공 원	
하 천	
공공공지	
자동차정류장	

S = 1:2,500

0 50 150 300 500m

**거여 ·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거여2 재정비촉진계획
승도지역 치구내 관할 읍면동(변경없음)

keymap

I 범의 LEG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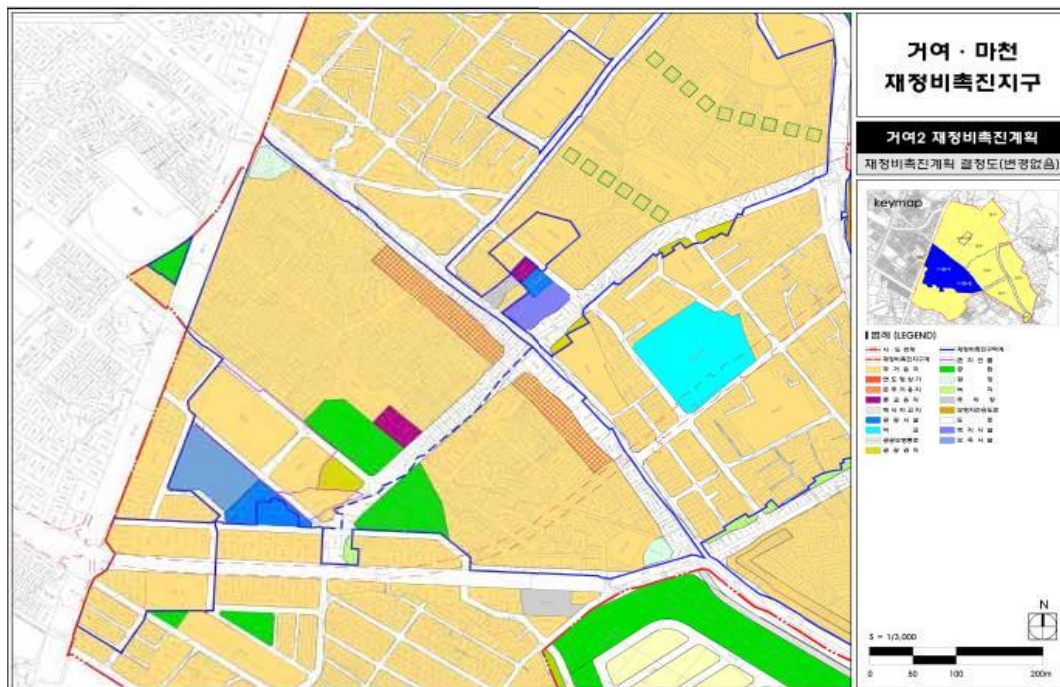
- 도로 및 경계
- 행정대외치구경계
- 특별자치시·군·구
- 읍·면·동 지역 구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일반관리지역

Scale: 1: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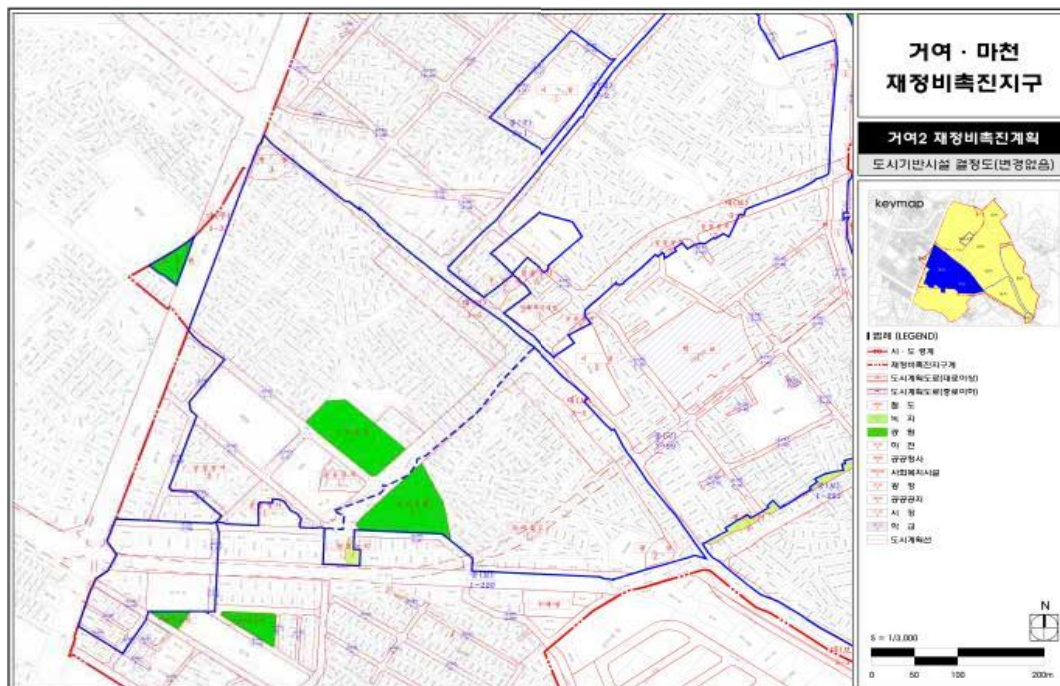
North Arrow

Scale bar: 0, 50, 100, 200m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2021 - 37

[()]

- 1657 - 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11.2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 월 21 일

서울특별시 장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7-2
- 면 적 : 361.20㎡
- 결정취지 : 교대역 인근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II.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역~ 강남역	540,698.1	서울시고시 제53호 ('87. 2. 3)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일반상업지역	361.2	-	361.2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8	30	보조 간선 도로	3,500	잠원동 (서초동 1672-10)	서초동 (서초동 1656-6)	일반 도로	건고 제8호 (1976. 1.21)	우면로

나. 기타 시설 결정 : 변경 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획지 결정조서 : 변경

- 최대개발규모(변경 없음)
- 공동개발(변경)

구분		지번	면적 (㎡)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GC -9	공동 개발	서초동 1657-1, -2, -8~10	1,745.0	1657-1, -2/-8~10 각각 공동개발 지정 1657-1, -2/-8~10 공동개발 권장	1657-1,2/1657-8~10 공동개발 권장 해제	-
					1657-1, -2 각각 단독개발	
					1657-8~10 공동개발 지정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필지 1657-1, -2번지와 1657-8~10번지 공동개발 지정을 해제하여 1657-1, -2번지 단독개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역사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함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정 용도	(a)	-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 1)}		1657-2에 한함
권장 용도	역세권 지역 2	전층	● 판매시설(시장 및 도매시장 제외), 업무 시설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 동 관련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호텔, 우 수 숙박시설(상업지역 간선부)	전층	● 판매시설(시장 및 도매시장 제외), 업무 시설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 동 관련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호텔, 우 수 숙박시설(상업지역 간선부)	1657-2에 적용하지 않음
		지하 층	●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 물 소극장 제외)/전시장/집회장(예식장 제 외)	지하 층	●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 물 소극장 제외)/전시장/집회장(예식장 제 외)	
불허 용도	전구역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 소, 마권전화투표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 소, 마권전화투표소		
	간선부 A	●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노출 골프관련시설,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유사시설 포함)		●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노출 골프관련시설,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유사시설 포함)		
	A-1	-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시설/위락시 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자원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 사시설/ 발전시설/묘지 관련 시설/장례시설/야영 장 시설		1657-2에 한함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지정용도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지정용도 계획 수립
-	불허용도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불허용도 계획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서초동 1657-2에 한함
용적률	- 기준: 300% 이하 - 허용: 630% 이하	- 기본: 1,000% 이하 - 상한: 법정 이하	
높이	- 기준: 70m 이하 - 최고: 90m 이하	80m 이하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건폐율 : 60%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준용
	기본용적률 : 1,0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 변경
	높이 : 80m 이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높이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분		내용	공공기여 계획(안)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부지면적의 14%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4.62%(52.81㎡)	기본 용적률 1,00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91.16% : 8.84% ^{주 1)}		
	주거비율	• 80% 이상 90% 이하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21(18.42㎡), 47(36.36㎡) • 민간임대주택 : 20(18.09㎡), 21(18.42㎡), 47(36.36㎡)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지원 시 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 항 이상 의무적 이행	•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시설 외 커뮤니티시설 별도 설치 100호 미만 : 100㎡ 이상 100호 이상~300호 미만 : 150㎡ 이상 300호 이상~364호 미만 : 200㎡ 이상 364호 이상 : (전체 건립호-299호) ×2.5×1.25	• 커뮤니티 시설 133.68㎡ 계획		

주1)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율 조정

*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괄호 안은 전용면적임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인·허가 절차 수행과정에서 공공기여 계획 변경 가능

다.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Ⅳ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지정선 3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규제)	• 서초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 금지	•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간선가로변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설치	-

3.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신설)

가. 공공기여 계획 : 신설

구분	공공기여율	공공기여 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14% ^{주)} 이상 (50.57㎡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4.62%(52.81㎡)	서초동 1657-2에 한함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Ⅲ.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6)와 서초구청 6층 도시계획과(☎02-2155-679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Ⅴ.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첨부 : 결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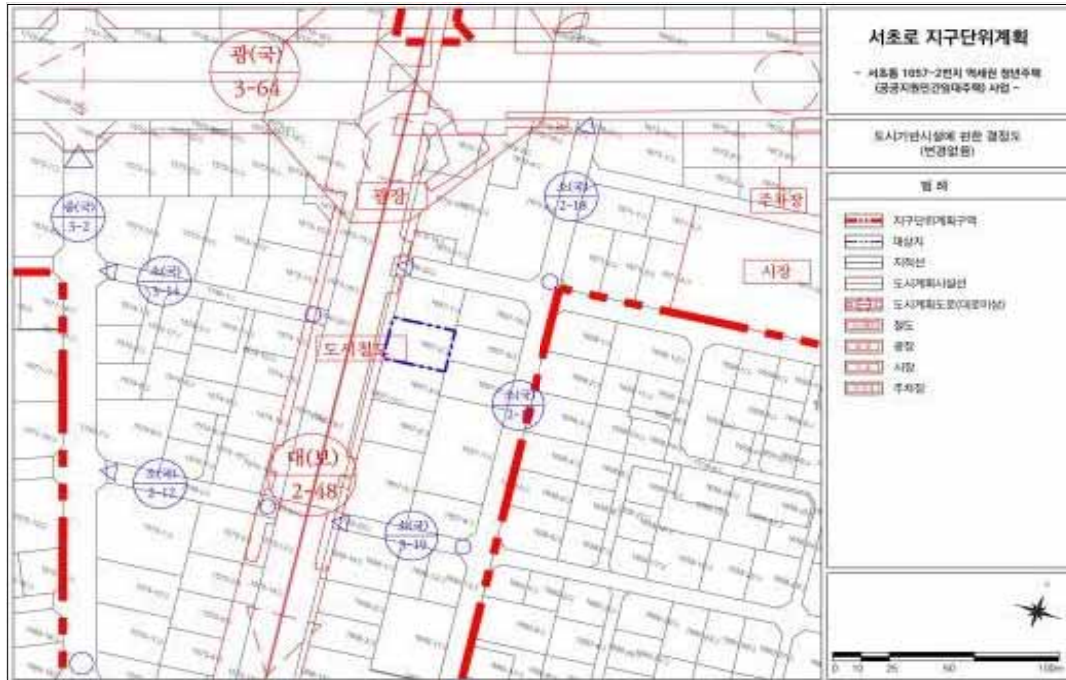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④ 종합결정도(기정)



⑤ 종합결정도(변경)



2021 - 38

1049 - 71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49-71, 1049-79, 1049-100, 1049-106
- 면 적 : 2,379.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1월 *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에드가개발
- 대표자 성명 : 정영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33, 2층(상계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7443099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노원구 상계동	1049	71	대	784.0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개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33(상계동)	1/1	-	-	-
2		1049	79	대	811.0			1/1			
3		1049	100	대	460.0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1			
4		1049	106	대	324.0			1/1			
합계					2,379.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노원구 상계동	1049	71	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	2007.10.02.	995.4	-	2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개발	-	-	-	-
		1049	100	대											
		1049	106	대											
2		1049	79	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철근 콘크리트	1985.01.18.	1,756.1	1	3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합계								2,751.5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2,379.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2,379.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20-2133-6293)와 노원
구청 3층 도시관리과(02-2116-38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49-71, 1049-79, 1049-100, 1049-106
- 면 적 : 2,379.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수락산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 에드가개발
- 대표자 성명 : 정영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33, 2층(상계동)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3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2,379.0	100.0	임대주택
합 계	2,379.0	100.0	-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622인

2) 주택건설계획 : 443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1형	27	6.1	27	4.4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23형	5	1.1	5	0.8	
	43형	57	12.9	152	24.4	
	47형	16	3.6	43	6.9	
	소 계	105	23.7	227	36.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1형	267	60.3	267	42.9	
	23형	37	8.3	37	6.0	
	43형	24	5.4	64	10.3	
	47형	10	2.3	27	4.3	
	소 계	338	76.3	395	63.5	
합 계		443	100.0	622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공공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공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작은도서관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건축면적 : 450.00	노원구청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노원구에 기부채납)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대상지내 건축물은 현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며, 산림지역, 조경녹지 등은 분포치 않음
- 사업시행에 따른 조경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녹지체계 구축 등 환경 보전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계획임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379.0	-	2,379.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379.0	감) 2,379.0	-	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2,379.0	2,379.0	100.0	

■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2,379.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2,379.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2,379.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379.0	-	2,379.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379.0	-	2,379.0	100.0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지 번	면 적(㎡)	
-	-	2,379.0	상계동 1049-71	784.0	공동개발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상계동 1049-79	811.0	
			상계동 1049-100	324.0	
			상계동 1049-106	460.0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공동개발 지정 - 면적 : 2,379.0㎡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	A	공동주택(주거복합)주)	상계동 1049-71, 1049-79, 1049-100, 1049-106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B	- 단독주택(용도복합 제외) -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수련시설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 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A	· 지정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상계동 1049-71외 3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B	· 불허용도 신설	· 상계동 1049-71, 1049-79, 1049-100, 1049-106 역세권 청년주택 필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따른 용도를 반영하여 불허용도 계획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준용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
최고높이	· 72m 이하	· '상계동 1049-71, 1049-79, 1049-100, 1049-106' 4필지에 한하여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건폐율	· 60%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내 일반상업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용적률 체계 변경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72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높이계획 결정

■ 용적률 적용기준(신설)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공공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 25% 이상 (부지면적 기준) · 추가공공기여율 :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	· 상계동 1049-71, 1049-79, 1049-100, 1049-106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용도별 비율	주거	·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커뮤니티시설		· 300세대 이상 - 커뮤니티시설 설치 면적 200㎡ 이상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3) 건축물의 건축선·배치·형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3m · 이면도로변 : 2m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지정 - 간선도로변 : 3m - 이면도로변 : 2m	· 대상지가 접한 간선도로변에 3m, 이면도로변에 2m 폭원의 건축한계선 지정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 - 간선도로변(3m) : 보도부속형 - 이면도로변(2m) : 보도부속형	지침도 참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변(동일로) 및 이면도로(동일로 237길)변 차량출입불허	지침도 참조

다)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 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680% 이하	800% 이하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 면적의 25% 이상주(594.75㎡ 이상) - 추가공공기여율 :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	상계동 1049-71, 1049-79, 1049-100, 1049-106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5)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게재 생략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4.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등)을 계획

2) 사면 및 지반재해

- 지하굴토 공사시 사업지구내 알맞은 지하터파기 공법 선정

① 터파기 계획 : 흙막이공법 적용

- ② 흙막이 벽체 : C.I.P 벽체 적용
- ③ 지보재 : 강재버팀보(STRUT) 지지공법 적용
- ④ 차수 및 지반보강 : S.G.R GROUTING(차수공) 공법 병행적용

3)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기타재해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등 발생 저감을 위해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사업지구 경계 부로 가설방음벽 등 설치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노원구 상계동	1049	71	대	784.0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개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33(상계동)	1/1	-	-	-
2		1049	79	대	811.0			1/1			
3		1049	100	대	460.0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1			
4		1049	106	대	324.0			1/1			
합계					2,379.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일자	규 모			소유자	관계인			관련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노원구 상계동	1049	71	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	2007.10.02.	995.4	-	2	[위탁자] 주식회사 에드가개발	-	-	-	-
		1049	100	대											
		1049	106	대											
2		1049	79	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철근 콘크리트	1985.01.18.	1,756.1	1	3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합계								2,751.5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건축연면적)	비 고
공공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450.00㎡	작은도서관 (지상 3층)

2)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설치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준용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노원구청 건축과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계	2,379.0	100.0	-	-	-
주택건설용지	2,379.0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

2021 -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주식회사 에드가개발	정영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33, 2층(상계동)

※ 담보신탁 : 위탁자(주식회사 에드가), 수탁자(아시아신탁 주식회사)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3년
5.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49-71일원
 - 나. 대지면적 : 2,379.0㎡
 - 다. 건폐율 : 59.72%(건축면적 : 1,420.83㎡)
 - 라. 용적률 : 799.24%(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19,013.80㎡)
 - 마. 용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105세대/민간임대 338세대), 근린생활시설
 - 바. 규모 : 1개동, 지하 4층/지상 23층, 연면적 26,841.03㎡
 -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등
6. 기타사항
 -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2021 - 42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2018.4.5.)로 결정·고시된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가. 해제기간 연장구역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1,9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 (2018. 04. 05)

나.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조합설립인가 신청기한
기정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1,901.0	2020. 11. 20
변경 (연장)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1,901.0	2022. 11. 20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1 - 94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1. 1. 14. ~ 2021. 1. 28.(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부띠크성지 종합건설㈜ (김효빈)	건축공사업 01-43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97, 1404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보증가능금액)	등록말소	2021.2.8. (월)10:00	주무관 김문수	법 제83조제3 호의2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전화 02-2133-8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02

우리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4]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의견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 미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5. 청문기간: 2021. 2. 15.(월) ~ 2. 16.(화)
6. 청문장소: 주거정비과 회의실(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7. 청문주재자: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주무관 박정훈(2133-7217)
8. 진술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9. 진술내용: 행정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소명내용 및 증빙자료 제출
10.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기타 소명자료
11. 청문대상 업체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사유	적용법규
2004-7	(주)에조도시개발	-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421호 (장안동, 새마을회관)	등록취소	- 기술인력 당면퇴직에 따른 상근기술인력 5인 미달(등록기준 미달) -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초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2. 개별기준 나목, 아목

1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1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2133-7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 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1 - 103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미술작품 심의를 이끌어주실 실력 있는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공 고 명: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공고기간: 2021. 1. 14.(목) ~ 2021. 2. 19.(금)
- 모집분야 및 인원: 총00명 이내

회화·조각·공예·사진·디자인·미디어 등	기획(큐레이터)·평론	건축·조경·도시계획	안전·작품 유지관리
00명	00명	00명	00명

※ 분야별 인원은 선정위원회 심사로 결정 예정이며, 위원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

- 응모자격: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청렴한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미술작품심의에 참여 경험이 있는 대행사의 대표·소속 직원 또는 작가 등 관련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모집분야 관련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에서 모집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 응모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1. 2. 1.(월) ~ 2021. 2. 19.(금) 18:00
(제출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 도착 완료한 건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처: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관리팀
 - 제출방법: 이메일(sornet24@seoul.go.kr) 제출
(메일 및 파일 제목에는 응모자 이름과 응모분야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작성예시)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응모_홍길동_유지관리 분야
 - 제출서류(한글 및 PDF: 압축파일 각1부, PDF 서류에는 서명날인 포함)

- ① 응모신청서 1부
- ② 경력소개서(A4용지 5장 이내)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④ 기타 증빙서류 각1부 : 자격·학위·작품 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국내 학위증명서, 자격면허증, 장애 위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 전시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등록증 또는 활동증빙서류 등}

※ 제출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게시판 게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게시판) 안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미술작품 심의’ 검색 ⇒ 바로가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10287?tr_code=short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관리팀(☎ 02-2133-2716)

○ 기타 유의사항

- 응모신청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모바라며, 증빙서류 각1부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별도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후 위촉하며,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또는 문자) 개별 통지합니다.
- 응모자격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되는 심의대상 건축물미술작품의 제작·설치 및 심의신청 등의 활동을 금지하며, 이해관계 작품의 심의 시에는 회피·기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일반사항

- ① 신청서는 응모자 본인의 필체로 서명하여야 하며, 자격·학위·작품 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파일로 이메일 제출

- ② 응모자의 부주의 및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모자 책임입니다.

- ③ 경력소개서는 첨부된 서식에 맞춰 A4 5장 이내로 작성합니다.

2. 응모신청서 작성요령 등

- ① 응모분야 : 해당 분야 작성

작성예시) 회화, 미디어, 작품유지관리, 건축 등

- ② 장애여부 : 장애여부 작성(장애등급 또는 장애사항 증명서류 함께 제출)

- ③ 소속 및 직위 : 현 근무지 작성(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 ④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필수 작성

- ⑤ 학력사항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작성하며 전공학과와 학위명 정확히 작성,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하여 작성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국내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작성예시) ○○대학교 ○○학(학사), ○○대학교 ○○학(석사),
○○대학교 ○○학(박사), ○○대학교 ○○학(박사수료)

- ⑥ 주요경력 : 전공 또는 모집분야 관련 주요경력 작성(경력증명서, 전시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등록증 또는 활동증빙서류 등 함께 제출)

※ 경력소개서(A4 5장 이내)에 자세한 내용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

- ⑦ 자격사항 : 전공 및 모집분야 관련 자격면허 작성(운전면허 제외)

- ⑧ 타 위원회 위촉사항 : 서울시 타 위원회 및 타 시·도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나 모집분야 관련 위원회 위촉경력 작성

※ 현재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 위원회 수는 3개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초과한 중복위촉 불가능함

【서식 1】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응모분야	(예시1) 회화 (예시2) 건축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 x 4cm)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선택		장애여부	(있음, 없음) 선택	
현 소 속			직 위		
현 주 소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학력사항	학사	학교		학과	전공
	석사	학교		학과	전공
	박사	학교		학과	전공
구 분	기간 또는 일자		내용		
주요경력					
자격사항					
타 위원회 위촉사항					
첨부서류	경력소개서(A4 5장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각1부				
본인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응모하고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응모 무효, 위촉 취소, 향후 위원 응모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응모자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A4 5)

접수번호 : ※ 기재하지 않음

1. 응모자 인적사항

○ 성 명 :

○ 응모 분야 :

2. 경력사항(해당사항 있는 항목에 대해 양식에 따라 작성)

○ 학위 논문을 제외한 대표 연구논문, 저술, 학회지 등 작성

구분	생년연도	내용	비고
연구논문			
저술			
학회지			
기타			

○ 수상내역(공모당선 사례, 국내외 수상내역 등) 작성

구분	수상연도	내용	비고
공모당선			
국내수상			
국외수상			
기타			

○ 대표작품 5건 이내 작성

연번	제작연도	작품명	이미지	비고
1				
2				
3				
4				
5				

○ 전시회 경력 작성

연번	전시연도	내용	비고

○ 기타 경력사항

- - -

3. 주요 활동사항 (학회, 연구소, 위원회, 단체 등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는 경우 기재)

구분	활동기간	내용	비고
학회, 연구소			
위원회			
단체			
기타			

4. 학위 논문내용

○ 석사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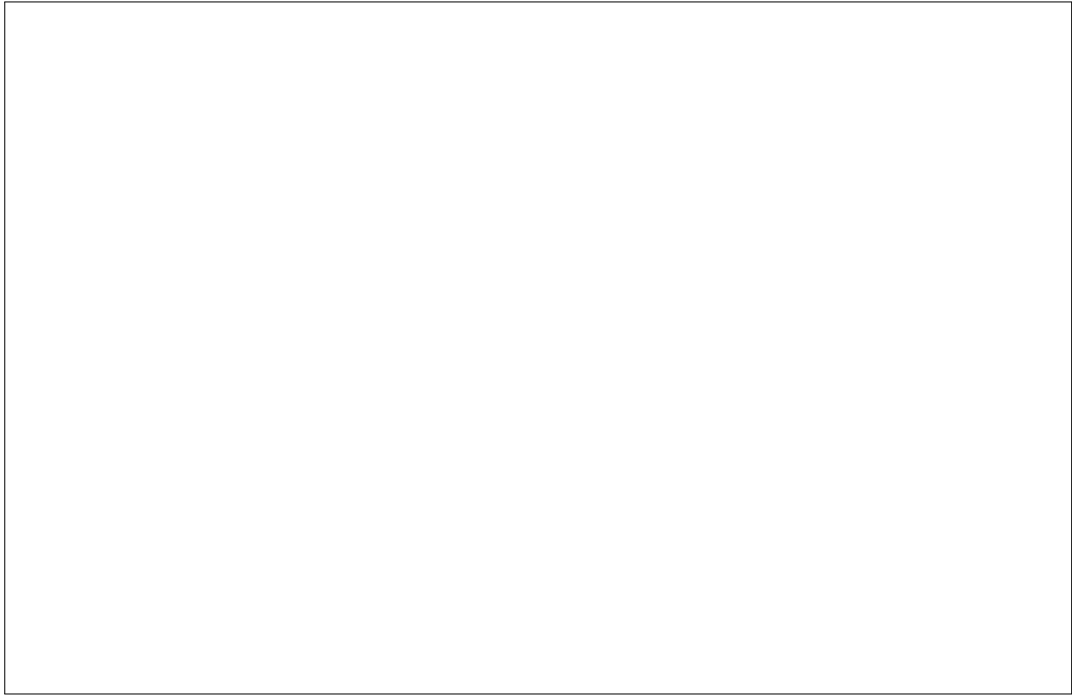
- 제 목 :
- 주 제 :

○ 박사 논문

- 제 목 :
- 주 제 :

5. 참여 동기 등

※ 작성요령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응모 동기 및 위원으로서 소신과 향후 활동계획, 공공미술로서 건축
물미술작품의 역할 및 미술작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해 작성



6. 기타사항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위원 모집 및 위원회 구성(위원 위촉) 및 운영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진,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및 경력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응모신청 시부터 위원회 구성 완료 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위원 해촉 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위원 공개모집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진,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및 경력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위원 위촉 시 ~ 해촉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수집 및 이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수집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양식을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주체(동의인)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1 - 10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쥬어웨이크	제176호	' 21. 1.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82,903호 (신림동, 아데나534)

2021 - 107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 일대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자산 진흥 구역 관리계획을 결정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I.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지정된 북촌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근·현대 건축자산 전반으로 건축특례 및 공공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건축자산 특성을 유지·관리하고 지역 고유한 공간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II. 구역개요

1) 건축자산진흥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종로구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	1,128,372.7

Ⅲ.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1)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1.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 건축자산 현황(목록화)

구분	중분류	명칭	지번	비고
건축자산 ·건축물	한옥	북촌 한옥 (1,063동)	종로구 북촌 일대	건축자산 시행계획 건축자산목록(2017) + 한옥DB(종로구) + 한옥전수조사
	근대건축	① 재동초등학교	가회동 210	건축자산 시행계획 건축자산 목록(2017)
		② 가회동2층전망대	가회동 11-112	
		③ 구 박흥식주택	가회동 177-1	
		④ 가회동1-13주택	가회동 1-13	
		⑤ 중앙고등학교 강당	계동 1	
		⑥ 중앙고등학교 정문과 수위실	계동 1	
		⑦ 노틀담수녀회	계동 67-31	
		⑧ 덕성여고	안국동 37-1	
		⑨ 카페마고	원서동 129-5	
	현대건축	① 최소아과의원	계동 109	
		② 두가현	사간동 80	
		③ 출판문화회관	사간동 105-2	
		④ 국무총리 공관 청사	삼청동 145-6	
		⑤ 소격동 149-8주택	소격동 149-8	
		⑥ 소격동44-1주택	소격동 44-1	
		⑦ 구 풍문여고 과학관 (우수건축자산)	안국동 175-2	
		⑧ 안국빌딩	안국동 175-87	
		⑨ 안국동66-1주택	안국동 66-1	
		⑩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안국동 163	
		⑪ LG상남도서관	원서동 136	
		⑫ 원서동 135-4주택	원서동 135-4	
		⑬ 통일부남북회담 본부	원서동 산1-3	
		⑭ 향가식당	재동 84-1	
		⑮ 화동139-19주택	화동 138-19	

구분	중분류	명칭	지번	비고
건축자산 : 공간환경	가로/골목길	① 계동길	종로구 계동길(계동 146-2 일대)	건축자산 시행계획 건축자산 목록 (2017)
		② 창덕궁길	종로구 창덕궁길(원서동 9-4일대)	
		③ 삼청동길	종로구 삼청동길	신규발굴 (2019)
		④ 감고당길	종로구 율곡로3길	
	주거지 (한옥군)	① 삼청동 35번지 일대 한옥군	삼청동 35번지 일대	신규발굴 (2019)
		② 가회동 33번지 일대 한옥군	가회동 33번지 일대	
		③ 가회동 11번지 일대 한옥군	가회동 11번지 일대	
		④ 계동 2번지 일대 한옥군	계동 2번지 일대	
		⑤ 계동 127번지 일대 한옥군	계동 127번지 일대	
		⑥ 재동 52번지 일대 한옥군	재동 52번지 일대	
		⑦ 재동 84번지 일대 한옥군	재동 84번지 일대	
		⑧ 안국동 17번지 일대 한옥군	안국동 17번지 일대	
		⑨ 안국동 107번지 일대 한옥군	안국동 107번지 일대	
		⑩ 사간동 19번지 일대 한옥군	사간동 19번지 일대	
	도시평면	① 사간동 62번지 일대 도시평면	사간동 62번지 일대	신규발굴 (2019)
		② 가회동 144번지 일대 도시평면	가회동 144번지 일대	
		③ 가회동 154번지 일대 도시평면	가회동 154번지 일대	
		④ 가회동 122번지 일대 도시평면	가회동 122번지 일대	
		⑤ 화동 137번지 일대 도시평면	화동 137번지 일대	
		⑥ 재동 36번지 일대 도시평면	재동 36번지 일대	
		⑦ 계동 100번지 일대 도시평면	계동 100번지 일대	
		⑧ 계동 96번지 일대 도시평면	계동 96번지 일대	
		⑨ 가회동 202번지 일대 도시평면	가회동 202번지 일대	
		⑩ 가회동 178번지 일대 도시평면	가회동 178번지 일대	
		⑪ 가회동 93번지 일대 도시평면	가회동 93번지 일대	
		⑫ 가회동 83번지 일대 도시평면	가회동 83번지 일대	
		⑬ 가회동 61번지 일대 도시평면	가회동 61번지 일대	
		⑭ 화동 78번지 일대 도시평면	화동 78번지 일대	
		⑮ 화동 96번지 일대 도시평면	화동 96번지 일대	
		⑯ 화동 102번지 일대 도시평면	화동 102번지 일대	
		⑰ 원서동 23번지 일대 도시평면	원서동 23번지 일대	
		⑱ 원서동 34번지 일대 도시평면	원서동 34번지 일대	
		⑲ 원서동 59번지 일대 도시평면	원서동 59번지 일대	
	공간시설 및 기타	① 석정보름우물	계동 24-3	건축자산 시행계획 건축자산 목록 (2017)
		② 원서동 빨래터	원서동 30 일대	
		③ 북정우물	화동 35일대	
		④ 삼청공원	삼청동 산2-1	

2. 건축자산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

1) 한옥

가. 관리목표

-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입지하여 조선시대부터 주요관아와 양반들의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서울의 주요 역사특성지역인 북촌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존 한옥의 보전·활용 및 한옥 신축을 유도함

나. 관리구상

- 개별 한옥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한옥 고유의 외관 및 형태를 보전하면서 생활 공간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을 수립함

목표	관리방향	
한옥경관 보호	관리지침	(지구단위계획 연계) 한옥의 높이, 형태 및 외관 관리
	특례적용	한옥 유도를 위한 한옥건축 특례계획

다. 관리지침

- 한옥 고유의 외관 및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관리가 필요함.
- 기존 북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한옥의 형태 및 외관기준’ 규제/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옥 건축 시 건축선 및 주차장설치기준 등 완화계획을 적용하여 기존 한옥의 보전 및 한옥 신축을 유도하고 있음.
- 본 관리계획에서는 북촌 지역의 한옥 특성관리 및 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한옥에 대한 관리지침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르도록 함.
- 한옥에 관한 사항의 규제사항 준수 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지침 상 완화계획을 적용함.(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 한옥 수선 등의 지원 시에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 및 별표(한옥 수선 등 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특례계획

- 기존 지구단위계획 특례계획 유지
- 특례의 적용은 개별 건축자산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시 건축자산 별 주요가치 보전 준수 여부 및 건축자산의 보호수준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그 외 건축자산 및 건축특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한옥의 가치 보전을 위하여 건축여건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가능한 특례를 제시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및 제 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근거하여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완화방안을 적용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의 정의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경우 건축법 적용의 완화 심의를 통해서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6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례사항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운영(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례 구분	특례 항목	완화 범위	완화조건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건축시 적용 예외	한옥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한옥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제19조의2)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한옥의 경우
한옥에 대한 특례	정의(대수선) (건축법 제2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를 따름	한옥의 경우
	구조내력 등 (건축법 제48조제2항)	구조 안전의 확인의 기준	한옥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를 따름	한옥의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제61조제1항)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를 따름	한옥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제84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를 따름	한옥의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법 제14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를 따름	한옥의 경우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법 제15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를 따름	한옥의 경우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 (민법 제242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를 따름	한옥의 경우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용도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	건폐율 90%까지 완화	한옥의 경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건축시 적용 예외	한옥의 경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한옥의 경우 출입구, 창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있도록 완화	한옥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선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완화	한옥의 경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세부기준 완화 (단, 피난, 방화, 안전 등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	한옥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	한옥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제19조의 2)	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	한옥의 경우

2) 건축자산 건축물

가. 관리목표

-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시 특례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건축자산적 가치의 보전을 유도함

나. 관리구상

- 개별 건축물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건축자산의 특징을 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정비·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을 수립함
- 건축자산 기초조사표 및 자산가치 세부점검표에서 제시한 건축자산의 특징 및 주요가치, 주요 보전부분에 대한 관리지침 준수 시 특례 및 지원방안을 적용함

목표	관리방향	
건축자산 경관 보호	관리지침	건축자산의 특징 및 주요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부점검표에 주요 보전부분을 제시
	특례적용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특례계획 수립

다. 관리지침

- 건축자산 건축물의 건축자산적 가치 보전을 위해 주요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건축자산의 특례 및 지원 적용의 조건으로서 세부점검표 내 보전부분을 제시함
- 건축자산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시에는 본 관리계획에 따라 건축자산별 보전부분을 확인하여 준수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관리계획 지침은 북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름

라. 특례계획

- 건축자산적 가치 보전을 위한 주요가치 구성요소 보전 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 특례를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영함.
- 특례의 적용은 개별 건축자산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시 건축자산별 주요가치 보전 준수 여부 및 건축자산의 보호수준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그 외 건축자산 및 건축특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의 정의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경우 건축법 적용의 완화 심의를 통해서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6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함

특례 구분	특례 항목	완화 범위	완화조건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용도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	건폐율 90%까지 완화	건축자산의 경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가회로, 삼청로 한옥건축시 적용 예외	건축자산의 경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출입구, 창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도록 완화	건축자산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선 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완화	건축자산의 경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세부기준 완화 (단, 피난, 방화, 안전 등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	건축자산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건축자산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제19조의2)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건축자산의 경우

3) 건축자산 공간환경

가. 관리목표

- 건축물뿐만아니라 길과 필지로 구성된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옛길 및 물길의 형태 및 폭원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함

나. 관리구상

- 공간환경의 본래 특징(규모, 형태 등)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을 수립함
- 건축자산의 특징 및 주요가치, 주요 보전부분에 대한 관리지침 준수 시 특례 및 지원을 적용함

구분	선정근거	주요 가치요소
가로/골목길	북촌의 가로특성인 옛길 및 물길	• 옛길과 물길의 형태 및 폭원 - 옛 물길의 형상, 폭원(비록 물길의 복개되었을지라도 그 형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 - 옛 가로에 인접하여 남아있는 한옥 - 한옥과 옛 가로의 관계, 가로와 면한 한옥의 표층
한옥군	한옥이 20채 이상 밀집되어 한옥군 중 양호한 한옥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한옥의 입면(재료, 입면 구성 체계), 지붕경관(한식목구조, 한식지붕), 지형과 필지 - 한식목조구법을 유지 - 한옥의 밀집도 및 거주환경이 양호하며 군집된 한옥골목 경관 - 전통적인 한옥의 배치와 향 - T자형의 골목길을 형성과 2열 필지열 구성 - 한옥으로써 가치가 현저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제외
도시평면	1912년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가 새롭게 구획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필지 중 북촌의 옛 도시조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 지붕경관(한식목구조, 한식지붕), 개별 필지의 규모 및 형태, 블록 내 골목길 폭원 및 형태 - 일괄적으로 필지가 분할되지 않아 부정형의 형태로 밀집 - 1912년 이전의 필지규모와 형태를 유지 - 필지의 합필을 통한 대형건물, 획일화된 경관 방지 필요

※ '한옥군' 과 '도시평면' 의 차이점 : '한옥군' 은 개별 한옥들이 구축질서(구법)을 유지하며 군집하고 있어 한옥경관을 형성 '도시평면' 은 필지의 규모와 형태, 도로 등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한정하고 건축물과 길이 만나는 관계를 형성

다. 특례계획

- 북촌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통하여 대지 별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계획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반영함.
- 공간환경 내 한옥은 한옥특례 적용 가능
- 건축자산(한옥군) 내 비한옥의 경우 한옥으로 신축 시 특례 적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례사항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운영(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례 항목	완화 범위	완화조건
용도지역의 건폐율 (국토법 제77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우 건폐율 90%까지 완화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4m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출입구, 창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도록 완화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건축자산이 대지안의 공지를 넘어 설 경우 인정, 건축자산 외 증축된 부분은 해당 법령 준수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제19조의2)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붙임 1.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자산 목록화(현황) 도면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참조 : 생략

VI.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자산과(☎2133-5573) 및 종로구 건축과(☎2148-2812)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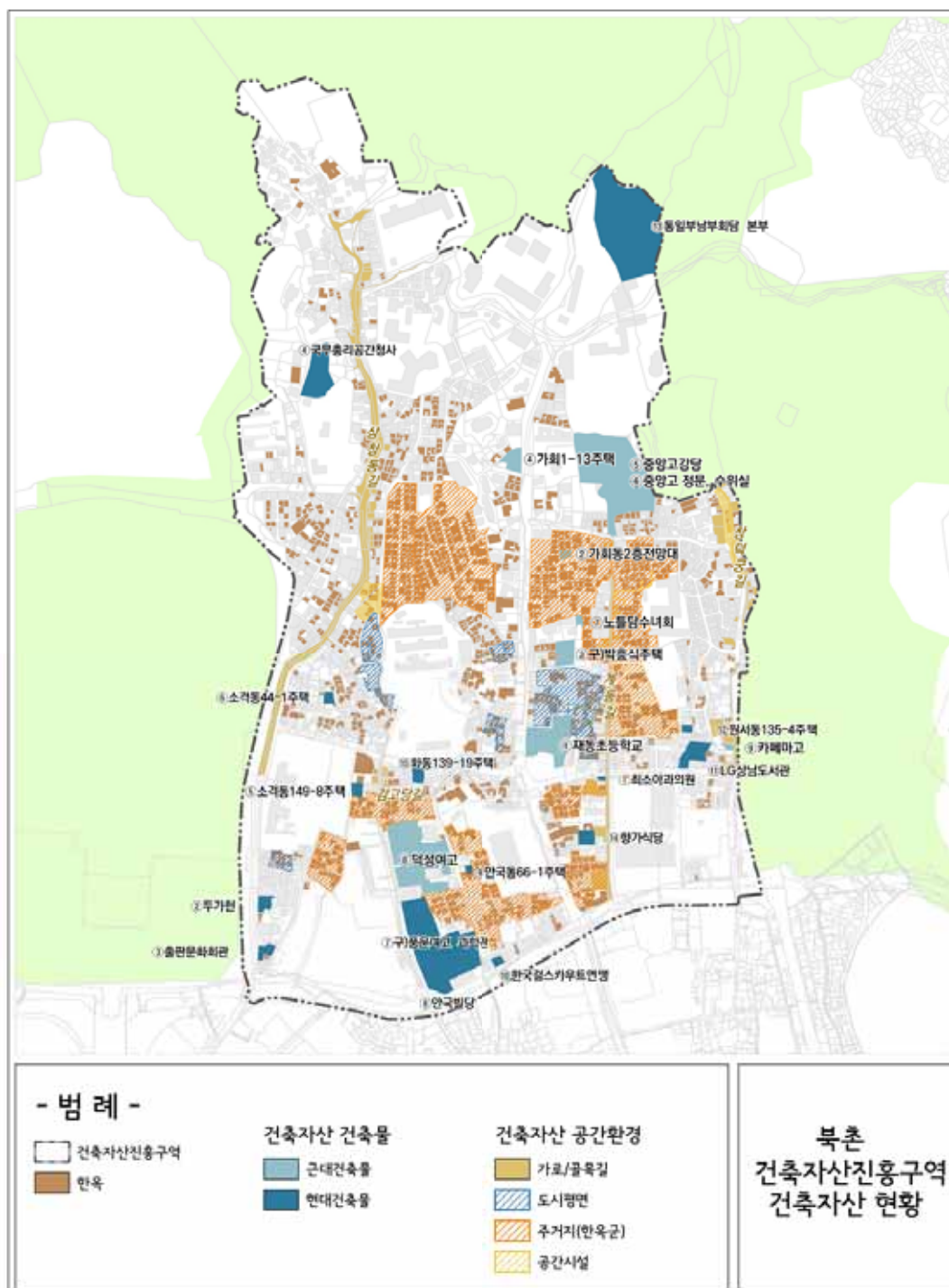
비치합니다.

붙임 1.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1부.(별도첨부)

2. 한옥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표 1부.(별도첨부)

[붙임 1]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자산 목록화(현황) 도면

□ 북촌



2021 - 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343	20.12.01.	주식회사 디노벤네트웍스 이진서 110111-4699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씨동 11층 (문정동)
2	203344	20.12.01.	주식회사 싸이웰시스템 정낙현 110111-3638339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1104호 (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3	203345	20.12.01.	주식회사 앤샵 장진화, 장혜진 110111-320439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8, 4,5,6,7층 (논현동)
4	203346	20.12.01.	주식회사 브이티더블유 조미리에 110111-21204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19층 (동자동)
5	203347	20.12.04.	주식회사 잉카인터넷 주영흠 110111-186792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201호 (구로동)
6	203348	20.12.04.	주식회사 가이드삼정 문용만 110111-29518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케이엔케이디지털타워 1411,1412호 (영등포동8가)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7	203349	20.12.04.	주식회사 한국장애인복지자리나눔 한금숙 110111-6545292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5, 고당빌딩 302호 (원효로2가)
8	203350	20.12.04.	조인어스비즈 주식회사 이주찬 110111-3171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상암아이티타워 10층 (상암동)
9	203351	20.12.04.	주식회사 인프로(INPRO Inc.) 최승혁 131411-0343394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1204호 (가산동)
10	203352	20.12.07.	주식회사 유콤아이티 허근 110111-412798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비동 1006호 (가양동)
11	203353	20.12.07.	주식회사 위지온 우영진 134111-037113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지플러스타워 7층 709-2호 (구로동)
12	203354	20.12.10.	주식회사 우림인포텍 인도훈 110111-265506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농수산물유통공사 1302호 (양재동)
13	203355	20.12.10.	주식회사 베가프로젝트코리아 이승준 110111-5923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34, 5층 (역삼동)
14	203356	20.12.16.	크리스피드 주식회사 최해문 110111-2072439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비동 1001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15	203357	20.12.16.	에스알디네트웍스 주식회사(SRD Networks. Co. Ltd.) 이석재 110111-6884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씨동 1111호(문정동,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6	203358	20.12.16.	주식회사 브이엔티지(VNTG Corp.) 김태근 110111-75072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서교동, 세아타워 6층)
17	203359	20.12.30.	주식회사 루트웰 노덕권 110111-73770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하나비즈타워 603호 (당산동2가)
18	203360	20.12.30.	주식회사 엠스톤 양승민 110111-225902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타워3차 310호 (구로동)
19	203361	20.12.30.	주식회사 씨이랩 이우영 110111-440143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17, 3층 (논현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2021 - 10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111462	20. 12. 7.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류성택 110111-767023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분할
2	510212	20. 12. 30.	주식회사 대건전력 박미영 161111-00253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5길 47, (도봉동, 동성골든빌)	분할 합병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2021 - 116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공인(회계직인)을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등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물품관리업무
- 공인종류 :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공인등록 일자 : 2021. 1. 14.
- 공인등록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없음

2021 - 119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사유: 징수관 지정에 따른 직인 등록
2.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감염병연구센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감염병연구센터 분임징수관인	훈민정음체 2cm X 2cm		2021.1.14.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감염병연구센터 수입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 X 1.8 cm			

2021 - 121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 공무원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녹색에너지과 분임징수관	2.0cm×2.0cm 훈민정음체		2021.1.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녹색에너지과 수입금출납원	1.8cm×1.8cm 훈민정음체		

2021 - 123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한*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 ***동 ***호 (서창동, 더포레스트)	일시 : 2020-11-17 03:26 장소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m 초과	처분일: 2020. 12. 24. 납기일: 2021. 02. 28. 과태료: 30만원
유*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4-*5, ****동 ****호 (통진읍, 마송휴먼시아 매수리마을)	일시 : 2020-11-06 01:29 장소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5m 초과	처분일: 2020. 12. 24. 납기일: 2021. 02. 28. 과태료: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박*두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1*6, ***동 ***호 (마동, 주공아파트)	일시 : 2020-09-24 20:51 장소 : 서울시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9m 초과	처분일: 2020. 10. 26. 납기일: 2021. 01. 31. 과태료: 30만원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명	주소		
김*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로2길 *, ***호 (고잔동)	일시 : 2020-09-23 10:41 장소 : 서울시 송파대로 내용 : 차량의 길이 제한 2.49m 초과	처분일: 2020. 10. 26. 납기일: 2021. 01. 31. 과태료: 30만원
김*홍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2, ****호 (중동, 코스모폴리탄)	일시 : 2020-09-14 02:55 장소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18m 초과	처분일: 2020. 10. 26. 납기일: 2021. 01. 31. 과태료: 3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0.02.28.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2, 팩스번호: 02-2040-0305

2021 - 13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1. 1. 21 ~ 2. 4.(14일)
4. 대 상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과세년월	송달 주소지	반송사유
1	박0현	1971.11.15.	2020.1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	수취인불명
2	허0성	1971.01.08.	202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211-*	폐문부재
3	이0수	1967.03.07	2020.1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	수취인불명

5.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02-2133 -7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32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1. 1. 21 ~ 2021. 2. 4.(14일)
4. 대 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과세년월	송달 주소지	반송사유
1	박0래	1952.10.08.	2020.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20길 **	수취인불명
2	손0수	1965.09.24.	2020.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53-*	수취인불명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수납기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 팩스(02-768-8835)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 (☎02-2133-7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 133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박연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보학2길	일시: 2020-11-17 14:29 위반장소: 광나루로(둔촌동-성수동) 내용: 서울0676795 (덤프 4축, 축하중초과(실측값:11.30t, 초과값:1.30t), 적재물:토사)	처분일: 2020. 12. 24. 과태료: 5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1. 2. 28.
 -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34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정남	경기도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일시: 2020-08-05 06:39 위반장소: 천호대로(울산-제기동) 내용: 인천95바3680 (탑차5축, 총중량초과(실측값35.90t, 초과 값:3.90t), 적재물:설탕)	처분일: 2020. 09. 25 과태료: 50만원 최초납기일: 2020.11.30. 독촉일: 2020. 12. 11.
곽현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일시: 2020-08-12 15:57 위반장소: 경춘북로(수유동-진접) 내용: 서울06자5281 (덤프3축, 축하중초과(실측값11.05t, 초과 값:1.05t), 적재물:건설폐기물)	처분일: 2020. 09. 25 과태료: 50만원 최초납기일: 2020.11.30. 독촉일: 2020. 12. 1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1. 2. 28.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13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에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I. 인원 및 장소

1. 채용인원 : 24명 (자치구별 각 1명)
2. 모집기관(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II. 지원분야

1. 채용 직위: 안전관리 전문요원
2. 주요 업무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 어린이집 현장방문 자료입력 등
 - 기타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III. 필요자격 및 제한사유

1. 응시자격 및 선발 우대사항
 -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나. 필수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하기 우대사항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다. 우대사항
 -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등

2. 응시제한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본 사업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총 사업 참여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업 참여 가능)
 다.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경력과 본 사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이거나, 연속된 기간이 합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인 자
 라.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IV.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1. 접수방법: 전자우편 제출
2. 접수기관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모집인원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737-0890	jccic@hanmail.net	1명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2263-2626	jccic@daum.net	1명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749-9674	yccic@yccic.or.kr	1명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499-5675	sd-ccic@hanmail.net	1명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467-1828	gjcc@hanmail.net	1명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2237-5800	ddmccic2009@hanmail.net	1명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495-0030	jccic12@hanmail.net	1명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918-8080	i-joa09@hanmail.net	1명

센터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모집인원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994-7480	gwcic@hanmail.net	1명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3494-3560	doccic@hanmail.net	1명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930-1944	nwscc@daum.net	1명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351-3629	epccic@daum.net	1명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3217-9550	sdmccic@hanmail.net	1명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308-0202	mpcic@hanmail.net	1명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646-7790	bestccic@hanmail.net	1명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64-2730	gseducare@hanmail.net	1명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859-5678	9roccic@hanmail.net	1명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894-2264	happycare2265@daum.net	1명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833-6022	ydpccic@hanmail.net	1명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823-4567	dccic@hanmail.net	1명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851-2834	kaeducare1@hanmail.net	1명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2155-8678	scyongua@hanmail.net	1명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449-0505	spkids50@hanmail.net	1명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486-3556	gdkids@gangdong.go.kr	1명

3. 접수기간: ' 21. 1. 25.(월) ~ ' 21. 2. 9.(월)

※ 이후 도착분의 서류 불인정

V.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실시)
2. 전형 일정
 - 서류 및 면접심사: 2. 10.(화) ~ 2. 20.(금) (자치구별 일정 상이)
 - 합격자 발표: 2. 23.(월) (합격결과 개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사전교육: 2. 26.(목)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예정)

VI.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2. 면접시 지참서류: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VII. 근로사항

1. 보수기준
 - 급 여: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040,000원)
 - 상여금: 명절 시 지급 1회, 기본급의 60%

- 식 비: 월 147,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출장비: 일 10,000원(교통비 포함)
- 연 차: 휴가 월 1회 부여(미 사용 시에는 수당 88,400원 지급)
- 4대 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가입

2. 근로조건

- 근로장소 및 소속: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간: 2021. 3. 1. ~ 2021. 12. 31.(10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휴일

VIII. 기타

1.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수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전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전교육 : 2. 26.(목) 14:00~16:30 (예정)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 담당자(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 전화 2133-5118)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156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1. 지정지역 : 공공재개발 후보지 129,979㎡

시도	자치구	구역명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계		129,979	
	종로구	신문로2-12	1,248	
	동대문구	신설1	11,204	
	동대문구	용두1-6	13,633	
	강북구	강북5	12,870	
	영등포구	양평13	22,441	
	영등포구	양평14	11,082	
	동작구	흑석2	45,229	
	관악구	봉천13	12,272	

2. 지정기간 : 2021년 1 월 26 일부터 2022년 1 월 25 일까지 지정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초과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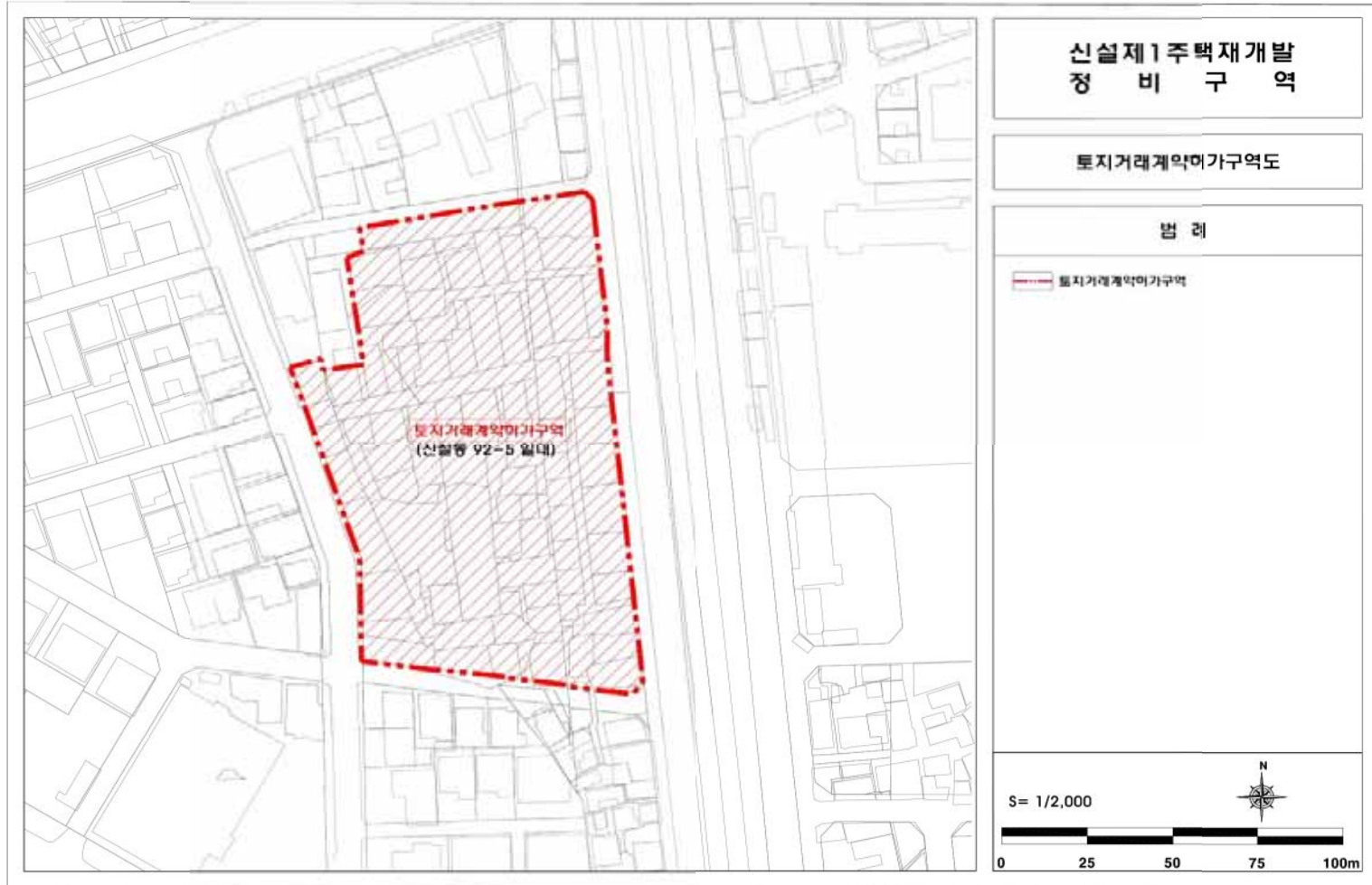
별첨1

지역별 세부 지형도

◎ 신문로2-12구역



◎ 신설1구역



◎ 용두1-6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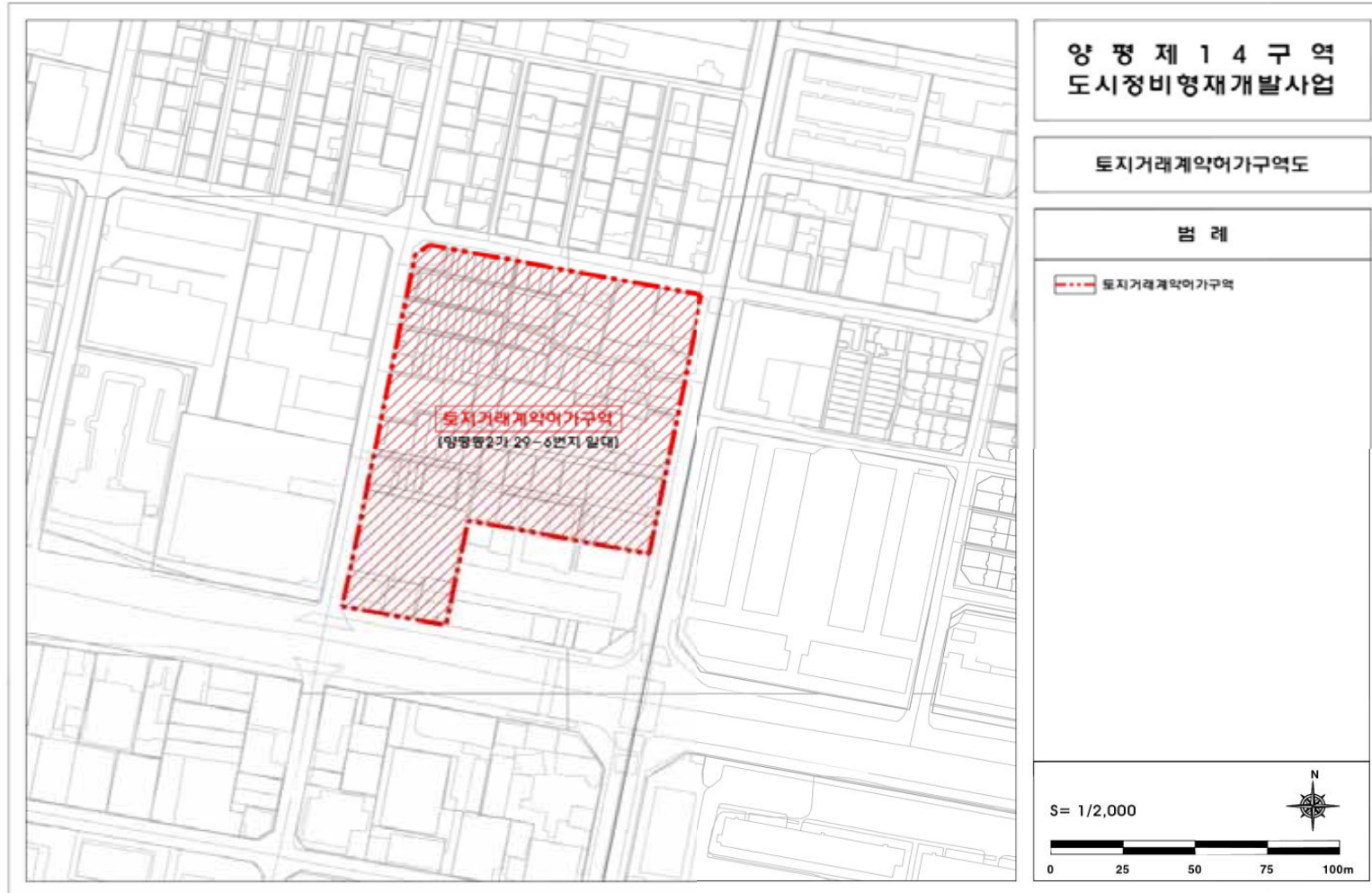
◎ 강북5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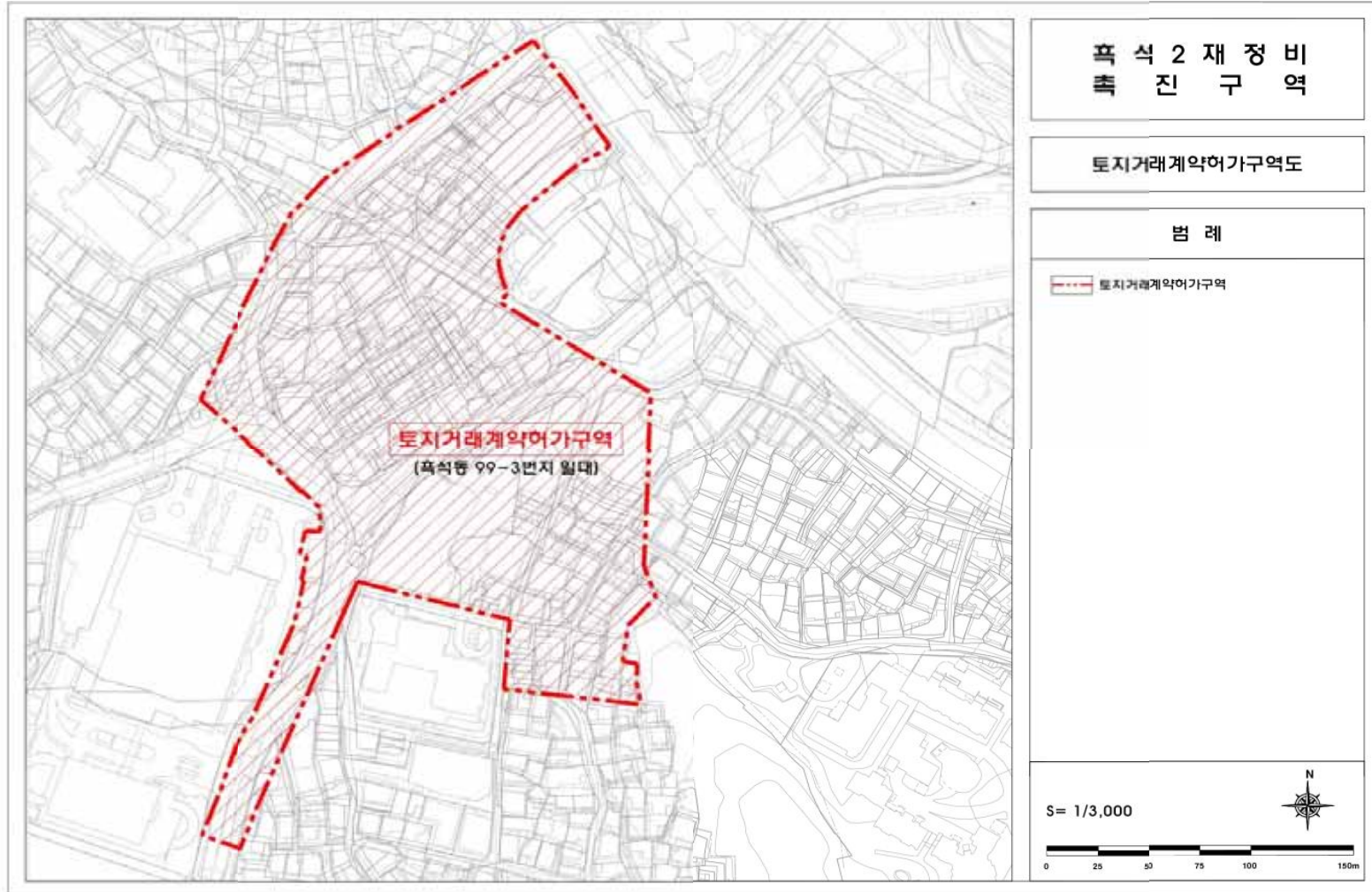
◎ 양평13구역



◎ 양평14구역



◎ 흑석2구역



◎ 봉천13구역



1

1

2021 - 36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후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내용
개폐회식 전문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일~ '21.12.31 (후당35시간)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총감독 보좌 업무 -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및 운영 업무 -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개최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조정 업무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법27조2항3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경력” 응시요건 적용

구분 (등급)	응시자격요건
개폐회식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제경기 조직위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폐회식 업무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참고, 단 한시임기제는 10년)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아래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6,686	51,098

- ※ 연봉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02.2(화) ~ 02.04(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올림픽추진과(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10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주소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올림픽추진과(10층)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21.1.21.(목)	
응시원서 접수	2021.2.2.(화) ~ 2.4(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1.2.5(금)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2.9(화)限	
면접시험	2021.2.18(목)限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1.2.23(화)限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 (6~7급, 나·다급 7,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
 -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종 날인(방문시 말하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 ▶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메뉴에서 구매 가능

- ▶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 7천원, 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 ▶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동그라미 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동그라미 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민원증명 이용시간

민원증명 이용절차

민원증명 신청

민원증명 처리결과

민원증명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 신청

민원증명 처리결과

민원증명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9) 1부
- 응시자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올림픽추진과 담당(연홍모 ☎ 2133-1873)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주요업무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지원 -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총감독 보좌 업무 -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및 운영 업무 -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조정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개·폐회식 등 대형 공식행사 기획 운영 경험 ○ 대축전 등 개폐회식에 대한 차별성 있는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성 ○ 대행사 지도감독, 다수 유관기관·단체와 협의 경험 및 능력	
응시자격요건	임용분야 : 개폐회식요원	
	공고문상 응시요건 (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제경기 조직위원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폐회식 업무 경력
우대요건		○ 해당 없음

<서식 1> [필수]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 응시 정보 및 요건

성 명	응시직급	응시직무분야	직무 분야별 자격요건

※ 분야별 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응시자 본인에 해당하는 각 호를 적습니다.
(예시) 응시자격요건 1호~3호 중 기재

□ 제출서류 목록★ 작성목록(총괄표)

구분	목 록	제출대상자	작성여부
제 출 서 류	1. 응시원서 (첨부 1)	모든 응시자	
	2. 이력서 (첨부 2)	모든 응시자	
	3. 자기소개서 (첨부 3)	모든 응시자	
	4. 직무수행계획서 (첨부 4)	모든 응시자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 5)	모든 응시자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첨부 6)	모든 응시자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7) ※ 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동의 시	
	8.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첨부 8)	해당자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9)	해당자	
증 빙 서 류	10.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모든 응시자	
	1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자	
	1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해당자	
	13.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등	해당자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은 굴림 12p, 줄간격 160%, 검정색 글씨로 작성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첨부 1> [필수]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제 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서울특별시 제 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1 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온라인시스템(서울시 ETAX),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및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 구입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구 분	구 입 처	수입증지 인증 등
온라인시스템	서울시 ETAX(etax.seoul.go.kr) 홈 (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 → 납부확인서 발급)	응시원서 다음 페이지에 첨부
	포털(다음, 네이버 등)에서 '서울시 이텍스' 검색 후 하단 '서울시 채용수수료 안내'에 따라 납부확인서 원본 출력	
현 금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응시원서에 인증기 인증
카 드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25개 자치구 재무과	응시원서에 매출전표 부착
*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 수입증지 구매 시 반드시 서울시 수입증지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주 의 사 항 >>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첨부 2>

[채용분야] 개폐회식요원

1. 이 력 서 (필수) ※ 응시요건이 경력일 경우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감찰과 기재	응시 분야		응시 직급	성 명
나. 응시 자격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20XX.XX.XX.		학사	
경 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 위	담당업무
	00기업(00팀)	20XX.XX.XX.~20XX.XX.XX.	XX개월	과장	○○업무
다. 주요업무 실적					
근무처(부서)		주요 업무실적			
00기업(00과·팀)		- -			
00기업(00과·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1.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나. 「응시자격」

유의사항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 응시직무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우대요건** { 관련학과 전공자, 자격증, 경력(특정계급 근무경력) 등 } 등은 「**우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

【학위사항 작성요령】

-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주요업무실적」

-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별 각각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라. 「우대사항」 : 해당 없음

<첨부 3>

자기소개서 [필수]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첨부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③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④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첨부 5> [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신규채용(제4회 일반임기제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첨부 6>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분야】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
 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
 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 8> [해당자에 한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대학교	대학(학부)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년도 졸업(석·박사)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서울특별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20 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또는 ○○단과대학장(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9>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성명	()	생년월일	
담당업무	기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10>

봉투표지 양식

※ 본 서식은 서류를 우편제출 시 봉투 겉면에 붙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주소 및 성명)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등 ()

받는 사람

우) 04514

서울특별시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올림픽추진과(10층)

서울특별시 올림픽추진과 올림픽총괄팀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담당자 앞

[제○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관련 서류 재중]



2021 - 6

() 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16호(2018. 3. 2.)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세종로-운니)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중구 무교동 93 ~ 종로구 관수동 150-6호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사업
- 명 칭: 서울 중구·종로구지역 전기공급시설(세종로-운니) 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

- 규 모: L=1,035m 터널식 전력구 및 수직구 신설
- 면 적: 2,957.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김종갑
-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일: 착수일로부터 42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사.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을 보입니다.

1) 지목별 토지조서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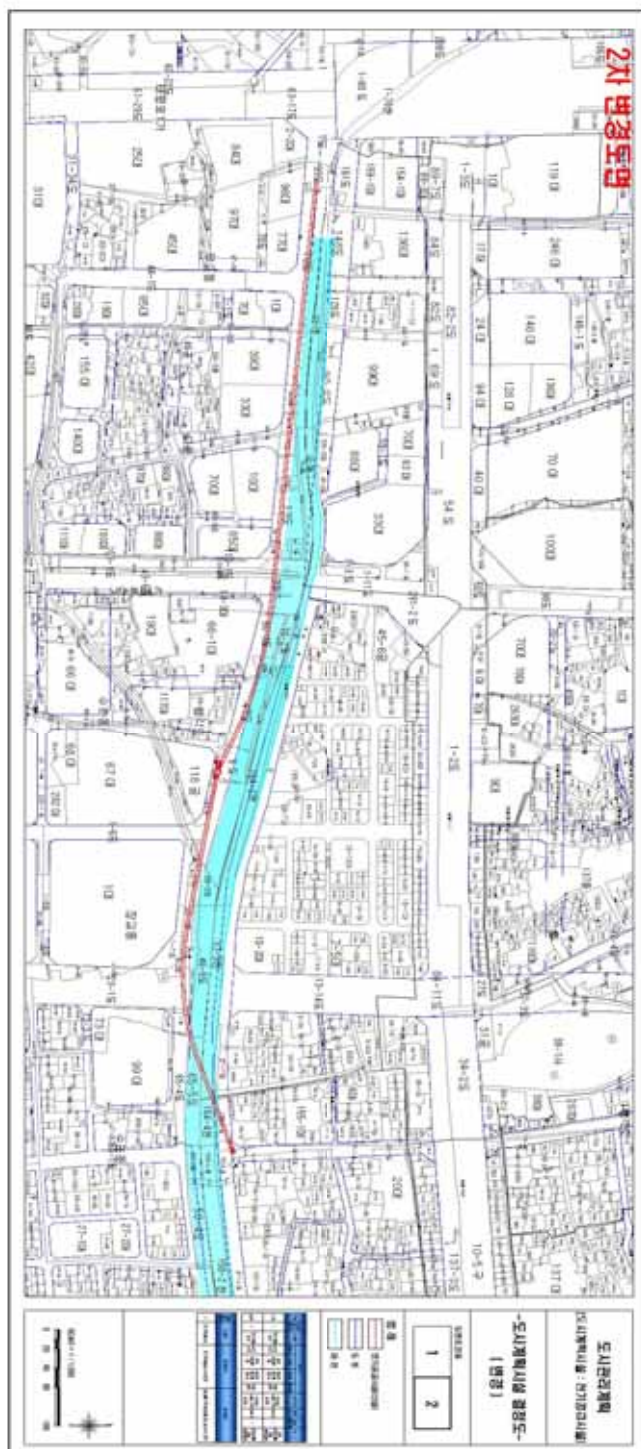
구 분	계			하 천			도 로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지적면적(㎡)	40,690.5	40,690.5		3,014.9	3,014.9	-	37,675.6	37,675.6		
편입면적(㎡)	2,967.4	2,957.1	-10.3	92.2	92.2	-	2,875.2	2,864.9	-10.3	
수 직 구(㎡)	72.8	62.5	-10.3				72.8	62.5	-10.3	
1 구 간(㎡)	1,759.6	1,759.6					1,759.6	1,759.6		
2 구 간(㎡)	1,135.0	1,135.0		92.2	92.2	-	1,042.8	1,042.8		
필 지 수	48필지	48필지		2필지	2필지	-	46필지	46필지		

2) 소유자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국유지(㎡)												사유 지	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지적 면적	40,690.5	40,690.5		29,478.9	29,478.9		819.4	819.4		3,853.5	3,853.5		6,538.7	6,538.7			
편입 면적	2,967.4	2,957.1	-10.3	2,470.4	2,469.4	-1.0	148.5	139.2	-9.3	125.2	125.2		223.3	223.3			
수직 구	72.8	62.5	-10.3	11.1	10.1	-1.0	61.7	52.4	-9.3								
1구간	1,759.6	1,759.6		1,658.9	1,658.9		17.2	17.2					83.5	83.5			
2구간	1,135.0	1,135.0		800.4	800.4		69.6	69.6		125.2	125.2		139.8	139.8			
필지 수	48필지	48필지		34필지	34필지		3필지	3필지		4필지	4필지		7필지	7필지			

3) 시설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도시계획시설(전력공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편입면적(㎡)	2,967.4	2,957.1	-10.3	2,967.4	2,957.1	-10.3	
수직구(㎡)	72.8	72.8	-10.3	72.8	72.8	-10.3	
1구간(㎡)	1,759.6	1,759.6		1,759.6	1,759.6		
2구간(㎡)	1,135.0	1,135.0		1,135.0	1,135.0		
필지수	48필지	48필지		48필지	48필지		



2021 - 6

()

가

1. 서울시 고시 제535(1978. 10. 13.)호 및 서울시 고시 제2017-170호(2017. 05. 18.)로 결정 고시되고 용산구 고시 제2020-108호(2020.6.25.)로 실시계획 고시된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도로과:☎2199-7854, 건설관리과:☎2199-77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사 업 구 간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서계동 229-14 ~ 서계동 236-11	폭:15m 연장:216m	용산구청장	서울시고시 제535호 (1978. 10. 13.)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별첨

라.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별첨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토지조서 등 1부. 끝.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서계동 229-14	대	145.8	140.9	강순이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68-14 104동 802호	(주)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상권	
							최재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4 상록마을 103-1402	근저당권	
2	서계동 229-15	대	48.1	48.1	이은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29, 113동 802호 (우두동, 롯데 인벤스 아파트)				
3	서계동 229-16	대	109.9	109.9	정관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44-11				
4	서계동 229-17	대	10.1	10.1	이은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29, 113동 802호 (우두동, 롯데 인벤스 아파트)				
5	서계동 234-46	대	240.8	120.4	고순임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3길 21, 102동 1103호 (만리동1가, LG서울역리가)				1/2
				120.4	문영수	서울시 서계동 234-46 A동 3층				1/2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6	서계동 8-1	대	32.8	16.4	박복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5				1/2
				16.4	이춘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22동 806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1/2
7	서계동 20-1	대	21.2	21.2	이지훈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07, 617동 1006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0 [건물] 서계동 20 외 1필지
8	서계동 21-2	대	19	19	박주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나길 49-11(구로동)	(주)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9	서계동 234-45	대	7.5	7.5	정세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28 108동 1201호 (래미안용강아파트)				
10	서계동 234-7	대	18.8	18.8	정세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28 108동 1201호 (래미안용강아파트)				
11	서계동 234-44	대	134.6	134.6	이미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2-1 (서계동)				
12	서계동 234-11	대	17.5	17.5	박세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2동 1415호 (우동, 해운대 한신 휴플러스 오피스텔)				
13	서계동 234-43	대	15.3	15.3	박세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2동 1415호 (우동, 해운대 한신 휴플러스 오피스텔)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4	서계동 234-12	대	6.6	6.6	박세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2동 1415호 (우동, 해운대 한신 휴플러스 오피스텔)				
15	서계동 234-42	대	119	109.1/ 3	김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25, 102동 603호(대치동, 대치 SK VIEW)				1/3
				109.1/ 3	김경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3
				109.1/ 3	김나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05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1/3
16	서계동 22-6	도	2.3	2.3	윤용중	아산시 온천대로 1499, 4층(온천동)				
17	서계동 22-4	대	2.2	2.2	윤용중	아산시 온천대로 1499, 4층(온천동)				
18	서계동 23-2	대	5.5	5.5	윤용중	아산시 온천대로 1499, 4층(온천동)				
19	서계동 24	도	0.5	0.5	김일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94, 102동 1704호(호계동, 리치밸리)				
20	서계동 24-6	대	6.3	6.3	장우성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3(서계동)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21	서계동 24-5	대	1.2	1.2	장우성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3(서계동)				
22	서계동 25-2	대	2.7	2.7	장우성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3(서계동)				
23	서계동 26-2	대	0.2	0.2	김공식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7-1				
24	서계동 235-32	대	69.9	62/3	김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25, 102동 603호(대치동, 대치 SK VIEW)				1/3
				62/3	김경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3
				62/3	김나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05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1/3
25	서계동 235-9	대	145	0.7/3	김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25, 102동 603호(대치동, 대치 SK VIEW)				1/3
				0.7/3	김경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3
				0.7/3	김나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05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1/3
26	서계동 235-12	대	36.7	36.7	이승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3동 503호 (신내동, 데시앙아파트)				
27	서계동 235-14	대	57.8	57.8	이희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4동 703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28	서계동 235-31	대	85.4	85.4	이병숙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0, 103동 2404호(신공덕동, 브라운스톤공덕아파트)				
29	서계동 235-30	대	89.6	89.6	강영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3-36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30	서계동 235-23	대	80.3	80.3	나순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35-23				
31	서계동 235-24	대	28.8	28.8	나순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35-23				
32	서계동 235-29	대	27.5	27.5	유선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20, 301호 (화곡동)				
33	서계동 237-56	대	12.8	12.8	강성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7-48	최금순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132번길 39 (송내동)	근저당권	
34	서계동 237-55	대	7.4	7.4	강성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7-48	최금순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132번길 39 (송내동)	근저당권	
35	서계동 236-29	대	6.3	6.3	이신희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73, 104동 1307호(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아파트)				
36	서계동 236-46	대	64.3	64.3	최승찬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73, 104동 1307호(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아파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37	서계동 236-30	대	28.4	28.4	최인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1 현대아파트 202동 2203호				
38	서계동 236-45	대	33.2	33.2	정민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5번길 13, B동 514호 (상현동,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39	서계동 236-44	대	0.9	0.9	박종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2002호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40	서계동 236-10	대	37.7	37.7	정종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1-2 삼성아파트 101동 601호				
41	서계동 236-37	대	41.8	41.8	박종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2002호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42	서계동 236-38	대	8.3	8.3	정종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1-2 삼성아파트 101동 601호				
43	서계동 237-54	대	38.6	38.6	이은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6-2 차관아파트 5동 315호				
44	서계동 237-26	대	28.4	28.4	안승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동 301호(이촌동, 한강맨션)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45	서계동 237-52	대	59.4	59.4	염지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5동 1002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46	서계동 237-51	대	30.9	30.9	염태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				
47	서계동 237-50	대	10.3	10.3	임병현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314 301동 901호(역삼동, 개나리푸르지오)	(주)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7-4 [건물] 서계동 237-4
							(주)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	
48	서계동 238-1	대	330.1	2	정혁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14길 56, 303동 603호 (삼성동, 래미안삼성1차아파트)	종로 세무서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근저당권	공동담보 [건물] 서계동 238-1
49	서계동 7-6	대	19.7	19.7	주식회사 한국철도 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50	서계동 7-9	대	18.3	18.3	주식회사 한국철도 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51	서계동 7-8	대	42.2	42.2	주식회사 한국철도 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52	서계동 7-7	대	4.8	4.8	주식회사 한국철도 유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1	서계동 8-1	가건물 (창고)	판넬	20.7	박복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5				
					이춘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22동 806호 (서현동,우성아파트)				
2	서계동 20-1	1층 건물	벽돌조	14.7	이지훈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07, 617동 1006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쥬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0 [토지] 서계동 20-1
3	서계동 20-1	2층 건물	벽돌조	14.7	이지훈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07, 617동 1006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쥬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0 [토지] 서계동 20-1
4	서계동 21-2	1층건물 출입구	벽돌조	5.7	박주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나길 49-11(구로동)	쥬민국저축 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5	서계동 21-2	2층건물	벽돌조	5.7	박주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나길 49-11(구로동)	국민국저축 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6	서계동 21-2	1층건물	벽돌조	12.0	박주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나길 49-11(구로동)	국민국저축 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7	서계동 21-2	2층건물	벽돌조	12.0	박주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나길 49-11(구로동)	국민국저축 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8	서계동 21-2	가건물	목조	3.1	박주미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나길 49-11(구로동)	국민국저축 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충무로5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1 [건물] 서계동 21
9	서계동 24-6	화단	벽돌조	1.4	장우성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3(서계동)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10	서계동 229-15	1층건물	콘크리트	61.9	이은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29, 113동 802호 (우두동, 롯데 인벤스 아파트)				물건주인확인
11	서계동 229-16	1층건물	벽돌조	58.2	정관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44-11				
12	서계동 234-7	1층건물	콘크리트	27.1	정세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28 108동 1201호 (래미안용강아파트)				물건주인확인
13	서계동 234-42	가설물	콘크리트 벽돌	47.1	김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25, 102동 603호(대치동, 대치 SK VIEW)				1/3
					김경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3
					김나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05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1/3
14	서계동 234-42	창고	콘크리트	2.5	김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25, 102동 603호(대치동, 대치 SK VIEW)				1/3
					김경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1/3
					김나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05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15	서계동 234-44	1층건물	목조기와 지붕	50.0	이미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2-1 (서계동)				
16	서계동 234-44	1층건물	목조기와 지붕	20.7	이미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2-1 (서계동)				
17	서계동 234-44	창고및보일 로	목조기와 지붕	3.6	이미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2-1 (서계동)				
18	서계동 234-44	창고및보일 로	목조기와 지붕	7	이미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2-1 (서계동)				
19	서계동 234-44	창고	목조기와 지붕	4.1	이미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2-1 (서계동)				
20	서계동 235-12	1층건물	목조기와 지붕	34.7	이승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3동 503호 (신내동, 데시앙아파트)				
21	서계동 235-12	가건물및출 입구	목조기와 지붕	13.4	이승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103동 503호 (신내동, 데시앙아파트)				
22	서계동 235-14	1층건물	목조	41.3	이희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4동 703호				
23	서계동 235-14	가건물및출 입구	목조	15.7	이희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4동 703호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24	서계동 235-23	지층	콘크리트	54.5	나순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35-23				
25	서계동 235-23	1층건물	콘크리트	54.5	나순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35-23				
26	서계동 235-23	2층건물	콘크리트	47.1	나순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35-23				
27	서계동 235-23	1층건물	콘크리트	24.2	나순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35-23				
28	서계동 235-23	계단	철	1.5	나순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35-23				
29	서계동 235-23	계단	철	1.5	나순식	서울시 종로구 서계동 235-23				
30	서계동 235-29	가건물	판넬	0.7	유선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20, 301호 (화곡동)				
31	서계동 235-29	1층건물	콘크리트	21.1	유선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20, 301호 (화곡동)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32	서계동 235-30	옥탑	패널	40.7	강영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3-36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33	서계동 235-30	가건물		3.2	강영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3-36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34	서계동 235-30	1층건물	철근콘크리트	87.9	강영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3-36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35	서계동 235-30	2층건물	철근콘크리트	87.9	강영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3-36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36	서계동 235-30	가설물		2.9	강영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3-36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서계동 235-21 서계동 235-30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37	서계동 235-31	1층건물	목조세멘 기와	69.3	이병숙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0, 103동 2404호(신공덕동, 브라운스톤공덕아파트)				
38	서계동 235-31	가건물및출 입구	목조세멘 기와	16.9	이병숙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30, 103동 2404호(신공덕동, 브라운스톤공덕아파트)				
39	서계동 236-10	1층건물	목조세멘 기와	41.7	정종욱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1-2 삼성아파트 101동 601호				
40	서계동 236-30	1층건물	목조	33.1	최인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1 현대아파트 202동 2203호				1/2
					강민선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1 현대아파트 202동 2203호				1/2
					김을봉	서대문구 만리동2가 101-1				제1호
41	서계동 236-37	지층	콘크리트	32.7	박종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2002호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42	서계동 236-37	1층건물	콘크리트	33.1	박종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2002호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43	서계동 236-37	화장실	콘크리트	3.7	박종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2002호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44	서계동 236-38	1층건물	목조세멘 기와	21.0	정종욱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1-2 삼성아파트 101동 601호				
45	서계동 236-38	지층	목조세멘 기와	21.8	정종욱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1-2 삼성아파트 101동 601호				
46	서계동 236-38	계단	콘크리트	4.9	정종욱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91-2 삼성아파트 101동 601호				
47	서계동 236-45	2층건물	목조세멘 기와	10.9	정민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5번길 13, B동 514호 (상현동,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48	서계동 236-45	1층건물	목조세멘 기와	41.6	정민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5번길 13, B동 514호 (상현동,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49	서계동 236-46	창고		1.5	김나영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76길 7-3, 401호(수유동, 은행빌라)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50	서계동 236-46	1층건물	콘크리트	40.7	김나영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76길 7-3, 401호(수유동, 은행빌라)				
51	서계동 237-23	가설물	콘크리트	5.8	김유희	서울시 서대문구 만리동2가 146				
52	서계동 237-23	가설물	콘크리트	29.1	김유희	서울시 서대문구 만리동2가 146				
53	서계동 237-26	1층건물	목조기와 지붕	27.8	안승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동 301호(이촌동, 한강맨션)				1/3
					염지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5동 1002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3
					염태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				1/3
54	서계동 237-50	가건물		5.7	김병길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97-28				
55	서계동 237-52	데크	데크	7.1	안승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동 301호(이촌동, 한강맨션)				1/3
					염지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5동 1002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염태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				1/3
56	서계동 237-52	2층건물	콘크리트	68.7	안승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동 301호(이촌동, 한강맨션)				1/3
					염지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5동 1002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3
					염태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				1/3
57	서계동 237-52	1층건물	콘크리트	73.2	안승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동 301호(이촌동, 한강맨션)				1/3
					염지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5동 1002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3
					염태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				1/3
58	서계동 237-52	가건물		1.4	안승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동 301호(이촌동, 한강맨션)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염지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5동 1002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3
					염태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				1/3
59	서계동 237-52	창고	콘크리트	15.8	안승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동 301호(이촌동, 한강맨션)				1/3
					염지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5동 1002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3
					염태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				1/3
60	서계동 237-52	보일러		0.2	안승찬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동 301호(이촌동, 한강맨션)				1/3
					염지선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5동 1002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3
					염태선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1길 31(용강동)				1/3
61	서계동 237-55	화단	벽돌	1.8	강성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7-48	최금순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132번길 39 (송내동)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62	서계동 229-15	담장	벽돌		이은희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29, 113동 802호 (우두동, 롯데 인벤스 아파트)				물건주인확인
63	서계동 229-16	담장	콘크리트		정관섭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44-11				
64	서계동 234-7	담장 및 출입구	콘크리트		정세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28 108동 1201호 (래미안용강아파트)				
65	서계동 234-11	대문	콘크리트		박세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2동 1415호				
66	서계동 234-42	담장 2개소	콘크리트		김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25, 102동 603호(대치동, 대치 SK VIEW)				1/3
					김경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3
					김나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05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1/3
67	서계동 234-42	대문	콘크리트		김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25, 102동 603호(대치동, 대치 SK VIEW)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김경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3
					김나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05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1/3
68	서계동 234-44	담장 3개소	콘크리트		이미숙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2-1 (서계동)				
69	서계동 234-7	출입구	콘크리트		정세훈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28 108동 1201호 (래미안용강아파트)				
70	서계동 235-14	담장	콘크리트		이희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4동 703호				
71	서계동 235-29	담장	콘크리트		유선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길 20, 301호 (화곡동)				
72	서계동 235-32	담장 및 대문	콘크리트		김경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25, 102동 603호(대치동, 대치 SK VIEW)				1/3
					김경열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11동 1205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1/3
					김나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C동 305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1/3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의 권리	
73	서계동 236-46	대문 및 담장	콘크리트		최승찬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73, 104동 1307호(금호동2가, 신금호파크자이아파트)				
74	서계동 236-37	담장	콘크리트		박종현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2002호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75	서계동 237-55	담장	콘크리트		강성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7-48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서계동 224-4 ~ 서계동 238-9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위치)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계동 236-11	덕트공사	가나안기 업	1식	최낙진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6-11				1층
2	서계동 236-30	의류임가 공	-	1식	소선미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6-30				1층
3	서계동 235-21	의류임가 동	KS-10	1식	문용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2-15 201호				지층
4	서계동 229-16	의류임가 공	퀄리티	1식	윤형동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35-4 남산빌라 202호				1층
5	서계동 236-11	철학관	철학관	1식	조영자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6-11				1층
6	서계동 236-11	의류임가 공	쌔라	1식	서동선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6-11				1층

연번	소재지 (위치)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서계동 236-10	의류임가 공	보라패션	1식	이현주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4길 22				1층
8	서계동 235-23	의류임가 공	단추	1식	윤송영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5-23				1층
9	서계동 235-23	의류임가 공	스랍	1식	이영숙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5-23				지층
10	서계동 235-21	의류임가 공	주연	1식	최윤석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41 명인빌라 B101				2층
11	서계동 235-21	의류임가 공	호영사	1식	김상길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50-8				지층
12	서계동 235-16	의류임가 공	백호	1식	박연숙	인천시 계양구 양지말3길 5-3 D동 301호				1층
13	서계동 235-14	일반음식 점	소셜나인	1식	최영애 황윤호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1 5층				1층
14	서계동 234-46	이미용	아인아르 떼	1식	정현철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4-5				1층

연번	소재지 (위치)	영업의 종류	상호명	수량	영업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	서계동 229-9	의류임가 공	부흥사	1식	오병민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46-5				1층
16	서계동 20	의류임가 공	서부사	1식	황병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60				1층
17	서계동 20	의류임가 공	이브	1식	한상만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				2층
18	서계동 21	의류임가 공	경서	1식	박광철	서울시 마포구 임정로25길 14-1 102동 101호				1층
19	서계동 21	의류임가 공	봄날	1식	한운선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1				2층
20	서계동 21	의류임가 공	-	1식	장초임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54-8				2층
21	서계동 237-52	의류임가 공	강패턴실	1식	강희순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7-52				1층
22	서계동 237-26	의류임가 공	선어패럴	1식	기선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24-19				1층
23	서계동 235-14	일반음식 점	소셜나인	1식	황운호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1 5층				1층
24	서계동 235-14	일반음식 점	나인로드	1식	최영애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41 5층				1층
25	서계동23 7-54	건자재소 매	서계종합 건재	1식	장은숙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37-23 010-5254-9209				1층
26	서계동 236-38	의류도매	프라미스 제이	1식	한해원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99-12 1층 010-9422-0817				1층

2021 - 10

()

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1(1972. 04. 22.)호로 결정 고시, 용산구 고시 제 2020-93호 (2020.6.4.)로 실시계획 인가된 『용산동2가 5-98 ~ 5-545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변경)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도로과:☎2199-7866, 건설관리과:☎2199-77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사 업 구 간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용산동2가 5-98 ~5-545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용산동2가 5-98 ~ 5-545	폭:10m 연장:610m	용산구청장	서울시고시 제51호 (1972. 4. 22.)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변경없음)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별첨(변경있음)

라.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별첨(변경있음)

※ 변경내용 :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지적분할 시행,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일부 수정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용산동2가 5-98 ~ 5-545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용산동2가 5-1885	대	15.4	15.4	조영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29				
2	용산동2가 5-2179	대	16.6	16.6	박종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758				
3	용산동2가 5-1902	대	10	10	김금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73				
4	용산동2가 5-2180	대	7	7	최지안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25동 1301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주택 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	
5	용산동2가 5-2182	대	3.9	3.9	김성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45 ,2동 801호(용산동2가,한신아파트)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관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6	용산동2가 5-2181	대	14.5	14.5	김영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6길 12, 202호(이태원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30(이태원동)	근저당권	
					이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6길 12, 202호(이태원동)				
7	용산동2가 5-2183	대	4.4	4.4	장석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19				
8	용산동2가 5-2184	대	9.6	9.6	한택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8-8 403호				
9	용산동2가 5-2178	대	5.4	5.4	조영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29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수량	단위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지권 비율)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용산동2가 5-1902	계단	무근콘크리 트	7.5	m ²	김금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5-73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근저당권	공동담보 [토지] (용산동2가 5-73)
2	용산동2가 5-2183	대문	철제	1	식	장석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74				
		담장	세면벽돌	1	식						
3	용산동2가 5-2182	대문	세면벽돌	1	식	김성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45 2동 801호(용산동2가, 한신아파트)				
4	용산동2가 5-2178	데크	목재	0.5	m ²	조영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29				
		계단	목재	4	m ²						
5	용산동2가 5-2180	계단	세면벽돌	3.4	m ²	최지안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25동 1301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주택 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	
6	용산동2가 5-2179	데크	철제	1.6	m ²	박종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758				

2021 - 8

(2020

)

가

1. 건설부고시 제739호(1963.12.2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412호(2019.12.12.)로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71호(2020.5.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성북구고시 제2020-148호(2020.8.1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성북구 성북동 산25-1번지 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정법사지구, 성북지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4-26 외 6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2020 북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정법사지구, 성북지구)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1,792㎡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0. 5.14. ~ 2022. 5.13.

사.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및 물건조서(변경없음) : 따로붙임

아. 변경사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최초) 관련 오기 정정

－ 당초 : 건설부고시 제465호(1967.12.18.), 변경 : 건설부고시 제739호(1963.12.21.)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02-2241-3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2020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번(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산24-26	임야	1,341	1,34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주식회사				
2	성북동 산24-27	임야	188	18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주식회사				
3	성북동 226-323	대지	51	5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강**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	주식회사****	근저당권	
4	성북동 226-324	임야	3	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강**	서울시 중구 을지로 **	주식회사****	근저당권	
5	성북동 351-7	대지	54	54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강**		중부*****	압류(요금미납)	
							서울시 중구 을지로 **	주식회사****	근저당권	
6	성북동 351-8	대지	148	148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김**				
7	성북동 226-325	임야	7	7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 *** ** *	박**				
					부산시 서구 시약로 ***, ****호	박**				

()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2020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산24-26 성북동 산24-27	가구 박물관	판넬(1층)		305	수장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 **(주)				신발생무허가
			판넬(2층)		305	수장고						
			컨테이너		36	창고2개						
			아스콘		795	진입, 주차장						
			시멘블록		21	경비실						
			목재		56	휴게실						
			석재		13	보행용비단						
			목재/기와		3	안내현판						
			대문(철재)		4m	대문						
			대문(목재)		8m	대문						
			웬스(목재)		35m	웬스						
			화강석/기와		38m	경계담장						
2	성북동 226-126	주택	세멘블록 (1층)	70.12	51	차고, 확인필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강**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	주식회사****	근저당권	허가 건물
			컨테이너 (2층)	-	40	주거						신발생무허가
			컨테이너 (3층)	-	40	주거						신발생무허가

()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2020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층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 종류 및 내용	
3	성북동 351-2	주택	세멘블록 (1층)	62.88	12	주거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	강**	서울시 중구 을지로 **	주식회사 ****	근저당권	허가 건물
			세멘블록 (2층)	-	12	주거						신발생무허가
			가건물 (1층)	-	29	주거						신발생무허가
			가건물 (2층)	-	30	주거						신발생무허가
4	성북동 351-3	주택	세멘블록 (1층)	44.07	86	주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	김**				허가 건물 신발생무허가

2021 - 10

()

서울특별시고시 제1974-23호(1974.3.2.)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97호(2020.6.25.)로 실시계획작성 고시한 【정릉동 365-4 ~ 정릉동 404-3간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정릉동 365-4 ~ 404-3간 도시계획사업	정릉동 365-4 ~ 정릉동 404-3	· B = 10m · L = 380m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4-23호 (1974.3.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 따로붙임

※ 변경사유 : 토지조서 오기정정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해당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 2241-3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정릉동365-4~404-3간 도시계획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대지권 비율	소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정릉동 372-54	도로	21	21		김*웅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동, **아파트)				정릉동372-6에 서 분할
2	성북구 정릉동 350-23	도로	522	522		김*웅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동, **아파트)				정릉동350-3에 서 분할
3	성북구 정릉동 393-26	도로	19	19		재단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동 산 *				정릉동393-14에 서 분할
4	성북구 정릉동 404-51	대	1	1		박*용	경기도 ***시 **읍 **로 ***번길 **, ***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구 **로 **(**동*가)	근저당권	
5	성북구 정릉동 404-30	대	1	1		정*섭	서울특별시 **구 **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구 ***로*가 *-*	근저당권	
6	성북구 정릉동 400-22	대	3	3		강*수	서울특별시 **구 **동 ***-**				
7	성북구 정릉동 394-19	도로	1	1		재단법인 **학원	서울특별시 **구 **동 산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대지권 비율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성북구 정릉동 393-24	대	16	16	1/2	김*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1/2	임*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9	성북구 정릉동 404-50	대	4	4		박*용	경기도 ***시 **읍 **로 ***번길 **, ***동 ***호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구 **로 **(**동*가)	근저당권	
10	성북구 정릉동 393-23	대	4	4		김*선	서울특별시 **구 ****길 ** (**동)	**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11	성북구 정릉동 400-19	도로	16	16		강*숙	서울특별시 **구 **동 ***-**				
12	성북구 정릉동 350-11	도로	13	13		이*오	서울특별시 ***구 **동 ***-*				
13	성북구 정릉동 393-27	대	37	37		조*휘	서울특별시 **구 **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구 **로*가 ***	근저당권	정릉동393-21에 서 분할
								이*식	서울특별시 **구 ***로*가길 **, ***호	가압류	
14	성북구 정릉동 393-13	도로	476	476		김*웅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동, **아파트)				
15	성북구 정릉동 350-20	대	39	39	1/2	박*규	서울특별시 **구 ****길 ***-**(**동)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구 **로*가 ***	근저당권	
					1/2	조*순	서울특별시 **구 ****길 ***-**(**동)				

2021 - 7

() ()

1. 서울시고시 제89호(1972.07.0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9-1131호(2019.08.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도봉구 고시 제2019-127호(2019.09.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도봉구 고시 제 2020-104호(2020. 07. 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경미한사항) 고시, 도봉구 공고 제2020-1560호(2020. 12. 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한 「쌍문동 276-3 ~ 363-1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작성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쌍문동 276-3 ~ 363-1(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쌍문동 276-3 ~ 363-1 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및 내용(경미한 사항의 변경)

- 토지분할에 따른 보상토지 지번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 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바. 지장물건의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도봉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사업의 명칭: 쌍문동 276-3 ~ 363-1 간 도로개설공사

변 경 전										변 경 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쌍문동 276-1	전	151	151		도봉구				변동없음										
2	쌍문동 273-12	도	420	420	홍0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00길 00, 000동 0000호(등촌동, 000단지 00아파트)	6/14				쌍문동 273-12	도	420	420		도봉구				
					안0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00길 00, 000동 0000호(등촌동, 000단지 00아파트)	4/14													
					안0익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00길 00, 000동 0000호(등촌동, 000단지 00아파트)	4/14													
3	쌍문동 277-2	도	1,469	1,469		도봉구				변동없음										
4	쌍문동 281-45	대	3	3	김0손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000				변동없음										
5	쌍문동 306-24	답	50	50		도봉구				변동없음										
6	쌍문동 304-2	도	178	23		도봉구				변동없음										
7	쌍문동 303	도	162	130		도봉구				변동없음										
8	쌍문동 303-1	차	36	25	김0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000	1/2				쌍문동 303-2	차	25	25	김0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000	1/2			쌍문동 303-1 에서 분할
					정0덕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000	1/2								정0덕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000	1/2			

2021 - 5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653-27번지 금산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금천구청장

1. 변경결정 취지

- 금산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기 결정된 건축범위 중 건폐율 확대 변경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초등학교	금천구 시흥동 653-27번지	6,400	-	6,400	1994.9.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8호)	-

나. 건축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층)		건축제한완화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 이하	30% 이하	100% 이하	-	5층이하	-	-	자연녹지지역

다. 변경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학교	- 건축범위(건폐율) • 20% → 30%	- 해당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학교부지의 추가 확장은 불가능하며, 기존 건축물의 상부에 증축은 구조적 불안정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 운동장 일부를 활용한 체육관 증축이 불가피하여, 증축계획에서 건축범위를 초과한 건폐율의 완화를 통해 체육관을 설치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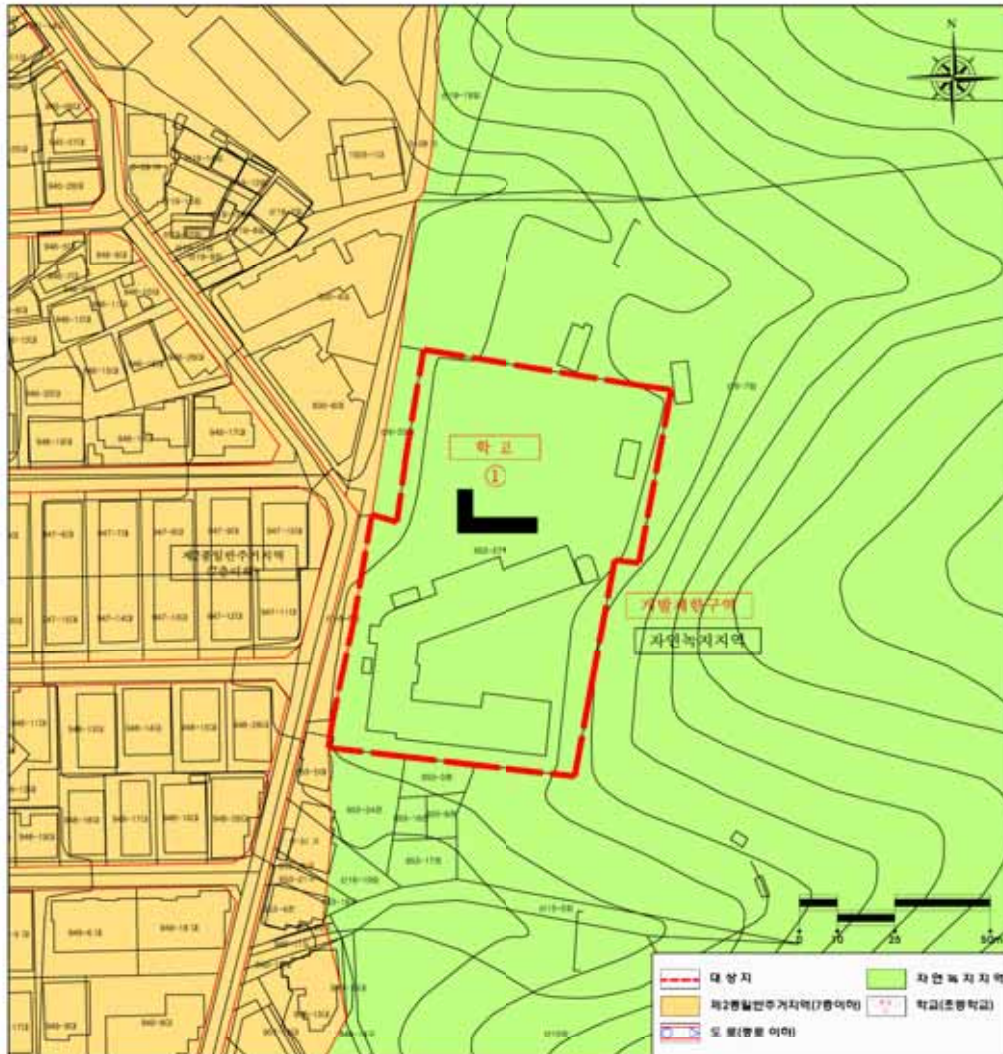
3. 관계도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1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금산초등학교)



금천구 시흥동 653-27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변경안)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량	면적(㎡) 변경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①	학교	초등학교	금천구 시흥동 653-27번지	6,400	-	사고 제 1994-298호 (1994.9.13)
- 건축법위 결정(변경)조서							
건축률(%)		용적률(%)		높이		건축제한사항	비고
기량	변경	기량	변경	기량	변경		
20	30	100	-	5층이하	-	-	자연녹지지역

구분	입안 및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직위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직명	시설세기	시설주사	시설사무관
성명	서영환	홍영수	이원희
확인인			

2021 - 11

()

가

동작구고시 제2020-199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드림스퀘어 진입도로 연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2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드림스퀘어 진입도로 연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 6m, 연장 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 (당초) 김현숙 외 105명 대표자 김현숙(서울. 동작구 노들로2길 9-3외 10필지)

－ (변경) 김현숙(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17, 806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변경

－ (당초) 인가고시일로부터 1개월

－ (변경) 인가고시일 ~ 2021. 2.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잔여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성명	주소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3-27	대	36	36	0	김현숙	용산구 이태원로 217,806 호			
합계	1필지		36	36	0					

사.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관리청(동작구)에 무상귀속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 73

(-) ()

가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392호(1998.1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21호(2016.7.28.)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사업의 준공 예정일의 변경사항이 있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중량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산5-6 외 14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봉화산근린공원 조성(중화동)

다. 사업의 면적 : 24,166m²(변경없음)

라. 사업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12.31.까지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중랑구청장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사.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시장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아래 토지조서 참조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계			24,166	24,166							
1	중랑구 중화동 산5-6	임야	1,372	1,372	제*영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	단독				
2	중랑구 중화동 산5-5	임야	1,574	1,574	이*영	서울 중랑구 망우로48길 *****	단독				
3	중랑구 중화동 산5-1	임야	974	974	양*	경북 봉화군 명호면 갈골길 ***	1/2				
					양*	경기 군포시 당동로32번길 *****	1/2				
4	중랑구 중화동 산5-23	임야	993	993	제*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	1/3				
					이*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1/3				
					이*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1/3				
5	중랑구 중화동 산9-33	임야	6,867	6,867	강*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로 *****	5/11				
		임야	6,867	6,867	최*정	경기 가평군 설악면 양방가루재길 ***	2/11				
					강*정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클락스빌 헬름즈맨웨이 *****	2/11				
					강*애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브리티네인 *****	2/11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6	중랑구 중화동 산9-31	임야	473	473	강*원	서울 동작구 만양로 *****	단독				
7	중랑구 중화동 산11-1	임야	251	251	고*규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107길 *****	4/12				
					조*종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	2/12				
					박*길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	6/12				
8	중랑구 중화동 산12-2	임야	723	723	최*수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	6/40				
					황*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	6/40				
					최*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	6/40				
					최*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44번길 *****	6/40				
					최*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	6/40				
					최*수	서울 용산구 이촌로 *****	5/40				
		임야	723	723	최*수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	5/40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9	중랑구 중화동 21-1	전	633	633	최*수	서울 동일로136나길 *****	단독				
10	중랑구 중화동 산8-1	임야	3,334	3,334	최*호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	4/10				
					최*형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	3/10				
					최*원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	3/10				
11	중랑구 중화동 산5-17	임야	1,460	1,460	박*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라하브라시 웨스트세인트 앤드류스 에빈유 ***	4/16				
					박*형	강원 강릉시 성덕로 *****	3/16				
					박*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3/16				
					박*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3/16				
					박*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	3/16				
12	중랑구 중화동 산5-2	임야	1,983	1,983	서*욱	미합중국 뉴욕주 *****엘름허스트 *****	단독	박*숙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	소유권이전청구권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13	중랑구 중화동 산5-9	임야	1,573	1,573	한*환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	단독				
14	중랑구 중화동 산5-11	임야	999	999	박*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라하브라시 웨스트세인트 앤드류스 에빈유 ***	4/16				
					박*형	강원 강릉시 성덕로 *****	3/16				
					박*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3/16				
					박*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3/16				
					박*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	3/16				
15	중랑구 중화동 산5-10	임야	957	957	김*덕	서울 강남구 논현로145길 *****	1/2				
					정*진	서울 도봉구 노해로66길 *****	1/2				

2021 - 82

()

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3호(1998.12.31.)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3.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6-39 ~ 103-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중화동 286-39 ~ 103-2간 도로확장사업

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 B=3→6m, L=8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3)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286-39~103-2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03-2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조	16.0	문정일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26(중화동)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중화역지점)	근저당권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3.0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13.0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13.0						
			건물(4층)	시멘트벽돌조	13.0						
			담장		5.0						
2	중화동	103-4	건물(지층)	연와조	30.0	박순남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31, 102호(북가좌동)				
						김수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305동 2003호(판교동, 판교원마을)				
			건물(1층)	연와조	29.0	김윤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53, 1303동 803호(청계동, 롯데캐슬알바트로스)				
			건물(2층)	연와조	30.0	권양숙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571길 20, 104동 804호(세곡동, 강남엘에이치1단지)				
			건물(옥탑)		7.0	공동소유					
3	중화동	103-5	건물(1층)	시멘트블록조	40.0	유성순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03-5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중화동 지점)	근저당권	
			가건물		3.0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286-39~103-2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중화동 103-2	대야창호	창호업	권기섭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26, 1층	
2	중화동 102-2	성림	봉제업	김상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26, 지하1층	
3	중화동 103-5	제영슈퍼	판매업	유성순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9길 5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286-39~103-2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03-2	대지	235.0	41.0	문정일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6길 26 (중화동)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중화역지점)	근저당권	
2	중화동	103-3	대지	155.0	35.0	심정임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95-2 우성타운 7-203				
3	중화동	103-4	대지	129.0	50.0	박순남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31, 102호(북가좌동)				
						김윤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53, 1303동 803호(청계동,롯데캐슬알바트로스)				
						김수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305동 2003호(판교동,판교원마을)				
						권양숙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571길 20, 104동 804호(세곡동,강남엘에이치1단지)				
								신미애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853	근저당권	
4	중화동	103-5	대지	60.0	31.0	유성순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03-5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중화동 지점)	근저당권	

2021 - 83

() () 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7호(1974.0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131호(2019.1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화동159-2~158-8간』, 「중화동 157-1~154-57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변경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중 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 업 규 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자	사 업 시행자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9-2~158-8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화동159-2~158-8간 도로사업	면적 1,176m ²	인가일로부터 2020.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74.04.20.)	•성명 : 중랑구청장 •주소 : 서울시중랑구 봉화로179(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21.12.31.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당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57-1~154-57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화동157-1~154-57간 도로사업	면적 1,176m ²	인가일로부터 2020.12.31. 까지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74.04.20.)	•성명 : 중랑구청장 •주소 : 서울시중랑구 봉화로179(신내동)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인가일로부터 2021.12.31. 까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다.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라.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전화 : 2094 -2692~7)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중화동 159-2~158-8간 도로사업, 중화동 157-1~154-57간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중화동	159-2	대	43.0	43.0	여형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09번길 20-36(평내동)				
2	중화동	157-16	대	96.0	96.0	최광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145-1	성북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압류	
3	중화동	158-5	전	519.0	519.0	곽준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56,3동 405호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박규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0-24, 102호(응암동)				
						여인환	미합중국 뉴저지주 부리스 오드리코트 5				
4	중화동	158-8	전	241.0	241.0	여정훈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51, 510동 104호(인창동, 신일아파트)				
						박규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0-24, 102호(응암동)				
						여인환	미합중국 뉴저지주 부리스 오드리코트 5				
5	중화동	154-30	대	66.0	65.0	여동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3동 1001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6	중화동	154-85	임야	212.0	212.0	현연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10	중랑구청	봉화산로 179	압류	

2021 - 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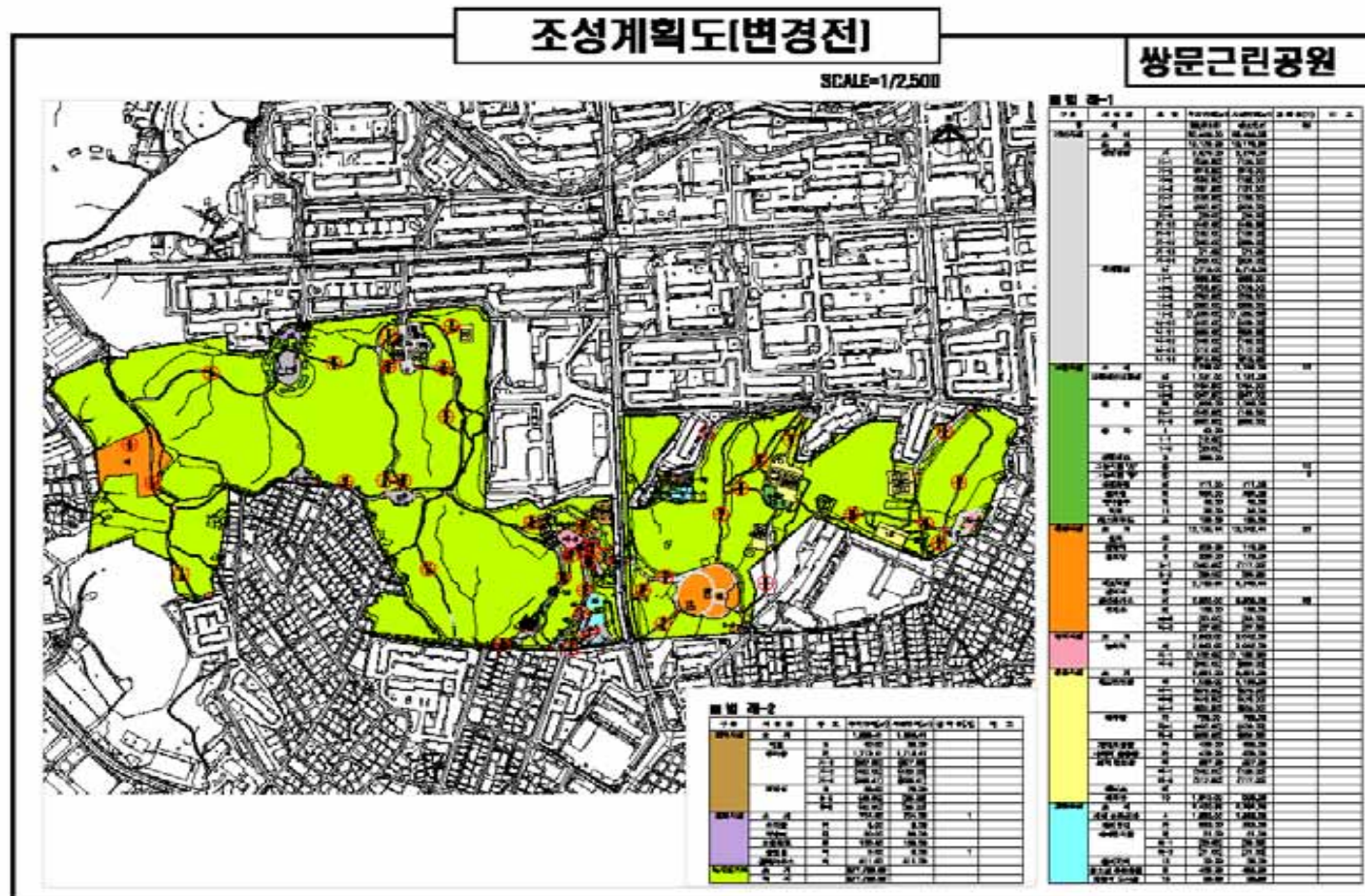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2017-22호(2017.01.2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봉구 돌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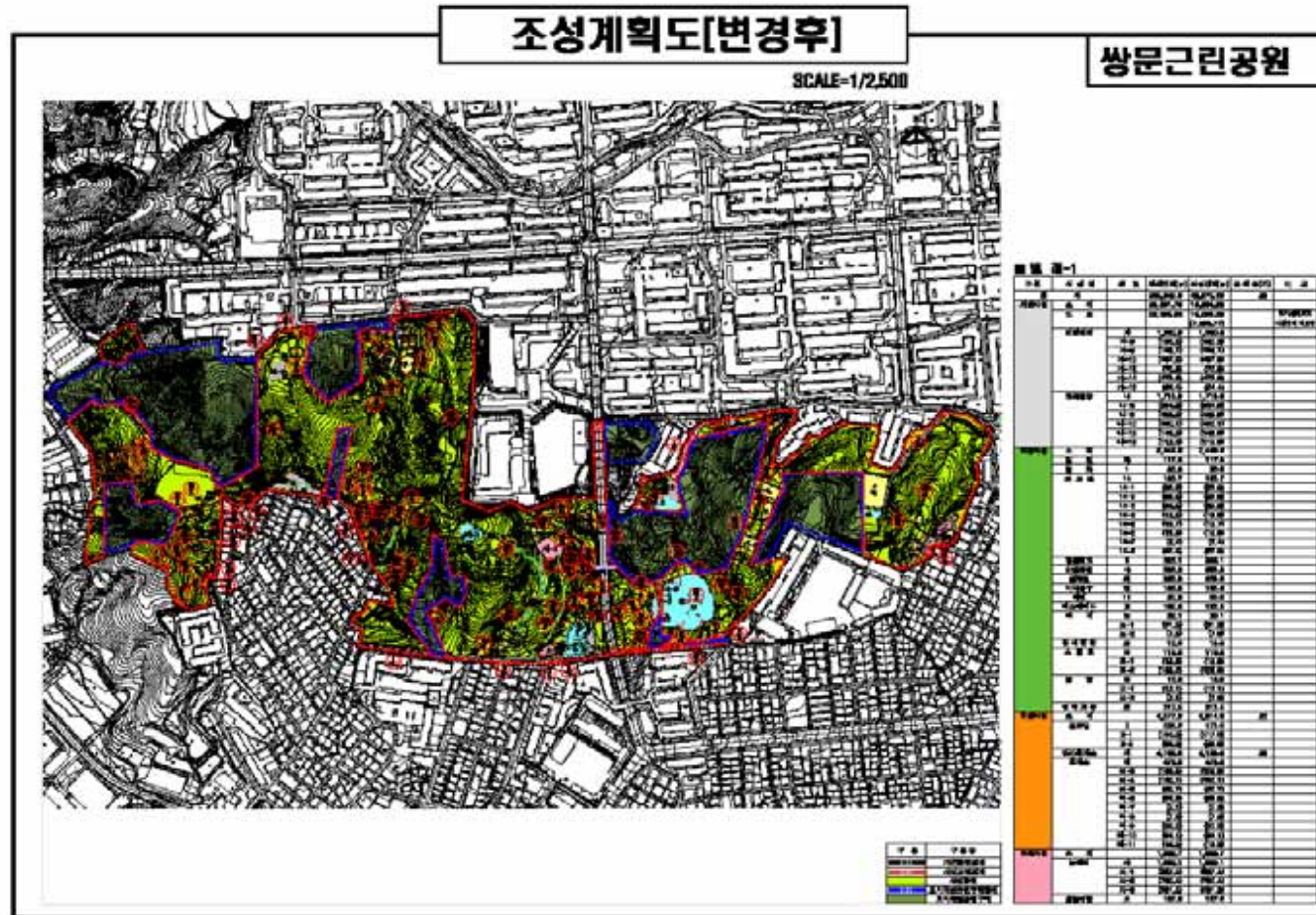
도 봉 구 청 장

1. 공 원 명 : 돌리(쌍문)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240-5번지 일대 등
3. 주요시설 변경내용
 - 기반시설 : 20,455㎡ → 18,304.93㎡ (감 2,150.07㎡)
 - 조경시설 : 3,742㎡ → 2,449.8㎡ (감 1,292.2㎡)
 - 휴양시설 : 13,195.44㎡ → 4,814.9㎡ (감 8,227.54㎡)
 - 유희시설 : 2,042㎡ → 1,866.7㎡ (감 175.3㎡)
 - 운동시설 : 5,521㎡ → 5,802.9㎡ (증 281.9㎡)
 - 교양시설 : 2,262.56㎡ → 7,444.06㎡ (증 5,181.5㎡)
 - 편익시설 : 1,803.41㎡ → 1,782.3㎡ (감 21.11㎡)
 - 관리시설 : 704㎡ → 204.6㎡ (감 499.4㎡)
 - 녹지 및 기타 : 277,739.59㎡ → 210,123.94㎡ (감 67,615.65㎡)
4.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02-2091-3754/도봉구 마들로 656)
6.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계획도(변경전)



□ 조성계획도(변경후)



()

1. 총괄표(위치:도봉구 쌍문동 산 240-5번지 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계		328,018.00	49,572.41	15	3,608.15	7,333.13	39	260,649.9	42,670.19	9	2,991.53	6,346.51	23	감) 6,902.22㎡
기반시설	소계	20,455.00	20,455.00					25,661.70	18,304.93					감) 2,150.07㎡
	도로	12,170.00	12,170.00					22,565.00	15,208.23 (7,356.77)					(도시계획도로)
	광장	8,285.00	8,285.00					3,096.7	3,096.7					
조경시설		3,742.00	3,742.00	2	23.36	23.36	15	2,449.8	2,449.8					감) 1,292.2㎡
휴양시설		13,195.44	13,042.44	3	283.00	353.00	23	4,877.9	4,814.9	2	173.0	173.0	23	감) 8,227.54㎡
유희시설		2,042.00	2,042.00					1,866.7	1,866.7					감) 175.3㎡
운동시설		5,851.00	5,521.00	2	1,110.00	1,110.00		6,040.9	5,802.9	2	753.2	753.2		증) 281.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교양시설	2,450.56	2,262.56	4	1,730.33	5,385.31		7,632.06	7,444.06	4	2,030.33	5,385.31		증) 5,181.5㎡
편익시설	1,838.41	1,803.41	3	106.00	106.00		1,792.3	1,782.3	1	35.0	35.0		감) 21.11㎡
관리시설	704.00	704.00	1	355.46	355.46	1	204.6	204.6					감) 499.4㎡
녹지 및 기타	277,739.59						210,123.94						감) 67,615.65 ㎡
공원시설율(법정40%)	49,572.41m2 / 328,018m2 x 100 = 15.11%						42,670.19m2 / 260,649.9m2 x 100 = 16.37%						
공원건폐율(법정10%)	3,608.15m2 / 328,018m2 x 100 = 1.10%						2,991.53m2 / 260,649.9m2 x 100 = 1.15%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 (법정 20%)	7,399.56m2 / 49,572.41m2 x 100 = 14.93%						7,681.46m2 / 42,670.19m2 x 100 = 18.00%						

2.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328,018.00	49,572.41		15	3,608.15	7,333.13	39			260,649.9	42,670.19					23	감) 6,902.22㎡	
기 본 시 설	소 계			20,455.00	20,455.00								25,661.70	18,304.93						감) 2,150.07㎡	
	도 로		39개 노선	12,170.00	12,170.00								22,565.00	15,208.23 (7,356.77)						증) 3,038.23㎡	
	광 장	소계			8,285.00	8,285.00								3,096.7	3,096.7						감) 5,188.3㎡
		가	12개소	2,570.00	2,570.00							6개소	1,380.8	1,380.8							감) 1,189.2㎡
		가-1	방학 산88-5 외1	(155.00)	(155.00)								-	-							폐지 (도자구역)
		가-2	방학 산90-31외1	(216.00)	(216.00)																폐지
		가-3	쌍문 산248-3	(132.00)	(132.00)																폐지
		가-6	쌍문 267답	(191.00)	(191.00)																폐지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7	쌍문 산83-4 외2	(156.00)	(156.00)															폐지
		가-8	쌍문 산83-4 외2	(300.00)	(300.00)							쌍문동 산283-5	(180.2)	(180.2)						감) 119.8㎡
		가-9	쌍문 산83-2	(56.00)	(56.00)							쌍문동 산83-30	(128.1)	(128.1)						증) 72.1㎡
		가-10	쌍문 산83-2	(448.00)	(448.00)							쌍문동 산83-30	(467.6)	(467.6)						증) 19.6㎡
		가-11	쌍문 산83-2	(180.00)	(180.00)															폐지
		가-12	쌍문 산80	(360.00)	(360.00)															폐지
		가-13	쌍문 산276	(71.00)	(71.00)							쌍문동 산79	(70.6)	(70.6)						감) 0.4㎡
		가-14	쌍문 산240	(305.00)	(305.00)							쌍문동 산240-5	(479.9)	(479.9)						증) 174.9㎡
												가-15	쌍문동 산249-1	(54.4)	(54.4)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본 시 설	광 장	휴게 광장	나	10개소	5,715.00	5,715.00								1,715.9	1,715.9						감) 3,999.1㎡
			나-1	방학 산90-14	(563.00)	(563.00)															폐지
			나-2	방학 산90-31 외1	(708.00)	(708.00)															폐지
			나-3	쌍문 산249 외2	(760.00)	(760.00)															폐지
			나-8	방학 산90-39	(380.00)	(380.00)							방학동 산90-14	(604.9)	(604.9)						증) 224.9㎡
			나-9	방학 산90-35	(1,585.00)	(1,585.00)							방학동 산90-14	(452.9)	(452.9)						감) 1,132.1㎡
			나-10	쌍문 산80	(450.00)	(450.00)							쌍문동 산80-1	(400.1)	(400.1)						감) 49.9㎡
			나-11	쌍문 산241	(699.00)	(699.00)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1 2	쌍문 산241	(146.00)	(146.00)							쌍문동 산79	(146.0)	(146.0)							
			나-1 3	쌍문 산241-1	(112.00)	(112.00)							쌍문동 산79	(112.0)	(112.0)							
			나-1 4	쌍문 산240	(312.00)	(312.00)																폐지
조경 시설	소 계				3,742.00	3,742.00		2	23.36	23.36	15			2,449.8	2,449.8							감) 1,359.7㎡
	다목적 잔디광장	다	2개소	1,131.00	1,131.00																	폐지
		다-2	쌍문 산83-3 외1	(784.00)	(784.00)																	
		다-3	쌍문 산80	(347.00)	(347.00)																	
	정원	라	2개소	1,066.00	1,066.00								방학동 산90-14	117.6	117.6							신규
라-1		방학 산90-35 외1	(146.00)	(146.00)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2	방학 산90-35 외1	(920.00)	(920.00)															
조경 시설	정자	1	2개소	42.00	42.00							쌍문동 산83-1	30.0	30.0	목구 조					감) 12.0㎡
		1-1	방학 산90-14	(12.00)	(12.00)	목구 조 (초정)													폐지	
		1-2	쌍문 산83-1	(30.00)	(30.00)	목구 조													부호변경 (1-2→1)	
	파고라										14	9개소	193.7	193.7						신규
											14-1	방학동 산90-14	(25.0)	(25.0)						
											14-2	방학동 산90-14	(56.8)	(56.8)						
											14-3	쌍문동 산282-3	(30.3)	(30.3)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14-4	방학동 산90-14	(15.8)	(15.8)						
											14-5	쌍문동 산80-1	(19.7)	(19.7)						
											14-6	쌍문동 산82	(19.9)	(19.9)						
											14-7	쌍문동 산239	(5.4)	(5.4)						
											14-8	쌍문동 산83-1	(20.8)	(20.8)						
	관찰데크	2	쌍문 산83-1	266.00	266.00	목재						쌍문동 산83-1	326.1	326.1						증) 60.1㎡
	그늘시령 "A"	①	10개소			목재			10											폐지
그늘시령 "B"	②	5개소			목재			5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야생화원	마	쌍문 산241	711.00	711.00							쌍문동 산79	595.3	595.3						감) 115.7㎡
조경 시설	실개천	퍼	쌍문 산241	262.00	262.00							쌍문동 산79	268.9	268.9						증) 6.9㎡
	바닥분수	허	쌍문 답267	40.00	40.00							방학동 산90-14	198.8	198.8						증) 158.8㎡
	벽천	11	쌍문 산241	25.00	25.00	철근콘크리트조						쌍문동 산79	25.0	25.0						
	케스케이드	고	쌍문 산240-5	199.00	199.00	철근콘크리트조						쌍문동 산240-5	192.5	192.5						감) 6.5㎡
	화계											노	2개소	39.1	39.1					
											노-1	쌍문동 산264	(31.3)	(31.3)						
											노-2	쌍문동 산249-1	(7.8)	(7.8)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참여정원										도	쌍문동 산264	15.6	15.6						신규
	스탠드										로	2개소	116.8	116.8						신규
											로-1	쌍문동 산264	(13.6)	(13.6)						
											로-2	쌍문동 산79	(103.2)	(103.2)						
	돌담										모	2개소	16.9	16.9						신규
											모-1	쌍문동 산249-1	(13.1)	(13.1)						
											모-2	쌍문동 산264	(3.8)	(3.8)						
	생태계류										보	쌍문동 산249-1	313.5	313.5						신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 계			13,195.44	13,042.44		3	283.00	353.00	23			4,877.9	4,814.9		2	173.0	173.0	23	감) 8,227.54㎡
	쉼터	③	쌍문 산82			목재														폐지
	전망대	2	쌍문 산249	200.00	110.00	목구 조		110.00	110.00											시설변경 (휴양→편익)
	경로당	3	2개소	236.00	173.00			173.00	173.00			2개소	236.00	173.00			173.00	173.00		
		3-1	방학 산90-31	(180.00)	(117.00)	조적 조		(117.00)	(117.00)			방학동 산90-14	(180.00)	(117.00)	조적 조		(117.00)	(117.00)		
		3-2	쌍문 산238-7	(56.00)	(56.00)	조적 조		(56.00)	(56.00)			쌍문동 산283-5	(56.00)	(56.00)	조적 조		(56.00)	(56.00)		
	피크닉장	바	쌍문 산82	5,749.44	5,749.44															폐지
	장의자	④	전지역			목재														폐지
임간휴게소	저	쌍문 산283-10,11	6,850.00	6,850.00					정자2 의자21		쌍문동 산283-10,11	4,163.6	4,163.6					23	감) 2,686.4㎡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소	터	2개소	160.00	160.00							9개소	478.3	478.3						증) 318.3㎡	
	터-1	쌍문 산79-6																	폐지	
	터-2	쌍문 산79	(93.00)	(93.00)															폐지	
	터-3	쌍문 산283-13	(67.00)	(67.00)							쌍문동 산283-13	(103.8)	(103.8)						증) 36.8㎡	
										터-4	쌍문동 산283-13	(120.1)	(120.1)						신규	
										터-5	쌍문동 267답	(50.7)	(50.7)						신규	
										터-6	쌍문동 산264	(99.9)	(99.9)						신규	
										터-7	쌍문동 산249-1	(5.3)	(5.3)						신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휴게소										터-8	쌍문동 산264	(7.8)	(7.8)						신규
											터-9	쌍문동 산264	(20.3)	(20.3)						신규
											터-10	방학동 산90-14	(54.1)	(54.1)						신규
											터-11	쌍문동 산264	(16.3)	(16.3)						신규
유희 시설	소 계			2,042.00	2,042.00								1,866.7	1,866.7						감) 175.3㎡
	놀이터	사	2개소	2,042.00	2,042.00							3개소	1,669.1	1,669.1						감) 372.9㎡
		시-1	쌍문 산152-2	(1,162.00)	(1,162.00)							쌍문동 152-2	(627.4)	(627.4)						감) 534.6㎡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사-2	쌍문 산79-6외1	(880.00)	(880.00)							쌍문동 산79	(780.4)	(780.4)						감) 99.6㎡
											사-3	쌍문동 산83-1	(291.3)	(291.3)						신규
	물놀이장										소	쌍문동 267답	197.6	197.6						신규
운동 시설	소 계			5,851.00	5,521.00		2	1,110.00	1,110.00				6,040.9	5,802.9		2	753.2	753.2		증) 281.9㎡
	배드민턴장	아	3개소(11면)	1,156.00	1,156.00							4개소	1,778.2	1,778.2						증) 622.2㎡
		아-1	방학 산90-31 외1	(373.00)	(373.00)							방학동 산90-14	(487.8)	(487.8)						증) 114.8㎡
		아-2	쌍문 산79-6 외1																	폐지
		아-3	쌍문 산83-3	(478.00)	(478.00)							쌍문동 산82-25	(500.1)	(500.1)						증) 22.1㎡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4	쌍문 산83-2	(305.00)	(305.00)							쌍문동 산82-25	(519.3)	(519.3)						증) 214.3㎡
										아-5	쌍문동 산82-25	(271.0)	(271.0)						신규	
운동 시설	배구장	자	2개소	759.00	769.00							방학동 산90-14	437.4	437.4						감) 331.6㎡
		자-1	방학 산90-31	(400.00)	(400.00)														부호변경 (자-1→자)	
		자-2	쌍문 산83-2	(359.00)	(369.00)														폐지	
	게이트볼장	차	쌍문 산83-2	450.00	450.00														폐지	
	다목적운동장	카	쌍문 신79-6 외1	439.00	439.00														폐지	
	체력단련장	타		257.00	237.00		1	120.00	120.00			7개소	1,047.9	1,027.9		1	120.0	120.0		증) 790.9㎡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타-1	방학 산90-31	(140.00)	(120.00)	철골 조	(1)	(120.00)	(120.00)			방학동 산90-14	(140.0)	(120.0)	철골 조	(1)	(120.0)	(120.0)		
		타-2	쌍문 산79-6 외2	(117.00)	(117.00)							쌍문동 산79	(117.0)	(117.0)						
											타-3	쌍문동 152-2	(307.0)	(307.0)						신규
											타-4	쌍문동 산83-1	(74.5)	(74.5)						신규
											타-5	쌍문동 산79	(37.0)	(37.0)						신규
											타-6	방학동 산90-14	(38.0)	(38.0)						신규
											타-7	쌍문동 산79	(334.4)	(334.4)						신규
	테니스장	버	쌍문 산83-1								쌍문동 산83-1	1,720.3	1,720.3							
	체육관	10	쌍문 산83-1, 83-18	1,310.00	990.00	철골 조	1	990.00	990.00			쌍문동 산83-18	851.2	633.2	철골 조	1	633.2	633.2		감) 356.8㎡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농구장										15	쌍문동 산80-1	205.9	205.9						신규
교양 시설	소 계			2,450.56	2,262.56		4	1,730.33	5,385.31				7,632.06	7,444.06		4	2,030.33	5,385.31		증) 5,181.5㎡
	지역문화센터	4	쌍문 산240-5	1,583.000	1,395.00	철근 콘크리트 조	2	1,547.00	4,160.00			쌍문동 산240-5	1,583.0	1,395.0	철근 콘크리트 조	2	1,547.0	4,160.0		
	야외무대	파	쌍문 산240	293.00	293.00							쌍문동 산79	40.0	40.0						감) 253.0㎡
	야외전시장	하	쌍문 267 답	61.00	61.00															폐지
		하-1	쌍문 267 답	(30.00)	(30.00)															
		하-2	쌍문 267 답	(31.00)	(31.00)															
	전시가벽	12	쌍문 267 답	30.00	30.00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청소년 문화회관	9	쌍문 산80	455.00	455.00	철근 콘크리트 조	1	454.77	1,196.75				455.00	455.00	철근 콘크리트 조	1	454.77	1,196.75		
	이동식 도서관	13	쌍문 산82	28.56	28.56	경량 철 구조	1	28.56	28.56				28.56	28.56	경량 철 구조	1	28.56	28.56		
	유아숲										오	쌍문동 산82	4,742.9	4,742.9						신규
	하늘유아숲										조	쌍문동 산79	576.9	576.9						신규
	자연학습장										초	쌍문동 산83-1	205.7	205.7						신규
편익 시설	소 계			1,838.41	1,803.41		3	106.00	106.00				1,792.3	1,782.3		1	35.0	35.0		감) 21.11㎡
	매점	5	방학 산90-31	40.00	20.00	조적 조	1	36.00	36.00											폐지
	주차장	거	3개소	1,713.41	1,713.41							3개소	1,346.4	1,346.4						감) 367.01㎡
		거-2	방학 산90-14	(327.00)	(327.00)															폐지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거-3	쌍문 산80	(450.00)	(450.00)							쌍문동 산80-1	(156.8)	(156.8)						감) 293.2㎡
편익 시설	주차장	거-4	쌍문 산79	(936.41)	(936.41)							쌍문동 산79	(1,050.3)	(1,050.3)						증) 113.89㎡
											거-5	쌍문동 산282-3	(139.3)	(139.3)						신규
	화장실	6	2개소	85.00	70.00		2	70.00	70.00			4개소	177.7	167.7		1	35.0	35.0		증) 97.7㎡
		6-1											-	-						폐지 (도자구역)
		6-2	쌍문 산83-2	(45.00)	(35.00)	조적 조	(1)	(35.00)	(35.00)			쌍문동 산83-1	(45.00)	(35.00)	조적 조	(1)	(35.00)	(35.00)		
		6-3	쌍문 산152-2	(40.00)	(35.00)		(1)	(35.00)	(35.00)											폐지
												6-4	쌍문동 산82	(24.0)	(24.0)					신규
												6-5	쌍문동 산79	(19.8)	(19.8)					신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6-6	방학동 산90-14	(88.9)	(88.9)						신규
	전망대										코	3개소	123.2	123.2						신규
											코-1	쌍문동 산249	(63.9)	(63.9)						
											코-2	쌍문동 산264	(24.9)	(24.9)						
											코-3	쌍문동 산249	(34.4)	(34.4)						
	데크로드										토	2개소	114.9	114.9						신규
											토-1	쌍문동 산264	(72.6)	(72.6)						
											토-2	방학동 산91	(42.3)	(42.3)						

구 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수변데크										포	쌍문동 산249-1	30.1	30.1						신규
관리 시설	소 계			704.00	704.00		1	355.46	355.46	1			204.6	204.6						감) 499.4㎡
	소각장	너	방학 산90-31	8.00	8.00															폐지
	약수터	더	방학 산90-31	20.00	20.00							방학동 산90-14	28.5	28.5						증) 8.5㎡
	보행육교	러	쌍문 산240-외2	160.00	160.00							쌍문동 산240-1도	160.0	160.0						
	출입문	머	방학 산90-14	5.00	5.00					1										폐지
	관리사무소	어	방학 산90-14 외1	511.00	511.00	SRC	1	355.46	355.46											폐지
	관리실										16	방학동 산90-14	16.1	16.1						신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 계			277,739.59									210,123.94							감) 67,615.65㎡
	녹지및기타			277,739.59									210,123.94							감) 67,615.65㎡

3. 도 로 조 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5,175.00	12,170.00				
변경					6,247.3 (730.0)	15,208.23 (7,356.77)				
신규	중로	소 계			(352.0)	(5,277.00)				
신규		2	1	15	(352.0)	(5,277.00)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당초	소로	소 계			458.00	2,787.00				
변경					429.8 (378.0)	2,094.00 (2,079.77)				
당초		3	1	6	134.0	958.00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청소년문화의집 (9)	
변경		3	1	4.0	146.9	899.5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휴게광장 (나-10)	
당초		3	2	6	254.0	1,528.00	진입로	진입광장 (가-11)	테니스장 (버)	
변경		3	2	6	236.9	1,112.50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체육관 (10)	
당초		3	4	1.5	14.0	21.00	진입로	산책로-44	지역문화 센터(4)	
폐지										
당초		3	5	4.5- 6.5	40.0	20.00	연결로	진입광장 (가-14)	캐스케이드 (고)	
변경		3	5	1.5	38.0	66.00	연결로	진입광장 (가-14)	산책로 44	
당초		3	6	1.5	8.0	12.00	진입로	721-2도	캐스케이드 (고)	
변경		3	6	1.5	8.0	16.00	연결로	소로 3-7	소로 3-5	
신규		3	7	5.5	(270.0)	(1,485.59)	연결로	중로2-1	도자구역	
신규		3	8	5.5	(108.0)	(594.18)	연결로	도자구역	도시계획도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소 계			4,717.00	9,383.00				
변경					5,817.5	13,114.23				
당초		-	1	1.5	433.0	649.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	휴게광장 (나-8)	
변경		-	1	2.5	200.0	460.00	산책로	도자구역	쌍문동 산280-1	
당초		-	2	1.5	351.0	527.00	연결로	산책로-1	산책로-39	
변경		-	2	2.0	7.0	20.00	연결로	산책로 1	도자구역	
당초		-	4	1.5	112.0	168.0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변경		-	4	2.0	69.0	212.00	산책로	쌍문동 산267-2	쌍문동 산267-1	
당초		-	5	1.5	37.0	55.00	연결로	진입광장 (가-14)	캐스케이드 (고)	
폐지										
당초		-	7	1.5	45.0	67.00	산책로	진입광장 (가-2)	휴게광장 (나-3)	
폐지										
당초		-	9	1.5	45.0	67.00	산책로	진입광장 (가-2)	산책로-7	
변경		-	9	2.0	58.0	115.00	연결로	산책로 66	산책로 10	
당초		-	10	1.5	31.0	46.00	산책로	배드민턴장 (아-1)	산책로-7	
변경		-	10	2.0	266.0	552.00	연결로	도자구역	산책로 39	
당초		-	12	1.5	57.0	85.00	연결로	배구장 (자-1)	산책로-17	
변경		-	12	2.0	73.0	145.00	연결로	산책로 14	산책로 15	
당초		-	14	1.5	66.0	99.00	연결로	산책로-17	산책로-17	
변경		-	14	2.0	273.0	549.00	산책로	배구장 (자-1)	산책로 39	
당초		-	15					산책로-17	게이트볼장(자)	
변경		-	15	2.0	138.0	277.00	연결로	산책로 66	산책로 14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	16	2.5	144.0	360.00	산책로	산책로-19	-	
변경		-	16	2.5	139.0	401.00	연결로	산책로 19	산책로 85	
당초		-	17	1.5	233.0	349.00	산책로	진입광장 (가-3)	진입광장 (가-2)	
변경		-	17	1.5~ 2.0	104.0	185.00	산책로	산책로39	도자구역	
당초		-	19	2.0	367.0	734.00	산책로	휴게광장 (나-12)	휴게광장 (나-3)	
변경		-	19	2.0	253.0	711.00	산책로	휴게광장 (나-12)	산책로 39	
당초		-	20	2-3	40.0	123.00	연결로	산책로-16	산책로-46	
변경		-	20	2.0	39.0	85.00	연결로	산책로 16	산책로 47	
당초		-	21	2.5	56.0	140.00	연결로	진입광장 (가-7)	산책로-24	
변경		-	21	2.5	56.0	155.00	연결로	산책로 23	산책로 89	
당초		-	23					휴게소 (더-6)	산책로-24	
변경		-	23	2.0	119.0	256.00	산책로	쌍문동 산227-10	산책로 24	
당초		-	24	2-5	311.0	997.00	산책로	산책로-25	보행육교 (리)	
변경		-	24	3.0	72.0	183.00	산책로	중로 2-1	산책로 89	
당초		-	25	1.5	181.0	271.00	산책로	진입광장 (가-8)	배드민턴장 (아-3)	
폐지		-								
당초		-	26	1.5	243.0	364.00	산책로	진입광장 (가-9)	산책로-24	
변경		-	26	2.0	38.0	93.00	산책로	진입광장 (가-9)	산책로 89	
당초		-	27	1.5	167.0	250.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0)	산책로-26	
변경		-	27	2.0	7.0	14.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0)	도자구역	
당초		-	33	1.5	58.0	87.00	연결로	산책로-26	다목적광장 (다-2)	
변경		-	33	1.5	56.0	85.00	산책로	배드민턴장 (아-3)	도자구역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	34	1.5	71.0	106.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0)	배드민턴장 (아-4) 진입로	
변경		-	34	2.0	93.0	186.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0)	배드민턴장 (아-4)	
당초		-	35	1.5	128.0	192.00	연결로	배드민턴장 (아-4)	산책로-36	
폐지										
당초		-	36	1.5	60.0	90.0	연결로	소로(소-2)	산책로-38	
폐지										
당초		-	38	1.5	270.0	405.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1)	산책로-41	
변경		-	38	2.5	181.1	431.2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97	
당초		-	39	2	610.0	1,220.00	산책로	휴게광장 (나-8)	휴게광장 (나-3)	
변경		-	39	2~ 2.5	191.0	423.00	산책로	산책로 69	산책로 17	
당초		-	40	4-5	120.0	459.00	산책로	휴게광장 (나-8)	휴게광장 (나-3)	
변경		-	40	2	154.0	278.00	산책로	휴게광장 (나-8)	산책로 39	
당초		-	41	2	17.0	34.00	산책로	산책로38	정자(1-2)	
폐지										
당초		-	42	2	30.0	60.00	진입로	진입광장 (가-13)	휴게광장 (나-11)	
변경		-	42	1.5	26.0	50.00	진입로	진입광장 (가-13)	체력단련장 (타-7)	
당초		-	43	2.5	10.0	25.00	연결로	산책로-19	놀이터 (사-2)	
변경		-	43	2.3	15.4	65.35	연결로	산책로-19	놀이터 (사-2)	
당초		-	44	4	193.0	772.00	산책로	산책로-46	진입광장 (가-6)	
변경		-	44	4	138.0	467.0	연결로	소로 3-7	산책로 45	
당초		-	45	2	35.0	70.00	연결로	산책로-44	휴게광장 (나-14)	
변경		-	45	2	67.0	130.00	연결로	산책로 46	산책로 8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	46	2	30.0	60.00	연결로	놀이터 (사-2)	휴게광장 (나-14)	
변경		-	46	2	51.0	98.00	연결로	놀이터 (사-2)	산책로 45	
당초		-	47	4	81.0	324.00	산책로	산책로-16	보행육교 (리)	
변경		-	47	2~4	73.0	271.00	산책로	산책로 16	쌍문동 산79공	
신규		-	48	1.5	3.8	5.98	진입로	쌍문동 산264	산책로 49	
신규		-	49	2.0	11.6	11.92	연결로	산책로 48	산책로 50	
신규		-	50	1.5	30.9	46.31	연결로	산책로 53	산책로 51	
신규		-	51	1.8	89.0	160.68	진입로	산책로 1	쌍문동 산267-1	
신규		-	52	1.5	24.2	36.28	연결로	산책로 53	쌍문동 산267-1	
신규		-	53	1.5	71.4	107.09	연결로	데크로드 토-1	산책로 50	
신규		-	54	1.5	3.3	4.95	연결로	데크로드 토-1	휴게소 터-6	
신규		-	55	1.5	24.1	36.11	연결로	전망대 코-2	휴게소 터-6	
신규		-	56	1.5	3.3	4.94	연결로	데크로드 토-1	전망대 코-2	
신규		-	57	1.5	60.8	91.24	연결로	휴게소 터-9	전망대 코-2	
신규		-	58	2.5	27.6	69.03	진입로	도자구역	산책로 59	
신규		-	59	1.5	69.4	104.15	연결로	휴게소 터-9	산책로 57	
신규		-	60	1.8	20.5	36.90	연결로	산책로 44	둘리뮤지엄 4	
신규		-	61	2.0	225.9	451.72	연결로	휴게광장 나-8	산책로 62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규		-	62	1.5	173.9	260.84	산책로	산책로 64	산책로 64	
신규		-	63	1.5	28.6	42.84	산책로	산책로 62	산책로 62	
신규		-	64	2.5	39.2	98.07	진입로	파고라 4-1	방학동 507-7	
신규		-	65	2.0	28.7	57.47	연결로	화장실 6-6	산책로 64	
신규	산책로	-	66	2~5	82.2	287.72	진입로	방학동 734-6	배구장 자-1	
신규		-	67	1.5	16.2	24.32	연결로	산책로 66	체력단련장 타-1	
신규		-	68	2.0	65.4	130.73	연결로	배구장 자-1	산책로 10	
신규		-	69	2.0	35.7	71.30	연결로	데크로드 토-2	산책로 39	
신규		-	70	1.0	5.1	5.96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71	
신규		-	71	4.7	4.2	19.87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71	
신규		-	72	1.5	35.6	53.35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76	
신규		-	73	1.2	33.6	40.32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72	
신규		-	74	1.0	29.4	29.40	연결로	산책로 39	산책로 40	
신규		-	75	2.0	100.5	200.98	연결로	휴게소 터-9	휴게광장 나-8	
신규		-	76	1.5	90.4	135.64	연결로	산책로 72	산책로	
신규		-	77	1.5	21.6	32.47	연결로	산책로 76	전망대 코-3	
신규		-	78	1.5	34.2	51.26	연결로	산책로 39	수변데크 포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규		-	79	1.8	15.9	28.64	연결로	산책로 76	진입광장 가-15	
신규		-	80	3.2	94.6	302.66	진입로	휴게광장 나-12	소로 7	
신규		-	81	2.8	35.1	98.41	연결로	산책로 44	둘리뮤지엄 4	
신규		-	82	2.0	18.4	36.76	연결로	산책로 81	둘리뮤지엄 4	
신규		-	83	1.5	29.8	44.72	연결로	산책로 44	산책로 47	
신규		-	84	2.0	20.0	40.05	진입로	중로 2-1	산책로 47	
신규		-	85	2.5	84.0	209.94	연결로	산책로 16	보행육교 러	
신규	산책로	-	86	2.0	62.1	124.25	연결로	휴게광장 나-10	농구장 15	
신규		-	87	1.8	28.8	51.77	연결로	주차장 거-4	산책로 16	
신규		-	88	2.0	65.8	131.61	연결로	산책로 89	산책로 23	
신규		-	89	2.5	364.4	911.02	산책로	산책로 24	산책로 89	
신규		-	90	1.9	30.3	57.52	연결로	산책로 89	산책로 99	
신규		-	91	2.3	60.9	140.03	연결로	산책로 89	산책로 99	
신규		-	92	2.0	34.2	68.42	연결로	산책로 89	산책로 99	
신규		-	93	2.0	15.2	30.37	연결로	산책로 89	산책로 99	
신규		-	94	2.5	34.7	86.78	연결로	진입광장 가-8	산책로 89	
신규		-	95	2.0	141.6	283.27	연결로	산책로 94	배드민턴장 아-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규		-	96	1.5	20.9	31.32	연결로	도자구역	배드민턴장 아-5	
신규		-	97	2.0	82.5	164.9	연결로	산책로 98	소로 3-2	
신규		-	98	8.0	57.1	500.7	진입로	쌍문동 81-371	쌍문동 152-2	
신규		-	99	2.2	74.4	163.70	산책로	산책로 91	산책로 91	

2021 - 14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구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은 평 구 청 장

1. 고 시 명 :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대 상 지 : (지정) 은평구 녹번동 71-46 등 6개소
(해제) 은평구 진관동 85 등 5개소
3. 지정 및 해제사유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해제사유 : 산사태 예방사방공사 완료 등 대상지가 안정되어 지정목적 달성을 달성한 지역
4. 고시일자 : 2021. 1. 21.
5.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02-351-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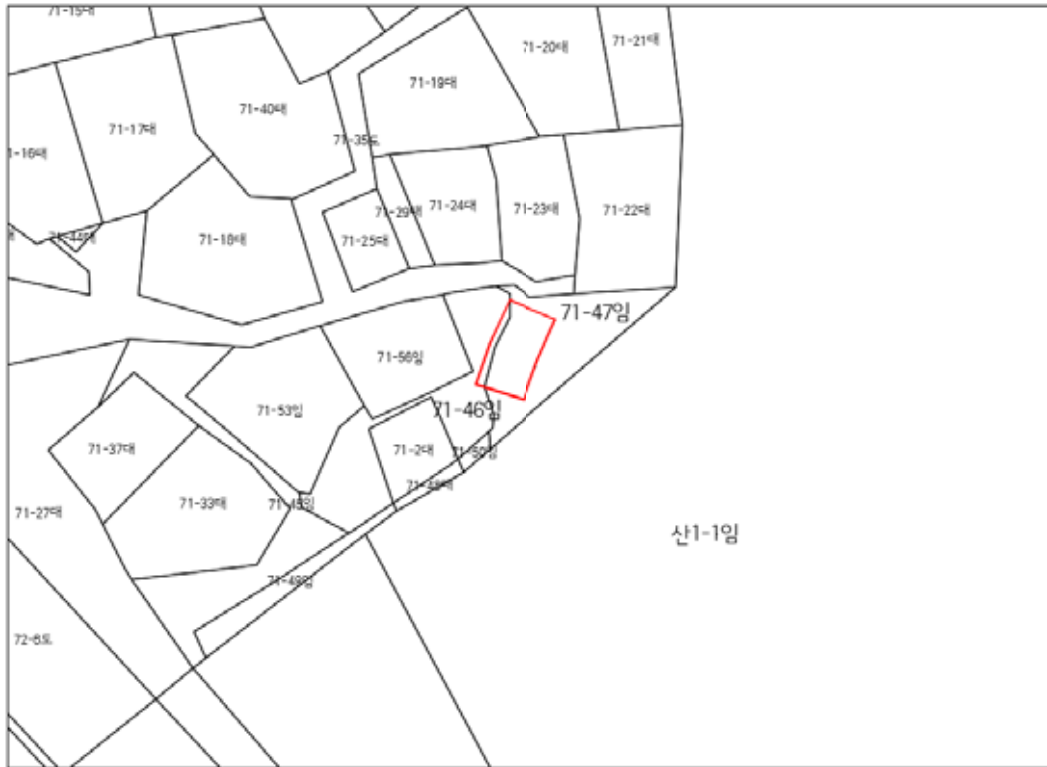
붙임 1

()

구분	산림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시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계				필지					
1	서울	은평	녹번	71-46	임야	142	8	기획재정부	국유지
				71-47	임야	118	37	기획재정부	국유지
2	서울	은평	불광	산58-3	임야	52,140	551	서울특별시	시도유지
3	서울	은평	진관	산46-2	임야	7,405	3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2번길 12, 453호 등	송00 외 1인
				산47	임야	66,377	2,2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72번길 12, 453호 등	송00 외 2인
				산49	임야	26,876	2,592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3-5	김00
				산50	임야	15,471	5,55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33 현대(아) 109동 303호 등	신00 외 3인
				산109-12	구거	545	5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산109-13	임야	8,438	672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산109-38	임야	5,663	453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산109-39	구거	833	830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산109-40	구거	220	5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산109-41	임야	301	301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에스에이치공사
4	서울	은평	불광	산42-1	임야	1,888,095	675	산림청	국유지
				산42-26	임야	1,484	718	산림청	국유지
				630	임야	832	318	은평구	시군구유지
				638-5	공원	548.6	11	은평구	시군구유지
5	서울	은평	증산	산 10-6	임야	4,403	600	산림청	국유지
6	서울	은평	진관	산 80-4	임야	2,182	300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98	전00

불입 2

번호: 제2021년-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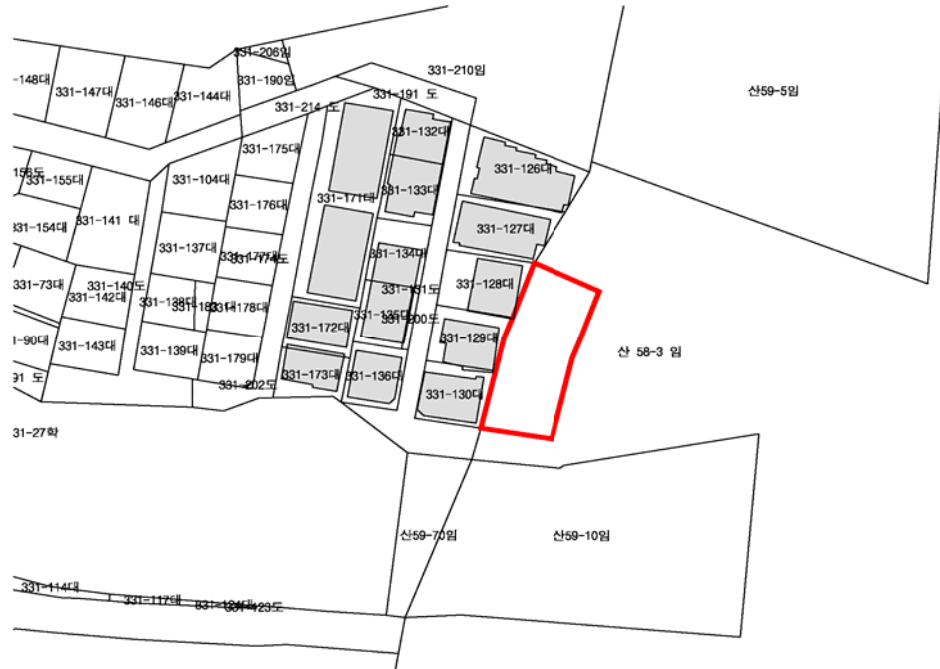
〈보기〉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녹번	71-46	임야	142	8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71-47	임야	118	37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260	45	

번호: 제2021년-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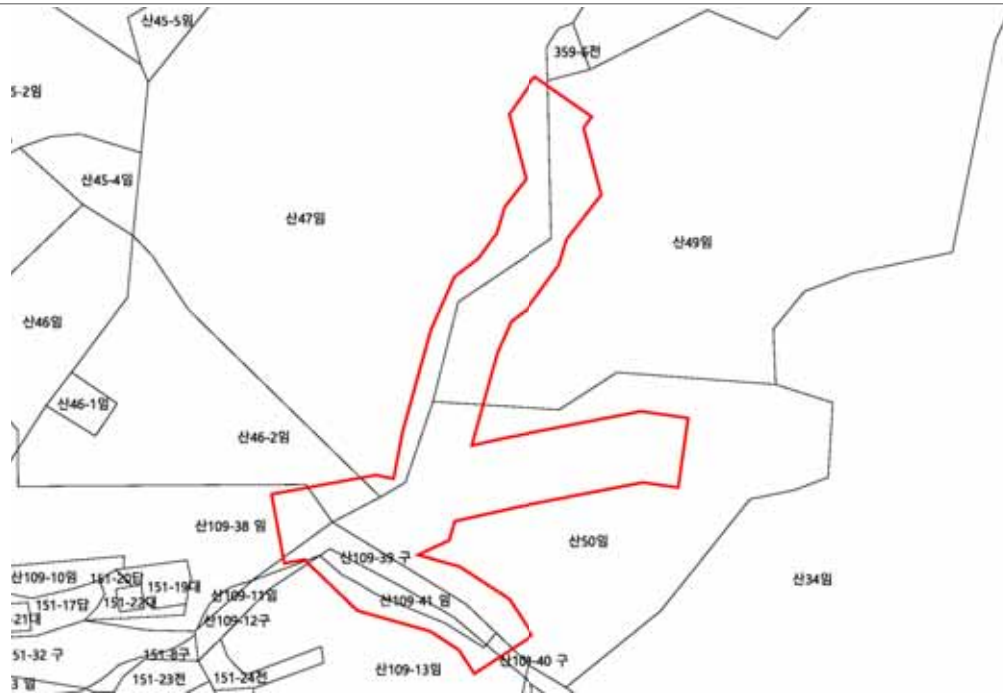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불광	산58-3	임야	52,140	551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52,140	551	

번호: 제2021년-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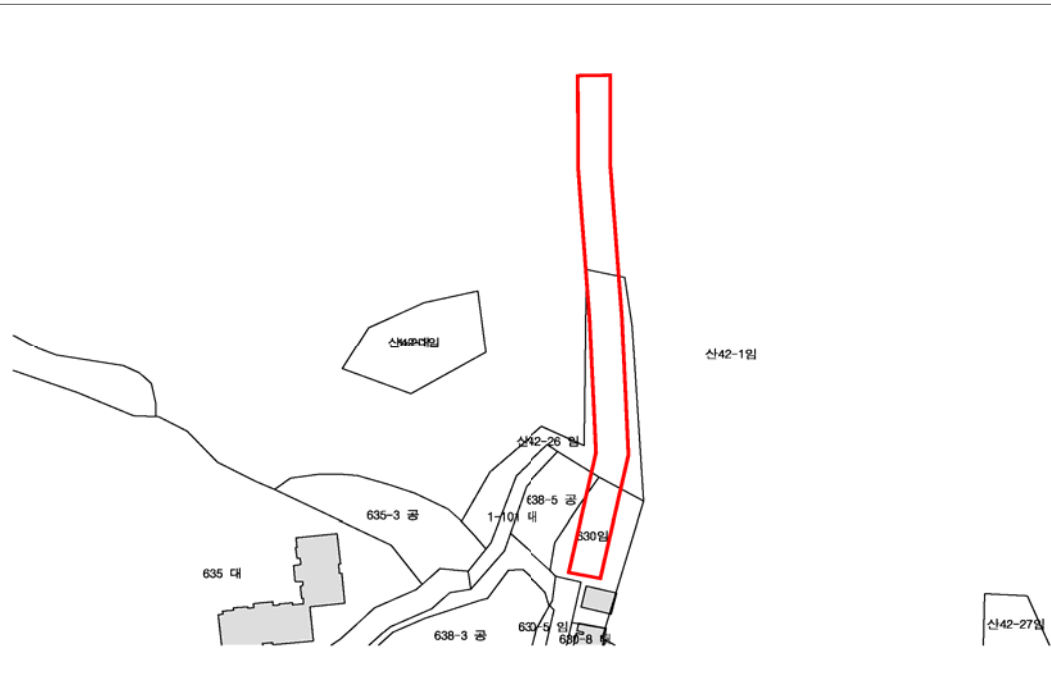
〈보기〉

[Red Box]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진관	산46-2	임야	7,405	316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47	임야	66,377	2,239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49	임야	26,876	2,592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50	임야	15,471	5,552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109-12	구거	545	5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109-13	임야	8,438	672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109-38	임야	5,663	453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109-39	구거	833	83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109-40	구거	220	56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109-41	임야	301	301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132,129	13,016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번호: 제2021년-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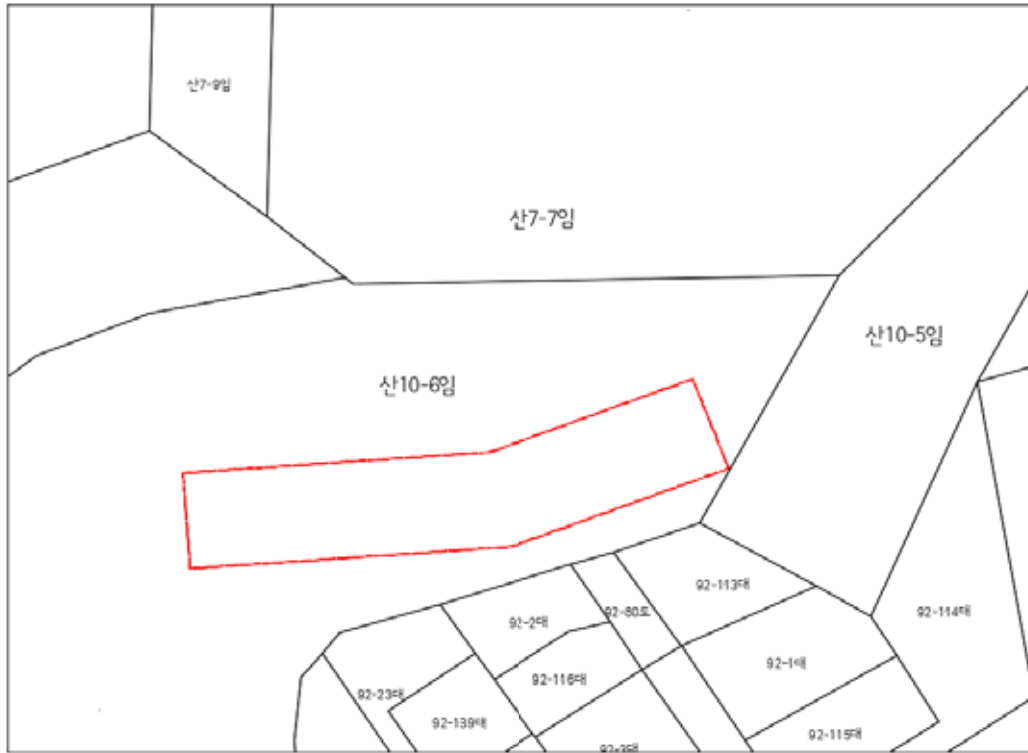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불광	산42-1	임야	1,888,095	675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42-26	임야	1,484	718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630	임야	832	318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638-5	공원	548.6	11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1,890,959 .6	1,722	

번호: 제2021년-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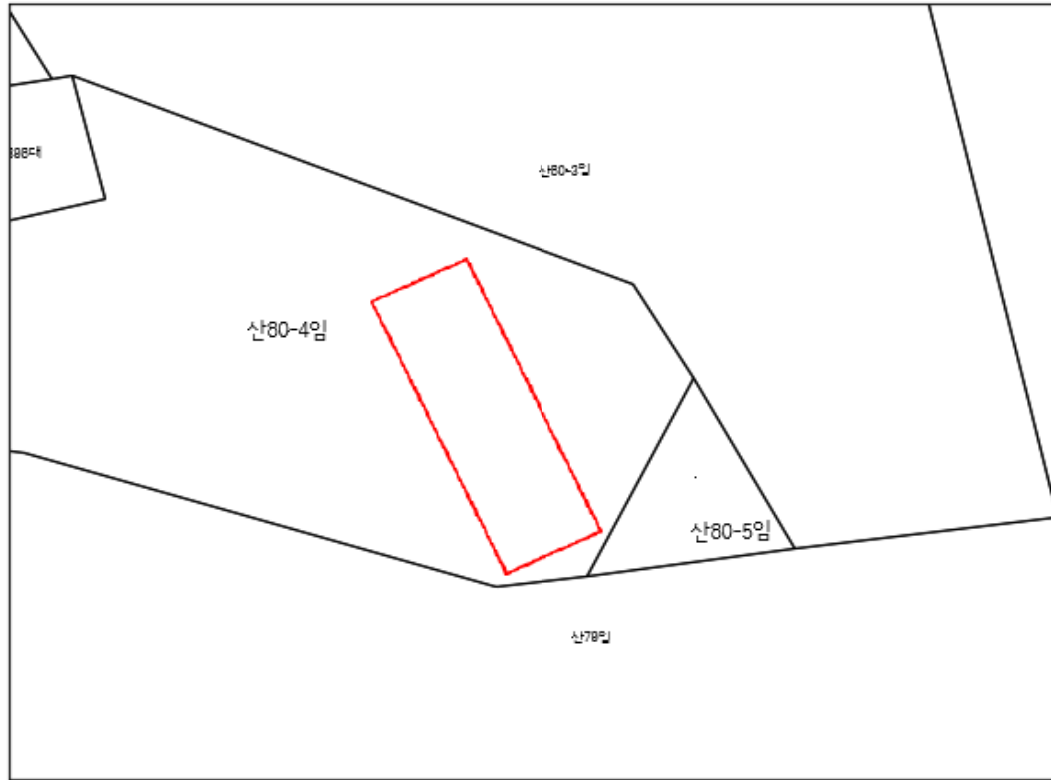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증산	산 10-6	임야	4,403	60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4,403	600	

번호: 제2021년-06호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진관	산 80-4	임야	2182	30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2,182	300	

붙임3

()

구분	산림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시	구	동	지번				주소	성명
계				필지					
1	서울	은평	진관	85	공원	54,5870.7	286	서울특별시	시유지
2	서울	은평	진관	산25-2	하천	29,157	1,897	국토교통부	국유지
				산32-1	하천	11,649	1,803	국토교통부	국유지
				산34	하천	2,693,724	346	산림청	국유지
3	서울	은평	진관	산100-45	임야	537	3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에스에이치공사
				71-33	하천	520	50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에스에이치공사 외 1명
				387-5	하천	645	200	국토교통부	국유지
4	서울	은평	구산	산55-4	임야	628	16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00청 직원주택조합
				산55-2	임야	615	100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89 휴먼시아 306-1403	신00
				산57-1	임야	7,237	120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1-1	00복지법인엔젤스 헤이븐
				177-6	도로	4,106	50	인천 무추출구 동주길 94번길 6	설00
5	서울	은평	불광	산39-1	임야	31,611	2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69-18 진흥빌라연립 1동 105호	최00외3명

붙임4

번호: 2020년도 제1호



(2020. 6.)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진관	85	공원	54,5870.7	286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54,5870.7	286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15.7.20.>

번호: 2020년도 제2호



(2020. 6.)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진관	산25-2	하천	29,157	1,897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32-1	하천	11,649	1,803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34	하천	2,693,724	346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2,734,530	4,046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15.7.20.>

번호: 2020년도 제3호



(2020. 6.)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진관	산100-45	임야	537	18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71-33	하천	520	12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387-5	하천	645	24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1,702	540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15.7.20.>

번호: 2020년도 제4호



현황사진(2020. 6.)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시·구·동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구산	산55-4	임야	628	16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55-2	임야	615	10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산57-1	임야	7,237	12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177-6	도로	4,106	5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12,586	430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15.7.20.>

번호: 2020년도 제5호



현황사진(2020. 6.)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 은평. 불광	산39-1	임야	31,611	230	은평구 고시 제2021-14호 (2021. 1. 21.)
	소 계		31,611	230	

2021 - 110

()

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19호(2000.11.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 구로구고시 제238호(20.11.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2257)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39-58~427-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 10m, 연장 107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제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토지조서참조

()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439-58 ~ 427-4 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 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연번 1~3, 5~20 변경없음											
4	신도림동 439-105	대	16	16	이지희	동작구 서달로91, 110동 1204호					신도림동 439-57
					리더스 스타코리아	용산구 한강대로 23					

()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439-58 ~ 427-4 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 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연번 1~3, 5~20 변경없음											
4	신도림동 439-106	대	16	16	이지희	동작구 서달로91, 110동 1204호					신도림동 439-57
					리더스 스타코리아	용산구 한강대로 23					

()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439-58 ~ 427-4 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분할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신도림동 439-58	가건물	렉산/블록	3	창고	리더스 스타 코리아	용산구 한강대로 23	-	-	-	신도림동 439-104
		담장	시멘트블록	1식	담장						
2	신도림동 439-59	건물(1층)	연와조	44	주택	정희순	구로구 경인로62길 10-11	영등포농협 협동조합	영등포구 도신로 194	근저당	신도림동 439-105
		건물(2층)	연와조	27	주택						
		담장및대문	조적/철재	1식	담장 및 대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분할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	신도림동 439-60	건물	연와조	45	사업장	조용현	신도림동 439-60	-	-	-	-
4	신도림동 439-56	건물(1층)	연와조	66	사업장	리더스 스타 코리아	용산구 한강대로 23	-	-	-	-
		가건물(1층)	철재/천막	5	창고						
		건물(2층)	연와조	70	주택						
		건물(3층)	연와조	70	주택						
		건물(4층)	연와조	23	옥탑						
5	신도림동 439-34	건물(1층)	철재/천막	27	사업장	이지봉	안양시 비산동 341, 뉴타운아파트 14동 1103호	-	-	-	신도림동 439-107
		건물(1층)	연와조/슬레이트	76	사업장						
		건물(1층)	연와조/슬레이트	81	사업장						
		가건물(1층)	블록조/철재	11	기계보관실						
		담장	시멘트블록	1식	담장						
6	신도림동 439-21	건물(1층)	연와조	17	사업장	리더스 스타 코리아	용산구 한강대로 23	-	-	-	신도림동 439-110
7	신도림동 439-24	건물(1층)	조적/슬레이트	43	사업장	리더스 스타 코리아	용산구 한강대로 23	-	-	-	-
		가건물(1층)	조적/슬레이트	17	사업장						
8	신도림동 428-9	건물(1층)	연와조	1	사업장	리더스 스타 코리아	용산구 한강대로 23	-	-	-	신도림동 428-31
9	신도림동 428-13	건물(1층)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61	사업장	김형근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171-2	-	-	-	-
10	신도림동 428-8	담장	철재	1식	담장	신주량	구로구 중앙로12길 12, 101동 504호	-	-	-	신도림동 428-30
11	신도림동 428-14	건물(1층)	연와조	67	주택	이상분	구로구 경인로66길 68	-	-	-	신도림동 428-33
		건물(1층)	연와조	2	보일러실						
		계단(1,2층)	콘크리트	3	베란다 계단						
		계단(1,2층)	콘크리트	5	계단						
		건물(2층)	연와조	67	주택						
		건물(2층)	연와조	2	보일러실						
		건물(2층)	콘크리트	11	베란다						
		건물(3층)	연와조	67	주택						
		건물(3층)	콘크리트	12	베란다						
		건물(4층)	연와조	13	옥탑						
		담장및대문	조적/철재	1식	담장 및 대문						

()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439-58 ~ 427-4 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 지번	세부 구분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사업자등록증상)	소 유 자		비 고 (분할지번)
							성 명	주 소	
1	신도림동 439-34	1층	제조	에이앤피기계공업 주식회사	1식	기타가공공작기계	이지봉	구로구 경인로62길 12	신도림동 439-107
2	신도림동 428-13	1층	제조	부성정밀	1식	기계부품	김용수	구로구 경인로66길 70	
3	신도림동 439-60	1층	건설 도소매	은성아트금속	1식	금속공사,창호공사 잡철물	강남구	구로구 경인로62길10-11	

2021 - 85

(:)

가()

1.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49호(' 79.9.24.) 및 영등포구고시 제2020-84호(' 20.5.1.)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당산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하여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2670-353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21일

영 등 포 구 청 장

- 1) 열람기간: 2021. 1. 22. ~ 2021. 2. 4.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2)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38)
- 3) 열람내용
 -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3-1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정거장) 사업
 - 명 칭: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26.73㎡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3번 출입구: 26.73㎡(엘리베이터)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교통공사 (대표자: 김상범)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마. 실시계획인가 신청일: 2020년 12월 22일
 - 바.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정거장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로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
 - 사.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4개월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당산동6가	323-1	도	10,049.6㎡	26.73㎡	서울특별시		
합 계				10,049.6㎡	26.73㎡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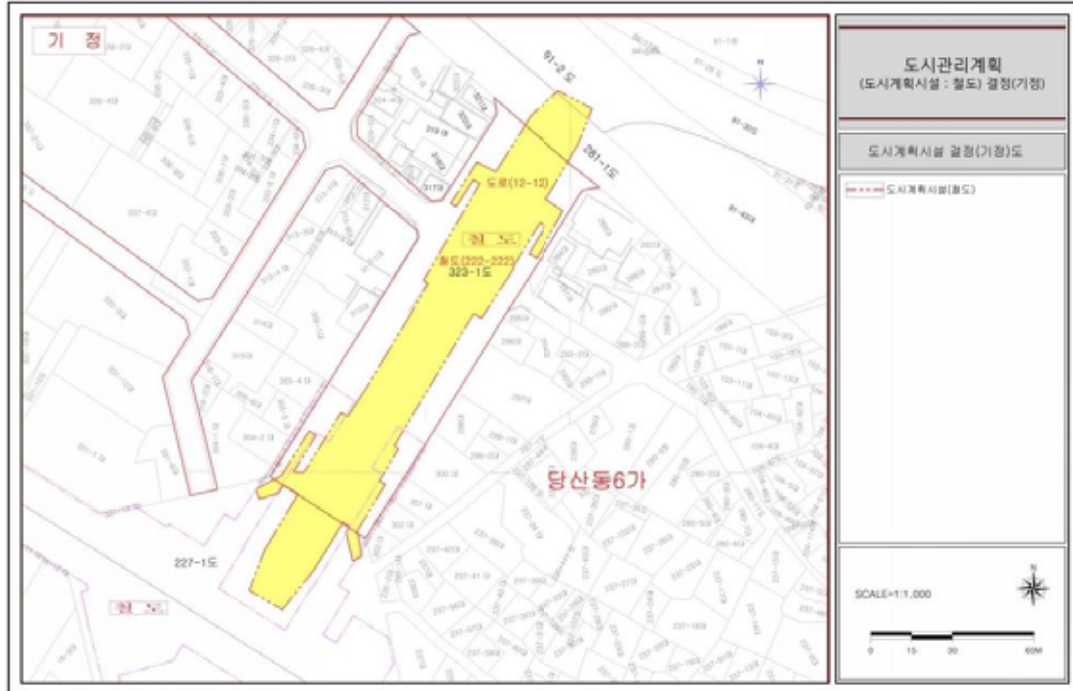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역 내 모든 철도시설물은 교통공사로 무상귀속

차. 공사 구간 및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 변경 결정: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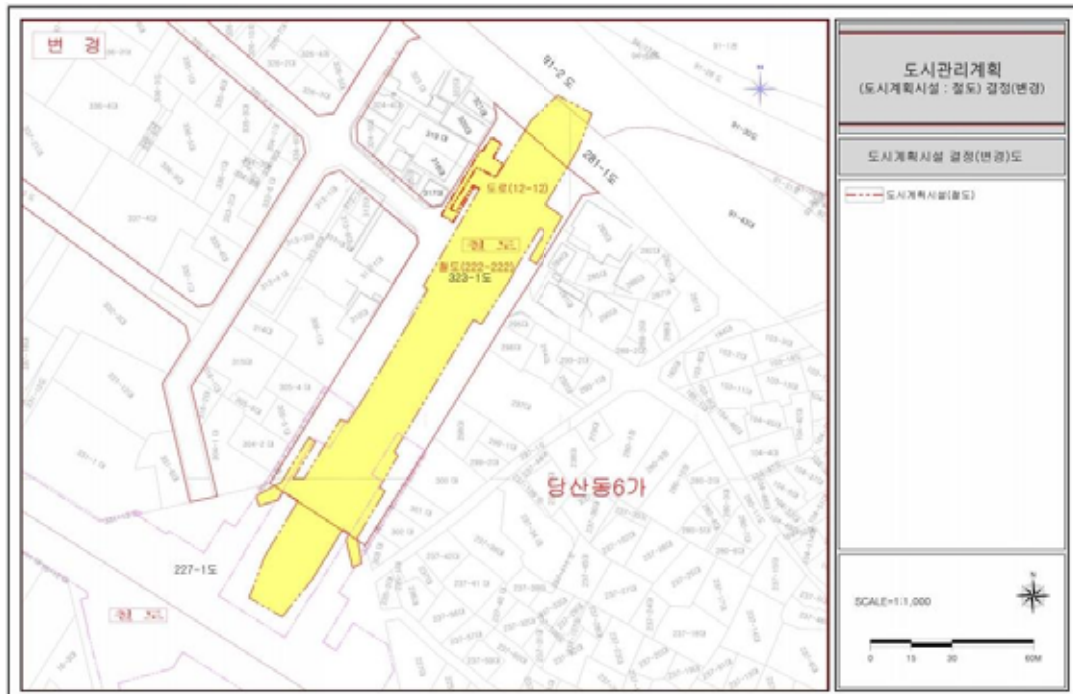
4)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로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2670-35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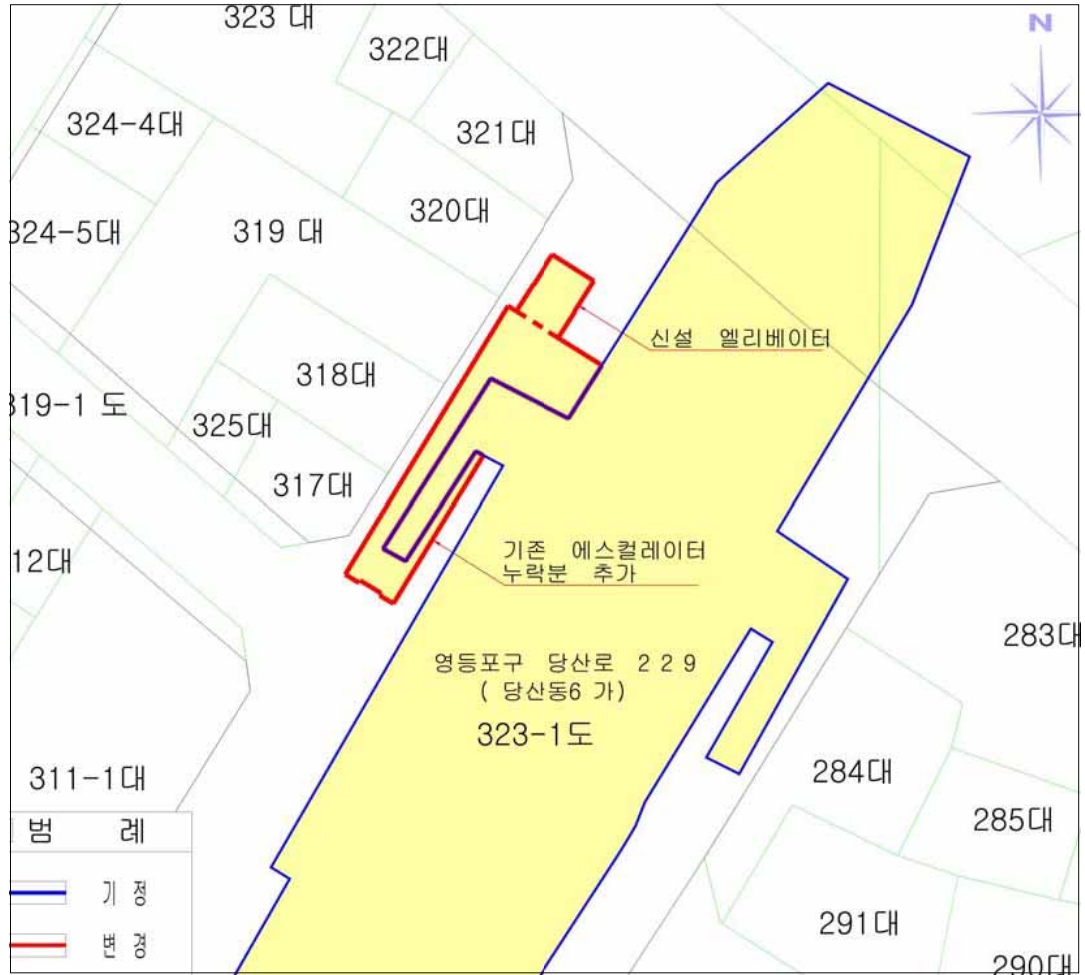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결정도(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결정도(부분확대)



2021 - 80

() ()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1914호(2020.10.15.)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강남구청 제1별관 3층, ☎ 02-3423-6114)
 3.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 나.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기존 결정된 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본선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	도시 철도	본선 (분당선)	왕십리역 구내	송파구 장지동 596-21 일대	-	B=11~23m L=17,912m A=191,733㎡	서고 95-31호 ('95.2.11)	

○ 정거장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도시 철도	개포1정거장 (분당선)	강남구 개포동 175일대	9,288	-	9,288	210	서고 97-130호 ('97.4.3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신설

구 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철도	개포동 176-6	길이	-	증) 44.2m	44.2m		
			폭	-	증) 1.7m ~ 22.4m	1.7m ~ 22.4m		
			높이 (해발 기준)	-	-0.12m ~ -24.77m	-0.12m ~ -24.77m		
			면적	-	증) 356.7㎡	356.7㎡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 L = 44.2m - B = 1.7m ~ 22.4m - H(해발 기준) = -0.12m ~ -24.77m	개포동 176-6번지에 기 결정된 철도시설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지구중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1-1지구, 1-2지구, 2-1지구, 2-2지구, 4지구) : 변경없음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계획

- 기정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고
일반상업지역	삼성로변, 개포동길변	-	
	이면부	2,000㎡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	-	
	남부순환도로변 상업업무필지	4,000㎡	
	기타 내부필지	2,000㎡	

※ 최대개발규모가 없는 지역은 가구단위를 최대개발규모로 함

※ 기존 획지구분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와 아파트단지 제외

※ 획지 간 공동개발은 그 획지가 속한 가구의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공동개발 가능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차량통행·보행통행·공지의 위치 등에 관한 계획사항의 변경이 연동될 경우 해당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에 권한이 있는 기관(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획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획지)의 규정을 적용

- 변경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고
일반상업지역	삼성로변, 개포동길변	-	
	이면부	2,000㎡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	-	
	남부순환도로변 상업업무필지	4,000㎡	
	기타 내부필지	2,000㎡	

※ 최대개발규모가 없는 지역은 가구단위를 최대개발규모로 함

※ 기존 획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개발계획이 수립된 필지와 아파트단지 제외

※ 획지 간 공동개발은 그 획지가 속한 가구의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공동개발 가능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차량동선·보행동선·공지의 위치 등에 관한 계획사항의 변경이 연동될 경우 해당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에 권한이 있는 기관(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획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획지)의 규정을 적용

나) 가구 계획(변경없음) : 계재생략

다) 공동개발 계획

- 지정 : 없음

- 변경

구 분	동명	지번	면적		비고
공동개발 지정	개포동	176-2	2,418.9㎡	2,775.6㎡	맹지
	개포동	176-6	356.7㎡		부정형, 세장형 필지

2)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계재생략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계재생략

4. 관련도서 : 계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끝.

2021 - 118

() [KT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KT 송파지사 복합시설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1번지 일원
(송파구 신천동 29-1번지 외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KT 송파지사 복합시설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도로 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노선명	구분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대 로 1-32	결정	35~38	4,050	-	송파동 광20	방이동 대2-33	일반 도로	-	건고331호 (1981.8.29)	
	인가	38	68	1,536.6	신천동 34	신천동 30	-	-	-	
대 로 3-106	결정	25	1,260	-	잠실동 대1-34	송파동 대1-32	일반 도로	-	건고125호 (1974.12.6)	
	인가	25	112	267	신천동 30	신천동 34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케이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1층(정자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조 서(대로1-32호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29-1	대	9,975.8	199.6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	34	도	7,572.6	1,337	서울특별시					
소 계			17,548.4	1,536.6						

토 지 조 서(대로3-106호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30	도	13,783.6	267	서울특별시					
소 계			13,783.6	267						

7) 위치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로과 ☎02-2147-3308

2021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신규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 관리업	제 서울 (동대문) 2021-0001호 (2021. 1. 11)	(주)수성소방 (860-81-02184)	최 승 호 (1972. 7.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23, 3층 303호 (휘경동)	02-2242-8119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245-7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33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1.21. ~ 2021. 2.3.(14일)
5. 납부기간 : 2021.2.4. ~ 2021.2.17.(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원)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0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정*우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길 **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1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임*근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	(공덕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2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오*분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9마길 *9	타동***호 (홍은동, 홍은)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2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DABOUR *AYMAN I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	***호 (휘경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5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훈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길 **-*	(마천동)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6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최*남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토당동)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67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최*남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토당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82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최*남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토당동)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88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고*영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공향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89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최*남	수취인불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토당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1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신*일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다길 **	***동***호***호 (녹번동, 동인에버빌)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2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선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길 **	***호 (역삼동, 역삼한스빌아파트)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3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주)플*잉루트	이사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	*층 ***호 (방배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4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이*권	주소불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간석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64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홍*익	이사불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다동 ***호 (주안동, 청림빌라)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원)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6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85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홍*익	이사불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다동 ***호 (주안동, 청림빌라)
17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90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홍*익	이사불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다동 ***호 (주안동, 청림빌라)
18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0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오*환	폐문부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	*9**동 ****호 (망월동, 미사강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엔에이치에프)
19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2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장*훈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호 (장안동, 파크리움)
20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6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윤*주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길 **	***호 (화곡동)
21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74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최*환	폐문부재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9번길 **	***동 ***호 (덕계동, 한주아파트)
22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0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현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길 **	B**호 (목동, 진명하이츠)
23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0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석	기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길 **	(창천동)
24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0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한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	(용산동*가)
25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0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HUANG *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길 *9-*	(삼선동*가)
26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12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근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길 *	(공덕동)
27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13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임*웅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길 ***-	B**호 (상도동, 동서리치빌라)
28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1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임*재	기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지*길 ***-*	(군서면)
29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2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유*훈	폐문부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9*	***동 ****호 (평촌동, 푸른마을대우아파트)
30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3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삼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	(망원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원)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3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준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길 **	****호 (하월곡동, 삼전솔하임)
3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4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박*삼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월내로 **~**	(망원동)
3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5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한*배달인협동조합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번길 *~**	***호 (토당동, 미미빌딩)
3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5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섭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번길 ****~**	(화도읍)
3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69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박*식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	****호 (중동, 부천중동리슈빌엔클레스)
36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7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임*식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길 *-*	(신길동)
37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7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강*우	폐문부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길 ***	***호 (고덕면)
38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80	지정장소 외 주차행위	50,000	VALENTINE * RANDALL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길 *	(용산동*가)
39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0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J*N SHENGWU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	B**호 (신림동)
40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이*철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가길 *	***호 (신림동, 삼성원룸)
41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1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50,000	위*해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9*	***동 ****호 (남양읍, 남양우림필유)
42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1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영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길 **	가동 ***호 (논현동, 세일연립)
43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2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김*정	폐문부재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번안길 *	***호 (금정동)
44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2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PARPIBOEV *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길 **	*층 (화양동)
45	10-288706	[시일변]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3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IM *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길 *9	***호 (신사동)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구분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원)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46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3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김*철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길 **	*층 *호 (성수동*가)
47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41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손*철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충민로 ****-	(덕충동)
48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48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한*희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	(입북동)
49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65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50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71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유*준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	(구로동)
51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72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52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83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53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84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유*준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길 *-**	(구로동)
54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수시	2021-01	000091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이*인	폐문부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길 **-**	(사등면)

2021 - 32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사전통지분)과태료 부과
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1.21. ~ 2021. 2.3.(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1. 2.4. ~ 2021. 2.17.(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54	설*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길 **	***호 (녹번동)
2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55	BOOD*DAVID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	***호 (용산동*가)
3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56	최*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길 **	(용산동*가)
4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60	문*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	****호 (토당동, 금호아파트)
5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62	공*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길 ***	나동***호 (함열읍, 함열휴먼시아)
6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64	박*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길 **	***호 (대명동, 관문빌라)
7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65	임*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한남동)
8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68	임*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낙산길 ***-***	***동***호 (삼선동*가, 삼선힐스테이트)
9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74	김*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번길 ***-***	가동***호 (토당동, 별장아파트)
10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75	XU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번길 ***-*	지층 (수진동)
11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77	손*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	***동***호 (신길동, 우주마루아파트)
12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0-1 2	003879	신*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번안길 *--**	(광명동)

2021 - 2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음식물탈리액의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부칙<2007.5.18> 삭제에 따라 기존 협약에 의해 반입하던 음식물탈리액의 반입절차 및 반입수수료 산정을 타 폐기물 반입절차와 일원화 함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시행일	비 고
음식물탈리액	55,000		2021.1.1	동절기 : 12월~3월
	동절기	51,000		

2021년 1월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2021 - 15

() 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잠원동
 - 면 적 : (당초) 3,081㎡, (변경) 3,695.4㎡ (일시 3,47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수송관 매설
 - 내 역 : 열수송관 L=2,554m
[잠원공원 내 신설관로 추가 매설(잠원동 121 지점)]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 2017.7.21.~2024.12.31. * 점용기간을 5년으로 정정
 - (변경) 2017.7.21.~2022.12.31.(2021.1.15.~2021.3.31.)

2021 - 20

() 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대륜이엔에스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길 54(상계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796, 756-164번지 및 노원구 상계동 770-1번지
 - 면 적 : 132.4㎡(일시 93.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시가스 배관 이설공사
 - 내 역 : 기존관 철거 D600 L=82m, 가스관 매설 D600, L=82m(H=5m)
5. 점용기간 : 2018.04.30.~2023.04.29.
6. 공사기간 : (당초) 2020.03.06.~2021.01.15.
(변경) 2021.01.16.~2021.12.31.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